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855-14

**201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 연구**

2011. 7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7월

연구진

연구 책임자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참여 연구진

박광호 차철표 최윤범

김민주 최진영 정진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추진 방법	3
제2장 근해어업 감척사업 실태 분석	11
제1절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현황	11
제2절 2011년 근해감척사업 주요내용	21
제3장 근해어업별 조업실태	41
제1절 근해어업 일반현황	41
제2절 조사대상 근해어업 조업실태 분석	50
제4장 조사대상 근해어업 어업경영분석	91
제1절 근해어선 감척단가 추정 기초분석	91
제2절 업종별 규모별 감척단가 추정 결과	107
제3절 소결	148
제5장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 및 평가기준 수량 제시	157
제1절 잔존가치평가 개요	157
제2절 선체·장비·어구 등의 잔존가치 표준단가	159
참고문헌	213
부록 1 : 연근해어선 경영실태 조사 설문지	215
부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7

표 목 차

<표 1-2> 근해감척 기준단가산정관련 기존자료 활용 가능성 종합	9
<표 2-1> 수산업법 제75조의 내용	13
<표 2-2> 어선감척사업 근거법 현황	13
<표 2-3>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실적	15
<표 2-4>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입찰제 절차	19
<표 2-5> 어선감척사업 지원조건	20
<표 2-6> 사업 대상어업 순위	22
<표 3-1> 연도별 근해 어선척수 및 톤수, 허가건수	41
<표 3-2> 근해어업 어업종류별 지역별 어선척수	42
<표 3-3> 근해어업 지역별 척수 및 톤수 현황(1)	43
<표 3-4> 근해어업 지역별 척수 및 톤수 현황(2)	44
<표 3-5> 근해어업 지역별 척수 및 톤수 현황(3)	45
<표 3-6> 근해어업 어업인수(1)	46
<표 3-7> 근해어업 어업인수(2)	47
<표 3-8> 업종별 평균선령(2010년 통계기준)	48
<표 3-9> 근해어업 허가정수 대비 초과 및 미달 어업 현황(2010년말 기준)	49
<표 3-10> 근해어업 일반현황(1)	50
<표 3-11> 근해어업 일반현황(2)	51
<표 3-12> 대형기선저인망(외) 지역별 척수 및 톤수	52
<표 3-13> 대형기선저인망(외) 초과건수 현황	52
<표 3-14>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 현황	54
<표 3-15> 대형기선저인망(쌍) 지역별 척수 및 톤수	54
<표 3-16> 대형기선저인망(쌍) 초과건수 현황	55
<표 3-17>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현황	56
<표 3-18> 대형트롤 지역별 척수 및 톤수	57
<표 3-19> 대형트롤 초과건수 현황	57
<표 3-20> 대형트롤어업 현황	59
<표 3-21> 동해구트롤 지역별 척수 및 톤수	59
<표 3-22> 동해구트롤 초과건수 현황	59
<표 3-23> 동해구트롤어업 현황	61
<표 3-24> 대형선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61

<표 3-25> 대형선망 초과건수 현황	62
<표 3-26> 대형선망어업 현황	63
<표 3-27> 소형선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64
<표 3-28> 소형선망 초과건수 현황	64
<표 3-29> 소형선망어업 현황	65
<표 3-30> 근해채낚기 지역별 척수 및 톤수	66
<표 3-31> 근해채낚기 초과건수 현황	66
<표 3-32> 근해채낚기어업 현황	68
<표 3-33> 기선권현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68
<표 3-34> 기선권현망 초과건수 현황	69
<표 3-35> 기선권현망어업 현황	70
<표 3-36> 근해자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70
<표 3-37> 근해자망 초과건수 현황	71
<표 3-38> 근해자망어업 현황	73
<표 3-39> 근해안강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74
<표 3-40> 근해안강망 초과건수 현황	74
<표 3-41> 근해안강망어업 현황	76
<표 3-42> 잠수기 지역별 척수 및 톤수	76
<표 3-43> 잠수기 초과건수 현황	77
<표 3-44> 잠수기어업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77
<표 3-45> 잠수기어업 현황	79
<표 3-46> 장어통발 지역별 척수 및 톤수	80
<표 3-47> 기타통발 지역별 척수 및 톤수	80
<표 3-48> 문어단지 지역별 척수 및 톤수	80
<표 3-49> 장어통발 초과건수 현황	81
<표 3-50> 기타통발 초과건수 현황	81
<표 3-51> 문어단지 초과건수 현황	81
<표 3-52> 근해통발어업 현황	82
<표 3-53> 근해형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83
<표 3-54> 근해형망 초과건수 현황	83
<표 3-55> 근해형망어업 현황	84
<표 3-56> 근해연승 지역별 척수 및 톤수	84
<표 3-57> 근해연승 초과건수 현황	85
<표 3-58> 근해연승어업 현황	86
<표 3-59> 근해들망 초과건수 현황	86

<표 3-60> 근해들망어업 현황	87
<표 3-61> 근해 봉수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87
<표 3-62> 근해 봉수망 초과건수 현황	88
<표 4-1> 평년어업 경비 항목	94
<표 4-2> 항목별 추정 방법	97
<표 4-3> 근해어선 조사대상 모집단과 표본집단 현황(1)	98
<표 4-4> 근해어선 조사대상 모집단과 표본집단 현황(2)	99
<표 4-5> 업종별 수익액 추정	100
<표 4-6> 근해어업 3년평균 수익액 추정 결과	102
<표 4-7> 업종별 비율 추정	103
<표 4-8> 근해어업 업종별 비용 비율 구조 종합	105
<표 4-9> 대형기선저인망(외) 수익·비용 추정결과	107
<표 4-10> 대형기선저인망(쌍)의 100톤 미만 수익·비용 추정결과	108
<표 4-11> 대형기선저인망(쌍)의 100~130톤 미만 수익·비용 추정결과	109
<표 4-12> 대형기선저인망(쌍)의 130톤 이상 수익·비용 추정결과	110
<표 4-13>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저)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1
<표 4-14>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외)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2
<표 4-15>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쌍) 5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3
<표 4-16>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쌍) 50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4
<표 4-17> 대형트롤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5
<표 4-18> 근해트롤(동해구) 4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6
<표 4-19> 근해트롤(동해구) 40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7
<표 4-20> 근해선망(대형) 10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8
<표 4-21> 근해선망(대형) 120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19
<표 4-22> 근해선망(소형)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0
<표 4-23> 근해채낚기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1
<표 4-24> 근해채낚기 35~65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2
<표 4-25> 근해채낚기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3
<표 4-26> 기선권현망 20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4
<표 4-27> 기선권현망 200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5
<표 4-28> 근해자망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6
<표 4-29> 근해자망 35~6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7
<표 4-30> 근해자망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8
<표 4-31> 근해안강망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29
<표 4-32> 근해안강망 35~6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0

<표 4-33> 근해안강망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1
<표 4-34> 잠수기(1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2
<표 4-35> 잠수기(2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3
<표 4-36> 잠수기(3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4
<표 4-37> 잠수기(4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5
<표 4-38> 잠수기(5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6
<표 4-39> 근해통발(장어)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7
<표 4-40> 근해통발(장어) 35~6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8
<표 4-41> 근해통발(장어)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39
<표 4-42> 근해통발(기타)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40
<표 4-43> 근해통발(기타) 35~6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41
<표 4-44> 근해통발(기타)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42
<표 4-45> 근해통발(문어단지)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43
<표 4-46> 근해형망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44
<표 4-47> 근해연승 2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45
<표 4-48> 근해연승 20~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46
<표 4-49> 근해연승 3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147
<표 4-50> 근해어업 수익, 비용, 경비율 종합(1)	149
<표 4-51> 근해어업 수익, 비용, 경비율 종합(2)	150
<표 4-52> 근해어업 기준단가 산정 결과(2)	151
<표 4-53> 근해어업 기준단가 산정 결과(2)	152
<표 4-54> 근해선망(100톤 미만) 2008년도 분석 결과와 비교	153
<표 4-55> 대형선망 100톤 미만 경영분석 결과	154
<표 4-56> 잠수기어업 3구 2008년도 분석결과와 비교	155
<표 4-57> 잠수기어업 3구 경영분석 결과	156
<표 5-1> 근해어선 선체 표준단가	163
<표 5-2> 근해어선 기관 표준단가	165
<표 5-3> 의장품 표준단가 (2007. 12 기준) (1)	169
<표 5-4> 의장품 표준단가 (2007. 12 기준) (2)	170
<표 5-5> 의장품 표준단가 (2007. 12 기준) (3)	171
<표 5-6> 의장품 표준단가 (2011. 5 기준)(1)	172
<표 5-7> 의장품 표준단가 (2011. 5 기준)(2)	173
<표 5-8> 의장품 표준단가 (2011. 5 기준)(3)	174
<표 5-9> 어구수량 및 내용년수, 표준단가 (2007. 12 기준)(1)	175
<표 5-10> 어구수량 및 내용년수, 표준단가 (2007. 12 기준)(2)	176

<표 5-11> 어구수량 및 내용년수, 표준단가 (2011. 5 기준)(1)	177
<표 5-12> 어구수량 및 내용년수, 표준단가 (2011. 5 기준)(2)	178
<표 5-13>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1)	180
<표 5-14>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2)	181
<표 5-15>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3)	182
<표 5-16>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4)	183
<표 5-17>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5)	184
<표 5-18>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6)	185
<표 5-19> 육상의 가공시설	188
<표 5-20> 선체, 기관의 잔존가치 표준가 및 적용율	189
<표 5-21> 의장품 잔존가치 표준가 및 적용율	190
<표 5-22> 어구 잔존가치 표준가 및 적용율	191
<표 5-23>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2007. 12 기준)	191
<표 5-24>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2011. 5 기준)	192
<표 5-25>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2007. 12 기준)	192
<표 5-26>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2011. 5 기준)	192
<표 5-27> 동해구기저 (2007. 12 기준)	193
<표 5-28> 동해구기저 (2011. 5 기준)	193
<표 5-29>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2007. 12 기준)	194
<표 5-30>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2011. 5 기준)	194
<표 5-31>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2007. 12 기준)	195
<표 5-32>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2011. 5 기준)	195
<표 5-33> 대형트롤 (2007. 12 기준)	195
<표 5-34> 대형트롤 (2011. 5 기준)	196
<표 5-35> 동해구트롤 (2007. 12 기준)	196
<표 5-36> 동해구트롤 (2011. 5 기준)	196
<표 5-37> 대형선망 (2007. 12 기준)	197
<표 5-38> 대형선망 (2011. 5 기준)	197
<표 5-39> 소형선망 (2007. 12 기준)	197
<표 5-40> 소형선망 (2011. 5 기준)	198
<표 5-41> 근해채낚기 (2007. 12 기준)	198
<표 5-42> 근해채낚기 (2011. 5 기준)	199
<표 5-43> 기선권현망 (2007. 12 기준)	199
<표 5-44> 기선권현망 (2011. 5 기준)	200
<표 5-45> 근해자망 (2007. 12 기준)	200

<표 5-46> 근해자망 (2011. 5 기준)	201
<표 5-47> 근해안강망 (2007. 12 기준)	202
<표 5-48> 근해안강망 (2011. 5 기준)	203
<표 5-49> 잠수기 (2007. 12 기준)	204
<표 5-50> 잠수기 (2011. 5 기준)	204
<표 5-51> 장어통발 (2007. 12 기준)	205
<표 5-52> 장어통발 (2011. 5 기준)	206
<표 5-53> 기타통발 (2007. 12 기준)	207
<표 5-54> 기타통발 (2011. 5 기준)	208
<표 5-55> 문어단지 (2007. 12 기준)	208
<표 5-56> 문어단지 (2011. 5 기준)	209
<표 5-57> 근해형망 (2007. 12 기준)	209
<표 5-58> 근해형망 (2011. 5 기준)	209
<표 5-59> 근해연승 (2007. 12 기준)	210
<표 5-60> 근해연승 (2011. 5 기준)	21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방법	7
<그림 1-2> 연구 흐름도	8
<그림 2-1> 사업전달체계(1995년 입찰제 도입 이전)	22
<그림 2-2> 감척사업 추진체계도	24
<그림 4-1> 근해어선 감척 기준단가 산정 이론적 범위	109
<그림 4-2> 어선규모별 평균수익액 변화	117
<그림 4-3> 어선규모별 평균비용 변화	120
<그림 4-4> 근해어업 업종별 비용 비율 구조 종합	12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과잉어획노력 투입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해 고갈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1994년부터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감척사업의 목적은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폐지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잔존가치평가액 및 연평균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한·일간 어업협정 체결로 영향을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1999년 12월 9일 시행하여 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국제 감척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산업법 제75조로 이관을 추진 중에 있음
-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어선감척사업 추진실적은 총 16,642척으로 이중 일반감척은 15,334척, 국제감척은 1,308척이며, 감척비용은 15,337억원이 소요되었음
- 이 중 근해어선 감척실적을 살펴보면 '94년부터 '10년까지 근해어선 2,576척이 감척되었고, 소요된 예산은 10,084억원으로 파악되었음
- 그러나 최근 연근해어업의 유류가 안정, 어획고 상승 등으로 감척사업

수요 감소와 감척지원 조건인 폐업지원금이 어업인 요구수준에 못 미치는 이유로 효율적인 감척 및 어업구조조정사업 목적달성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해어업의 폐업지원금을 현실에 부합되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정 할 필요성이 요구됨
- 따라서 근해어업 폐업지원금의 재산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감척사업 실태와 최근까지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지급실태를 분석하였음
- 특히, 조사대상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경영실태분석을 하였으며, 어업 경영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통계처리 등의 분석을 통해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에 따른 어선별 평년수익액을 산출함
- 근해어업 업종별 톤급별로 폐업지원금 기준단가 산정을 위한 평년수익액을 추정하여 2011년도 근해어선 감척기준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이와 더불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 및 평가기준 수량을 제시하였음

제2절 연구 추진 방법

1. 분석대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나타나 있는 근해21개 어업을 대상으로 어업실태 및 어업경영분석을 실시하여 근해어선 감척 기준단가 및 어업종류별 표준시설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우리나라 근해 어선어업을 구성하는 주요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및 어선척수 등 어선세력 실태 분석 및 현재까지 실시된 감척사업에 대한 업종별 영향 분포를 분석함
- 현재까지 실시된 감척사업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톤급별, 선령별 현황 검토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실태를 분석하여 계층별 분포를 파악하고, 최근 5년간 실시된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입찰제 기초가격 조사, 지금까지 실시된 감척사업 참여 어선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적정선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함
- 근해어업 어업실태를 파악하고 전국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실태 및 조업 현황, 생산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지역별, 업종별, 톤급별, 선령별 객관적 계층의 설정(통계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및 유형별로 분류함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자료 및 기초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근해어선 유형별 경영실태 분석(지역별, 업종별, 톤급별, 선령별)등 어업경영조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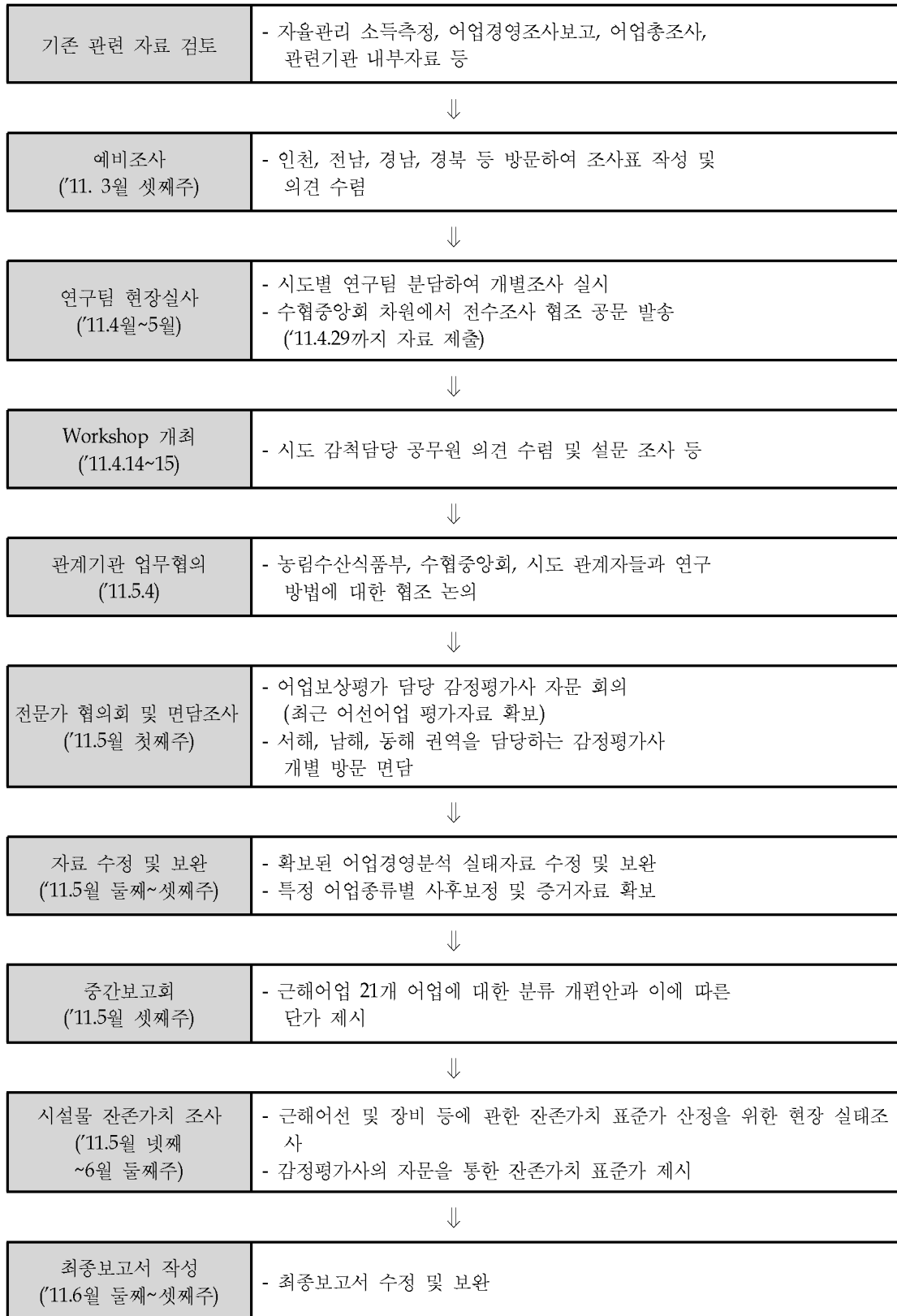
<표 1-1> 근해어업 조사대상 연구범위

업종	법령상 톤수 범위	비 고
대기저(외)	60톤 이상 140톤 미만	구분 없음
대기저(쌍)	60톤 이상 14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130톤 미만
		130톤 이상
동해구기저	20톤 이상 60톤 미만	구분 없음
서남구기저 (외)	20톤 이상 60톤 미만	구분 없음
서남구기저 (쌍)	20톤 이상 60톤 미만	50톤 미만
		50톤 이상
대형트롤	60톤 이상 140톤 미만	구분 없음
동해구트롤	20톤 이상 60톤 미만	40톤 미만
		40톤 이상
대형선망	50톤 이상 14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120톤 미만
		120톤 이상
소형선망	8톤 이상 30톤 미만	구분 없음
근해채낚기	8톤 이상 90톤 미만	35톤 미만
		35톤~65톤 미만
		65톤 이상
기선권현망	40톤 미만	200톤 미만(선단기준)
		200톤 이상(선단기준)
근해자망	8톤 이상 90톤 미만	35톤 미만
		35톤~65톤 미만
		65톤 이상
근해안강망	8톤 이상 90톤 미만	35톤 미만
		35톤~65톤 미만
		65톤 이상
잡수기	8톤 미만	1구
		2구
		3구
		4구
		5구
근해통발(장어통발)	8톤 이상 90톤 미만	35톤 미만
		35톤~65톤 미만
		65톤 이상
근해통발(기타통발)	8톤 이상 90톤 미만	35톤 미만
		35톤~65톤 미만
		65톤 이상
근해통발(문어단지)	8톤 이상 90톤 미만	구분 없음
근해형망(패류형망)	20톤 미만	구분 없음
근해연승	8톤 이상 9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35톤 미만
자리돔들망	8톤 이상 90톤 미만	35톤 이상
붕수망	8톤 이상 90톤 미만	구분 없음
		구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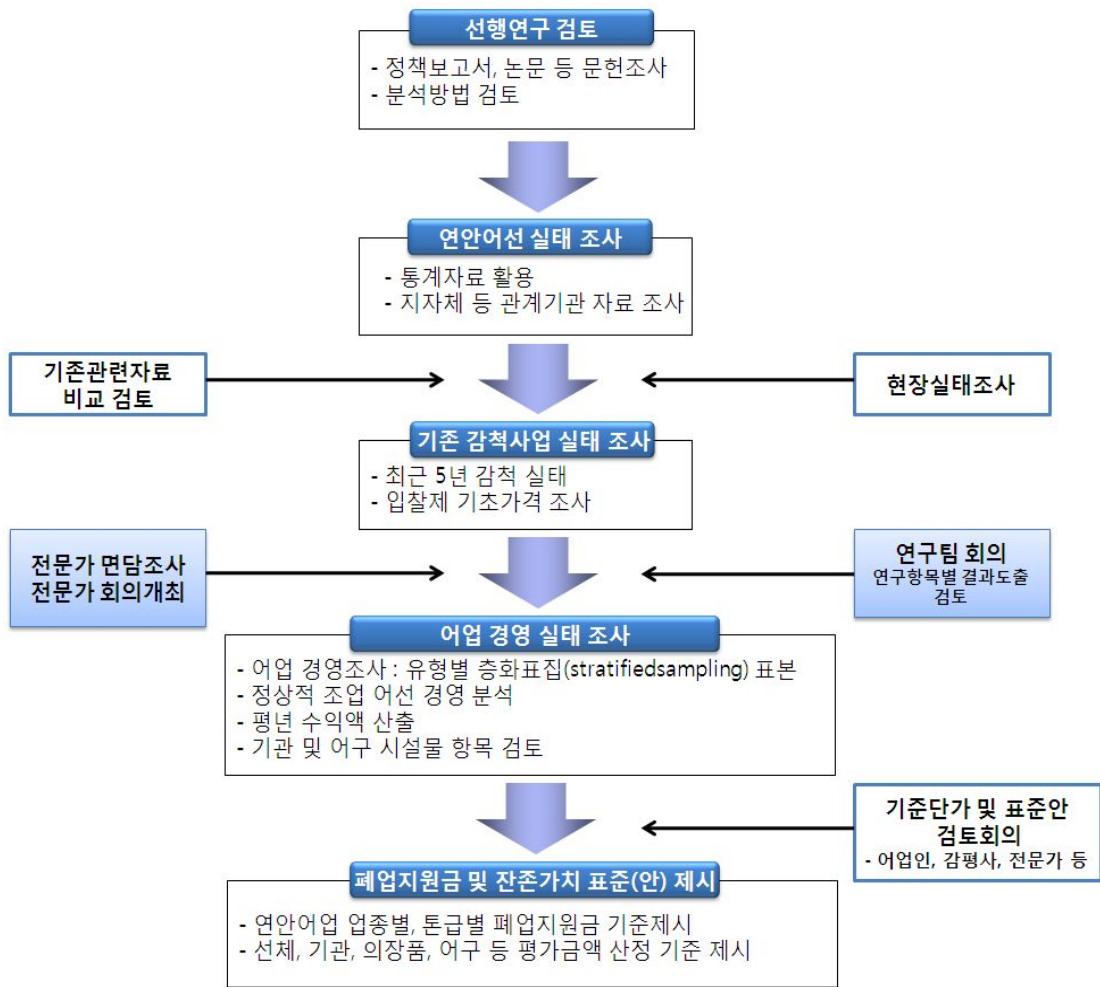
- 표본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한 근해어선 유형별 경제적 가치 추정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입찰제 기초가격을 산정함
- 근해어업 유형별(지역별, 업종별, 톤급별, 선령별 등) 어업활동을 위한 적정 어구 규모 조사 및 유형별 어선·어구 등의 기준(표준수량) 제시 및 잔존가치 평가에 포함되는 의장품·어구 등 시설의 범위 제시, 내용연수(정액법·정율법 등) 및 유형별 어선의 잔존가치 표준단가 기준 제시, 내용연수(정액법·정율법 등) 및 유형별 어구와 의장품 등 잔존가치 표준 단가 기준 등을 제시함

2. 연구 추진 방법

- 본 연구는 2011. 3. 16~ 2011. 7. 15(4개월)으로 연구기간이 매우 짧아 당초에는 근해어선 전체에 대한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어업경영실태조사를 하고자 하였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표본집단의 선정과 조사협조의 미비가 우려되어 수협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와 병행하여 도 및 시군구 근해어선감척담당 공무원들과의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및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및 협조를 구하여 추진하였음
- 근해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으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조사된 개별근해어선들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여 근해감척기준단가 및 잔존가치 표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였음



<그림 1-1> 연구 추진 방법



<그림 1-2> 연구 흐름도

3. 기존자료 분석과 적용가능성 검토

가. 수협 어업경영조사 자료

-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어업경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산업법시행령별표4에 맞는 평년수익액을 추정할 수 있었으나, 2011년 5월 현재 2010년 어업경영조사보고는 출간되지 않아 2011년도 기준단가 산정에 있어서 수협자료의 활용은 어려웠음
- 또한 어업경영조사는 농림수산물부 장관허가어업 중 14개 어업과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조사대상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14개 어업은 근해어업만 포함되어 있음
 - 14개 어업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 동해구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잠수기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연승어업
 -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제30701호)

나. 2010 연근해어업 총조사 자료

- 연근해어업 총조사 자료 중 경영실태 조사 부분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2010년에 발간된 자료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어 2011년도 기준단가 산정에는 적합하지 못함
- 연근해어업 총조사에서는 연안 11개 어업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였고, 감척기준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일부 연안어업에 대해 활용함
- 연근해어업총조사 자료에서 표본 개수는 지역별, 업종별로 3개의 표본

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표본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감척 기준단가 산정을 위해서는 톤급별 자료가 필요하나 연근해 어업총조사 자료에서는 평균톤수를 기준으로 평균톤수보다 큰 어선규모는 대규모, 평균톤수보다 작은 어선규모는 소규모로 분류하여 총 3개의 분류로 나누고 있어 톤급별 단가 산정에는 한계가 있음

다. 자율관리공동체 소득측정조사 자료

-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에서는 매년 자율관리공동체 소득측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어선어업공동체의 소득측정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음
- 자율관리공동체는 2010년말 현재 863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이 중 156개소가 어선어업공동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보고서의 분석 범위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11년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존재함
- 표본 개수는 업종별, 톤급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선공동체별로 나타나고 있어 대략적인 평균을 알 수 있어 이를 활용하였고, 또한, 156개 어선어업공동체 중 14개소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고 있어 표본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라. 소결

- 수협이 어업경영조사 보고자료는 조사대상연도가 과거 연도일 뿐만 아니라 연안어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활용할 수가 없었음. 그러나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조사한 2010 연근해어업총조사 자료와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자율관리어업 소득측정 자료는 일부 활용하였음
- 결론적으로 동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어업소득측정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동안 3년평균을 추정하여야 하고, 어업경비의 경우는 2010년도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와 더불어 자료의 내용적 측면에서 불일치가 많아 일부 자료만 동 연구에 활용함

<표 1-2> 근해감척 기준단가산정관련 기존자료 활용 가능성 종합

구 분	어업경영조사보고	연근해어업총조사	자율관리어업소득측정
자료 기준	2007~2009년	2008년 말 기준	2007~2009년
분석 업종	근해 14개 업종	연안 8개 업종	어선공동체
표본 개수	-	2008년 말 기준 지역별 업종별 3개씩	어선 공동체 14개 소
тон급 자료	-	대/중/소	-
자료활용여부	×	△	△

주 : × (활용못함), △(일부자료 활용)

제2장 근해어업 감척사업 실태 분석

제1절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현황

1.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

가. 추진배경

- 우리나라 수산업은 과잉 어획에 의한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와 어업 생산량 감소, 어선의 노후화 및 어업 경영수지 악화 등의 대내적인 문제점과 WTO/DDA 및 FTA 협정과 수산보조금 규제 가능성 등의 대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해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잉어획노력 투입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해 고갈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어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어업구조조정의 목적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과잉 어업세력을 연근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거하는 것임
- 또한,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 보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업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업을 축소하고 조정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음
- 1994년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0년까지 연안어선

14,066척, 근해어선 1,268척 등 총 16,642척을 감척하였으나, 어업자원량에 비해 어선 세력은 아직도 과도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잔존 어업자의 과도한 자원 이용 등으로 인한 어선감척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요인들 역시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유희 허가 정리와 적정 허가정수 설정, 톤수 및 마력수 제한 등 기존의 어업관리수단 관리, 불법어업 가능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법적 근거

-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해어업에 대한 감척사업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하였음
- 자율적 참여에 의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법』 제75조 (어업구조조정의 촉진)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왔음
- 또한 어업구조 조정정책을 통하여 어선 및 선단규모를 축소하면서 어선 선진화를 촉진하고, 어선 선진화 방안과 신조 대체 지원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7.25 제정되어 2012.7.26 부터 시행될 예정임

<표 2-1> 수산업법 제75조의 내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어업구조개선 시책과 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어업별 표준어선의 개발 및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어선의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협업화 등 어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의 정비·보강에 관한 사항
6. 마을어장 등 어장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자원의 상태 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구조의 개선이 요청되는 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업을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어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표 2-2> 어선감척사업 근거법 현황

구분	근거법률	조문내용
일반 감척	수산업법	제75조(어업구조조정)의 촉진 -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
국제 감척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	제4조(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 협정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한된 자에게 지원금 지급 제5조(어선원에 대한 지원) - 폐업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의 6개월분 임금 지급

2. 추진경과 및 추진방법

가. 추진경과

- 1994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0년까지 연안어선 14,066척, 근해어선 1,268척 등 총 16,642척을 감척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533,719백만원임
- 이 중에서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현황은 1,308척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친 사업이었음

-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의 추진경과는 1994년부터 현재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1994~1998년은 초기단계로, 연근해어업 중 과잉 어획능력으로 인해 자원을 남획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업종을 대상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초기단계에서는 감척대상 어업으로는 치어 등 어린고기를 남획하여 수산자원에 영향이 크고, 수입개방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해선망, 낭장망 및 연안안강망 어업과 자원량에 비하여 어선세력이 과다하고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동해구저인망 및 근해안강망어업 등 13개 근해어업과 소형기선저인망 등 무허가 어선의 감척이 주로 이루어졌음
- 1999~2002년은 제2단계로, 초기단계의 일반감척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국제감척이 새롭게 추진되었음. 구조조정 감척이 과잉어업세력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같은 국제 어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구조적 개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국제감척은 일반감척과 비교해 볼 때 사업내용과 추진체계의 차이가 없으나, 지원조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일반감척 중 연안어업의 감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고 80%, 지방비 20%, 근해어업은 어선 및 어구매입비는 100% 국고, 폐업보상비는 기준단가에 50%정액으로 지원한 반면 국제감척의 지원조건은 어선 및 어구매입비는 100%, 폐업보상비는 90% 정액으로 지원하였음
- 이와 같이 지원조건이 다른 이유는 국제감척은 어업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어업손실을 입게 된 경우의 감척이기 때문임
- 2003~2010년은 제3단계로, WTO, FTA 등 국제무역질서 및 협약 체결

로 인한 수산보조금 감소,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표 2-3>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척, 백만원)

구 분	합계	일 반 감 척			국 제 감 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94	척수	54	54	54	-	-	-	-	-
	금액	4,910	4,910	4,910	-	-	-	-	-
'95	척수	117	117	111	6	-	-	-	-
	금액	10,410	10,410	9,113	1,297	-	-	-	-
'96	척수	136	136	110	26	-	-	-	-
	금액	13,656	13,656	7,991	5,665	-	-	-	-
'97	척수	135	135	48	87	-	-	-	-
	금액	27,200	27,200	4,227	22,973	-	-	-	-
'98	척수	159	159	63	96	-	-	-	-
	금액	27,513	27,513	5,287	22,226	-	-	-	-
'99	척수	730	78	-	78	-	652	2,415	27
	금액	357,185	15,180	-	15,180	342,005	330,844	10,654	507
'00	척수	140	109	36	73	-	31	369	-
	금액	31,162	22,500	3,695	18,805	8,662	1,566	7,096	-
'01	척수	586	77	55	22	-	509	4,660	25
	금액	248,914	10,811	5,742	5,069	238,103	196,786	40,442	875
'02	척수	280	164	21	143	-	116	1,441	-
	금액	96,783	41,283	3,805	37,478	55,500	43,786	11,714	-
'03	척수	60	60	16	44	-	-	-	-
	금액	19,011	19,011	1,504	17,507	-	-	-	-
'04	척수	698	698	639	59	-	-	-	-
	금액	17,384	17,384	6,672	10,712	-	-	-	-
'05	척수	841	841	841	-	-	-	-	-
	금액	33,300	33,300	33,300	-	-	-	-	-
'06	척수	1,598	1,598	1,598	-	-	-	-	-
	금액	50,278	50,278	50,278	-	-	-	-	-
'07	척수	2,922	2,922	2,836	86	-	-	-	-
	금액	129,417	129,417	100,000	29,417	-	-	-	-
'08	척수	5,263	5,263	4,880	383	-	-	-	-
	금액	322,146	322,146	197,298	124,848	-	-	-	-
'09	척수	1,758	1,758	1,663	95	-	-	-	-
	금액	66,950	66,950	36,787	30,163	-	-	-	-
'10	척수	1,165	1,165	1,095	70				
	금액	77,500	77,500	54,700	22,800				
합계	척수	16,642	15,334	14,066	1,268	0	1,308	8,885	52
	금액	1,533,719	889,449	525,309	364,140	644,270	572,982	69,906	1,382

나. 추진방법

1) 어선감척사업 추진절차 일반현황

-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대상은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근해어업 중 대형저인망(외끌이, 쌍끌이), 중형저인망(동해구, 외끌이서남구, 쌍끌이서남구), 근해트롤(대형트롤, 동해구트롤), 근해선망(대형, 소형), 근해채낚기,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잠수기, 근해통발(장어, 기타, 문어단지), 근해형망, 근해연승어업으로 함
- 수산업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재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 중 1999.4.14.이전에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을 수산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운반한 실적은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제1항에 의한 근해어업 허가의 정수 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함
- 신청자격 및 조건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당해지역 감척 대상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어획물 운반)실적이 있는 자,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이며,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 기준일을 기산하여 어업종류별로 선령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기준으로 함
- 그리고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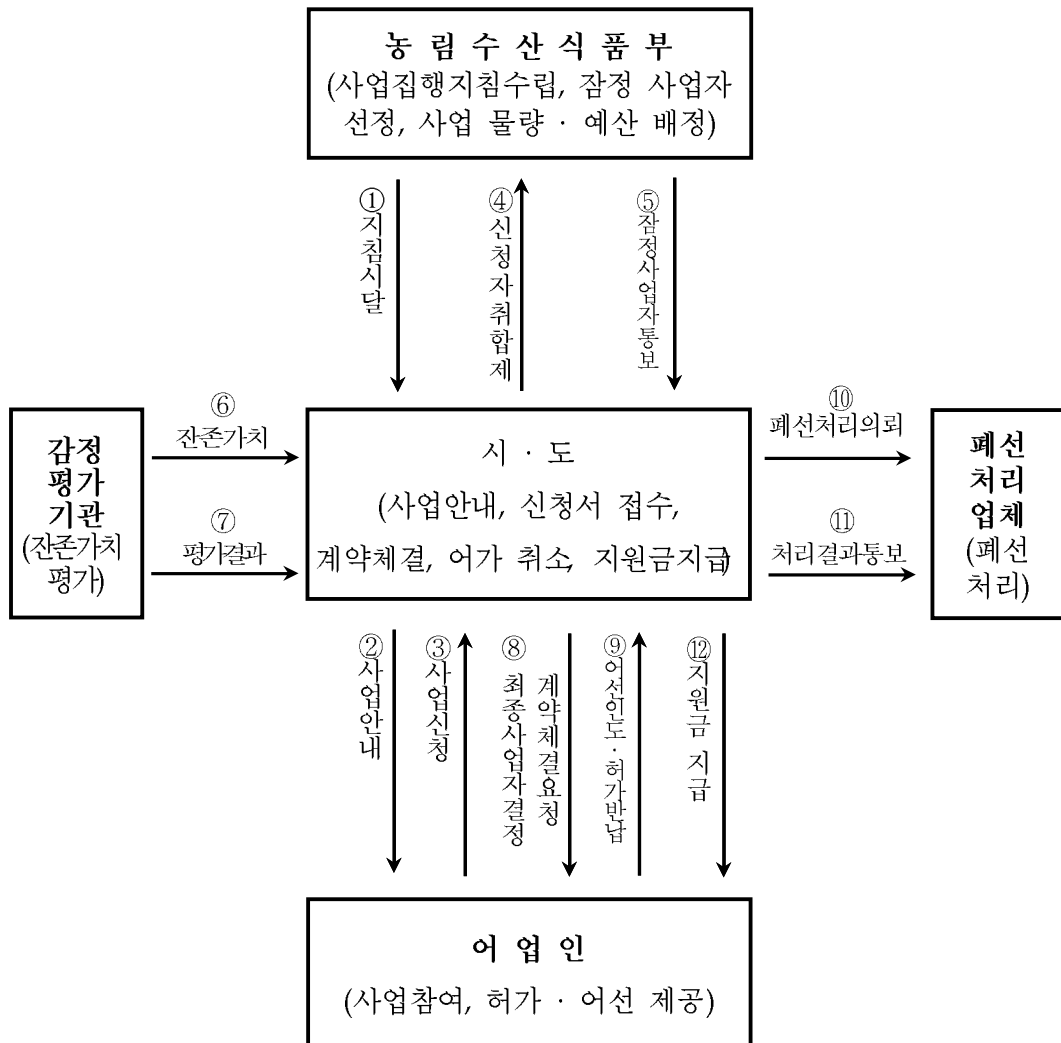
- 사업비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입찰·등기 수수료, 선체 확인비용, 위탁관리비 및 어선 해체처리·확인비 등에 사용하며,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별로 조사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연안어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이하 “잔존가치평가액”이라 한다)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함
- 폐선처리비 및 선체사실 확인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국고 100%로 보조 지원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척이 이루어지도록 지방비를 확보하여 폐업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감척 어선·어구 등 처리에서 계약 상대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감척 어선의 공공사업 활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기관) 등이 공공사업 등에 해체 대상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감척 대상어선의 어업 외 용도로 매각은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어업이 아닌 화물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기관 및 장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 해체처리 하여야 함.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국고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함

2) 현행 연안감척사업 추진체계

-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의 추진 체계도는 아래와 같으며, 추진체

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어업인, 그리고 감정평가기관과 폐선처리업체가 참여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집행 지침수립, 잠정 사업자 선정,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시·도에서는 사업안내, 신청서 접수, 계약체결, 허가취소 그리고 지원금 지급 임무를 수행함
- 어업인은 사업에 참여하여 허가 어선을 제공하게 되며, 이외 감정평가기관은 잔존가치평가를 수행하며, 폐선처리업체는 폐선처리 업무를 수행함



<그림 2-1> 감척사업 추진체계도

<표 2-4>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입찰제 절차

추진순서	수행기관	소요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농림수산식품부	즉시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즉시	○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시·도	15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입찰신청자격, 제출서류,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입찰공고 사업홍보	시·도 시·군	30일간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에 입찰안내문 발송 ○ 기초가격, 예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일시·장소,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시·군 시·도	7일간	○ 입찰참가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신청서류 접수 ○ 입찰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예정가격 작성	시·도 시·군	입찰 5일전	○ 시·도지사는 기초가격의 $\pm 2\%$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입찰	시·도 시·군	1일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장에 직접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 ○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결정 ○ 유찰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예비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 ○ 입찰결과 공개 - 입찰후 예정가격은 즉시 공개 - 사업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향후 일정 및 포기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도 시·군	30일	○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도 시·군	10일	○ 예산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최종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업어선 해체처리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 폐업지원금 입찰금액과 어선 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사업 정산	시·도	30일	○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자료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1

3. 사업의 대상

- 직접대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허가를 소유한 어업자이며, 지원내용은 어선 및 어구의 잔존가치평가액과 연간 수익액(3년평균)의 3년분에 대한 폐업지원금이고,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음

<표 2-5> 어선감척사업 지원조건

구 분	일 반 감 척	
	연안어선	근해어선
국고보조율	국고 80% 지방 20%	국고 100%
폐업 지원금 (평균 3년분)	100%	최대 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다음으로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 + 잔존가치 평가액)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제2절 2011년 근해감척사업 주요내용

1. 목적 및 추진 방향

-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탄소배출(연료소모)이 많은 업종, 불법어업 가능업종(국제적인 IUU 근절) 우선감척 등을 통해 선진어업으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함임
- WTO/DDA,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5%인 1,280여척 감척을 추진하고, 조업분쟁 및 자원 남획형 어업, 외국의 EEZ내 입어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어려워진 어업, 유류소모량이 많은 업종 등을 위주로 감척할 예정임

2.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가. 사업대상

- 근해어선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 중형저인망(동해구외끌이, 서남구외끌이, 서남구쌍끌이),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어업으로 함. '10년말 기준으로 허가처분건가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근해봉수망, 근해문어단지, 근해자리돔들망,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제외함
- 어획물운반선은 「수산업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재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 중 1999.4.14.이전에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

박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을 「수산업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운반한 실적은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근해어업 허가의 정수 보다 허가건수(2010년말 기준)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함

나. 2010년도 사업 대상어업의 순위

<표 2-6> 사업 대상어업 순위

순위	대상어업	어업허가(2010)		초과내역	
		허가처분 (A)	허가정수 (B)	척(통)수 (A-B)	비율
1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39	20	19	95.0
2	동해구중형트롤	39	23	16	69.6
3	근해장어통발	63	40	23	57.5
4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42	29	13	44.8
5	대형트롤	52	37	15	40.5
6	잡수기 제3구	129	93	36	38.7
7	외끝이대형저인망	47	34	13	38.2
8	근해통발	214	159	55	34.6
9	소형선망	47	35	12	34.3
10	잡수기 제4구	52	39	13	33.3
11	잡수기 제5구	37	28	9	32.1
12	근해형망	94	72	22	30.6
13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	9	7	2	28.6
14	근해자망	707	569	138	24.3
15	잡수기 제2구	11	9	2	22.2
16	근해안강망	238	199	39	19.6
17	잡수기 제1구	7	6	1	16.7
18	기선권현망	77	68	9	13.2
19	근해채낚기	699	618	81	13.1
20	근해연승	536	479	57	11.9
제외	쌍끝이대형저인망	34	38	-4	-10.5
"	대형선망	25	29	-4	-13.8
"	근해자리돔들망	5	6	-1	-16.7
"	근해문어단지	33	40	-7	-17.5
"	근해봉수망	40	55	-15	-27.3

※ 감척사업자 선정이후 잔여예산 발생시 동 우선순위에 의거 추가감척 물량 결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 2011년도 사업비는 4,000백만원(국비 100%), 10척(통)임

나.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내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초금액 대비 응찰율이 가장 낮은 어업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척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결정(이하 “잠정사업자”라 함)하여 통보함. 응찰율이 동일한 경우 사업 대상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잠정사업자를 선정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잠정 사업자를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잔존가치평가액”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 2011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함

다. 사업 집행주체

- 사업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사업 시행주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사업 집행체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시·도지사는 사업 안내 등 홍보,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입찰집행,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분담함
-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접수, 감척어선 관리 및 폐선처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및 어선해체 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구간별로 조사된 금액을 입찰제를 통하여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액(이하 “잔존가치 평가액”이라 한다)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함
- 선단조업 어선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50% 정액) 및 잔여 어선의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하며, 어획물운반선,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함
- 기선저인망어업의 쌍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1척이 침몰하여 시행 기준일 전부터 1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대한 쌍끌이 기준

폐업지원금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1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함

- 조업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예시) A : 선단조업기간(월), B : 잔여 어선 조업기간(월) C : 폐업지원금(50% 정액)
수령액=A(36-B)/36개월 × C+B(시행일기준-잔여조업시작일)/36개월 × C×50%

-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함.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선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함
- 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100%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조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으며, 이 신청자격은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함
-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어획물운반선 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어획물운반)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어획물운반) 실적이 있는 자

-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부속선이 있는 경우 대상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함
 -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 실적으로 확인하며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 쌍끌이어업에서 1척이 조업실적 산정 기간 중 다른 어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한 현행 어선의 조업실적과 대체된 종전 어선의 조업실적을 합산하여 조업실적을 산정할 수 있음. 다만, 1척은 사업 신청자격 충족하여야 함
 - 어획물운반선은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운반선의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함

-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로,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로,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음

-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 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외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함
 -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 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낙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음
-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 선령은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함

5.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가. 입찰안내

- 사업집행주체는 입찰공고 이전에 “세부사업 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등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대상 허가어업자,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안내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어업인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

- 입찰은 입찰공고문에 의하되 사업집행주체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정하는 일자(“11.6.21)에 공개하고,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문서로 발송하여 가능한 많은 어업인들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 입찰에 붙이는 사항
 - 입찰방법(입찰신청서류 제출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제출)
 -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입찰 일시 및 장소
 - 계약체결 방법
 -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 신청서류
 -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구간별 기초가격(붙임 1)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입찰공고문은 표준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 대상 업종(그룹)별로 입찰대상 척수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하여야 입찰이 성립됨

- 입찰참가 신청서류로는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입찰서 1부(밀봉 날인),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임

라. 입찰등록

-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등록서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고, 입찰등록은 등록 마감일 일과시간(18:00) 이내로 하며, 입찰 신청시 제출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입찰등록과 동시에 입찰서를 밀봉 날인하여 사업시행주체(시·도)의 입찰함에 제출하여야 함

마. 입찰집행

-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11. 7. 19. 14:00 전국 시·도 동시에 입찰함의 입찰서를 개봉함으로서 입찰을 집행하고, 입찰시 수협관계자, 어업인, 공무원 등 최소 3인 이상은 배석하여 입찰집행 상황을 참관하여야 함
- 각 시·도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1~2일 변경 가능
- 입찰참가 신청한 어업인은 누구나 입찰장소에 입장하여 참관할 수 있고,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과 업종(그룹)별 톤급·구간별 기초가격과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고, 전체예산을 고려하여 입찰대상 척수의 1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함
- 입찰결과 참가어업인의 요구시 본인의 응찰금액 및 응찰율, 시·도내 우선순위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 시·도별 입찰집행관은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수신식품부장관은 전국자료를 취합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입찰 참가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본 지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2011년도 사업예산의 잠정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함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재공고 입찰에도 사업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차 투찰가격보다 2차 투찰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1차 참여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바. 입찰결과 안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의 집행절차, 예산의 지원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인별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응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함

6.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당해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5(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와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에 의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음
-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함

7.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 사업자의 확정 및 지원금 집행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

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

가. 계약체결

-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자와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 계약은 자동 해지됨
-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주체가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 이행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지원금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결정 내용과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의 허가가 폐지되고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허가도 폐지됨을 통지하여야 함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확정, 사업비 중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치

-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함

9.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10. 감척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 계약 상대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수협

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당해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함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하며(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 감척 대상어선의 어선어업 외 용도로 매각

-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
-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 폐업어선 중 선령 10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함
-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함
 - 타 업종이더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집행주체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6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함
 - 어업허가증 · 선박국적증서 · 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 · 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 사업집행주체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함
-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당해어선을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정부(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함
-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사업집행주체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함
-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함.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음

마. 해체처리 등

- 기관 및 장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 해체 처리 하여야 함
 -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음
 -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음
-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하고,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고, 해체 처리시에는 사전에 사업 집행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처리대상 업체선정과 감척어선의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어구 등의 매각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바. 매각대금의 처분

-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국고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국고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11.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어선·어구 및 어업허가증을 인도(반납)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상대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체 증명서가 제출되어 어선등록을 말소한 후 지급하거나, 사업추진상 필요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계약 체결일을 기

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함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잔존가치 평가액)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 잠정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함
 -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함
 - 잠정 사업자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아래 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함.
 -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함
- 사업비의 집행은 계약상대자가 시·도에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집행함
-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등)에 대해 별도로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바. 폐업지원금의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하며,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수수료, 폐선처리 비용도 부담시켜야 함

12.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제3장 근해어업별 조업실태

제1절 근해어업 일반현황

1. 근해어업 기초자료 분석

가. 연도별 지역별 척수 및 톤수 현황

- 1994년 6,541척이었던 근해어선척수는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 5,937척으로 6천척 이하로 감소하였고, 이후 2004년에 3,773척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 현재 2,895척으로 나타났음

<표 3-1> 연도별 근해 어선척수 및 톤수, 허가건수

구 분	척수(A)	톤수(B)	B/A	허가건수
1994	6,541	329,211	50	-
1995	6,567	323,407	49	-
1996	6,293	319,370	51	7,573
1997	6,345	315,229	50	7,374
1998	6,165	302,324	49	7,158
1999	5,937	291,607	49	6,914
2000	5,287	247,275	47	5,874
2001	5,014	231,909	46	5,591
2002	4,541	204,200	45	4,904
2003	4,166	185,773	45	4,637
2004	3,773	169,724	45	4,467
2005	3,687	164,036	44	4,360
2006	3,629	162,831	45	4,246
2007	3,573	162,264	45	4,056
2008	3,385	148,032	44	3,957
2009	3,047	132,436	43	3,404
2010	2,875	127,382	44	3,276

자료 :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경남이 748척으로 가장 많은 근해어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기선권현망의 척수가 304척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전남이 515척으로, 근해자망의 척수가 146척으로 조사되었고, 부산이 340척으로 대형선망과 소형선망이 각각 143척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3-2> 근해어업 어업종류별 지역별 어선척수

(2010년 12월말 기준, 척수)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해어업총계	2,949	340	126	62	17	176	265	98	515	323	748	279
대형저인망	112	50	12	0	0	0	0	0	24	0	26	0
외끌이대형저인망	47	21	0	0	0	0	0	0	16	0	10	0
쌍끌이대형저인망	65	29	12	0	0	0	0	0	8	0	16	0
중형저인망	99	11	0	9	0	13	0	0	11	26	28	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9	0	0	0	0	13	0	0	0	26	0	0
서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42	11	0	9	0	0	0	0	9	0	12	1
서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18	0	0	0	0	0	0	0	2	0	16	0
근해트롤	91	44	0	0	0	6	0	0	0	33	8	0
대형트롤	52	44	0	0	0	0	0	0	0	0	8	0
동해구중형트롤	39	0	0	0	0	6	0	0	0	33	0	0
근해선망	222	143	2	0	0	2	9	5	7	6	48	0
대형선망	144	143	0	0	0	0	0	0	1	0	0	0
소형선망	78	0	2	0	0	2	9	5	6	6	48	0
근해채낚기	500	41	2	25	1	126	10	5	34	178	41	37
기선권현망	399	4	0	1	0	0	0	0	90	0	304	0
근해자망	401	15	51	22	1	2	24	10	146	32	37	61
근해안강망	230	0	14	0	4	0	119	25	68	0	0	0
근해봉수망	10	0	0	0	0	0	1	2	5	0	1	1
근해봉수망	10	0	0	0	0	0	1	2	5	0	1	1
근해자리돔들망	0	0	0	0	0	0	0	0	0	0	0	0
잠수기	236	1	11	0	4	7	14	8	52	11	128	0
근해통발	226	12	14	5	3	19	24	2	27	35	78	7
근해장어통발	62	5	0	0	0	0	3	0	2	0	52	0
근해통발	142	7	13	5	3	19	20	0	14	35	25	1
근해문어단지	22	0	1	0	0	0	1	2	11	0	1	6
근해형망	92	0	14	0	4	1	40	33	0	0	0	0
근해연승	331	19	6	0	0	0	24	8	51	2	49	172

<표 3-3> 근해어업 지역별 척수 및 톤수 현황(1)

(2010년 12월말 기준, 척수)

업종	총계		부산		인천		울산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근해어업	2,875	127,382	340	38,504	124	4,458	68	2,454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44	3,093	20	1,734	0	0	0	0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76	8,644	34	4,641	10	940	0	0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43	2,383	0	0	0	0	0	0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42	2,295	11	745	0	0	9	649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15	822	0	0	0	0	0	0
대형트롤어업	53	7,273	45	6,242	0	0	0	0
동해구트롤어업	39	2,064	0	0	0	0	0	0
대형선망어업	153	22,361	148	22,194	0	0	0	0
소형선망어업	77	1,144	0	0	0	0	0	0
근해채낚기어업	476	17,650	39	1,469	3	46	21	872
기선권현망어업	408	16,709	2	31	0	0	9	328
근해자망어업	415	11,123	11	262	81	2,224	23	405
근해안강망어업	229	11,301	0	0	12	931	0	0
근해봉수망어업	3	35	0	0	0	0	0	0
잠수기어업	228	1,093	0	0	0	0	0	0
장어통발어업	57	3,705	5	383	0	0	0	0
기타통발어업	110	5,768	6	372	10	170	5	131
문어단지어업	9	105	0	0	0	0	0	0
패류형망어업	75	873	0	0	1	13	0	0
근해연승어업	323	8,939	19	432	7	134	1	69

<표 3-4> 근해어업 지역별 척수 및 톤수 현황(2)

(2010년 12월말 기준, 척수)

업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근해어업	9	131	172	7,830	239	6,061	118	3,117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0	0	0	0	0	0	0	0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0	0	0	0	0	0	0	0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0	0	11	688	0	0	0	0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0	0	0	0	0	0	0	0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0	0	0	0	0	0	0	0
대형트롤어업	0	0	1	58	0	0	0	0
동해구트롤어업	0	0	4	234	0	0	0	0
대형선망어업	0	0	0	0	0	0	2	20
소형선망어업	0	0	2	29	15	203	8	91
근해채낚기어업	0	0	123	5,610	6	181	1	19
기선권현망어업	0	0	0	0	1	20	0	0
근해자망어업	2	34	10	275	31	903	14	258
근해안강망어업	4	65	0	0	117	3,553	24	1,669
근해봉수망어업	0	0	0	0	0	0	2	26
잠수기어업	0	0	5	22	29	218	0	0
장어통발어업	0	0	1	24	2	115	0	0
기타통발어업	1	10	11	688	16	526	1	13
문어단지어업	0	0	0	0	0	0	0	0
패류형망어업	2	22	0	0	11	131	53	601
근해연승어업	0	0	4	201	11	210	13	421

<표 3-5> 근해어업 지역별 척수 및 톤수 현황(3)

(2010년 12월말 기준, 척수)

업종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근해어업	417	15,888	321	13,141	777	27,411	290	8,387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16	913	0	0	8	446	0	0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8	732	0	0	24	2,331	0	0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0	0	32	1,695	0	0	0	0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9	349	0	0	12	513	1	39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3	114	0	0	12	708	0	0
대형트롤어업	0	0	0	0	7	973	0	0
동해구트롤어업	0	0	35	1,830	0	0	0	0
대형선망어업	1	55	0	0	2	92	0	0
소형선망어업	7	99	1	19	42	654	2	49
근해채낚기어업	9	195	186	7,056	48	1,324	40	878
기선권현망어업	81	4,026	0	0	315	12,304	0	0
근해자망어업	117	2,983	29	957	41	918	56	1,905
근해안강망어업	71	5,061	0	0	1	22	0	0
근해봉수망어업	1	10	0	0	0	0	0	0
잠수기어업	54	275	10	50	130	529	0	0
장어통발어업	1	77	0	0	48	3,106	0	0
기타통발어업	8	339	21	1,332	28	2,054	3	133
문어단지어업	4	46	0	0	0	0	5	60
패류형망어업	2	16	0	0	6	90	0	0
근해연승어업	25	598	7	202	53	1,349	183	5,323

나. 근해어업별 지역별 어업인수

-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의 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어업인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으로 5,370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이 4,568명, 전남이 3,027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3-6> 근해어업 어업인수(1)

(2010년 12월말 기준)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근해어업총계	22,049	4,568	862	352	85	1,382
대형저인망	1,315	728	108	0	0	0
외끌이대형저인망	463	220	0	0	0	0
쌍끌이대형저인망	852	508	108	0	0	0
중형저인망	913	77	0	89	0	117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11	0	0	0	0	117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57	77	0	89	0	0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45	0	0	0	0	0
근해트롤	1,056	605	0	0	0	60
대형트롤	722	605	0	0	0	0
동해구중형트롤	334	0	0	0	0	60
근해선망	2,495	2,028	0	0	0	8
대형선망	2,048	2,028	0	0	0	0
소형선망	447	0	0	0	0	8
근해채낚기	3,375	340	18	133	12	1,008
기선권현망	2,680	36	0	20	0	0
근해자망	2,804	60	415	84	17	16
근해안강망	1,443	0	126	0	27	0
근해봉수망	84	0	0	0	0	0
근해봉수망	84	0	0	0	0	0
근해자리돔들망	0	0	0	0	0	0
잠수기	713	7	33	0	10	21
근해통발	1,755	105	78	26	12	152
근해장어통발	632	57	0	0	0	0
근해통발	962	48	78	26	12	152
근해문어단지	161	0	0	0	0	0
근해형망	409	0	60	0	7	0
근해연승	3,007	582	24	0	0	0

<표 3-7> 근해어업 어업인수(2)

(2010년 12월말 기준)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해어업총계	1,086	671	3,027	2,204	5,370	2,442
대형저인망	0	0	200	0	279	0
외끌이대형저인망	0	0	160	0	83	0
쌍끌이대형저인망	0	0	40	0	196	0
중형저인망	0	0	120	194	309	7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0	0	0	194	0	0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0	0	90	0	94	7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0	0	30	0	215	0
근해트롤	0	0	0	274	117	0
대형트롤	0	0	0	0	117	0
동해구중형트롤	0	0	0	274	0	0
근해선망	63	52	99	50	195	0
대형선망	0	0	20	0	0	0
소형선망	63	52	79	50	195	0
근해채낚기	60	17	85	1,060	369	273
기선권현망	0	0	586	0	2,038	0
근해자망	100	151	730	330	352	549
근해안강망	490	216	584	0	0	0
근해붕수망	7	14	35	0	19	9
근해붕수망	7	14	35	0	19	9
근해자리돔들망	0	0	0	0	0	0
잠수기	42	32	156	44	368	0
근해통발	94	15	156	210	867	40
근해장어통발	0	0	10	0	565	0
근해통발	90	0	42	210	294	10
근해문어단지	4	15	104	0	8	30
근해형망	210	132	0	0	0	0
근해연승	20	42	276	42	457	1,564

다. 업종별 평균 선령

- 근해어업의 2010년 현재 업종별 평균 선령을 살펴보면,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평균 선령이 29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대형선망이 26년,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이 25년 등으로 나타났음

<표 3-8> 업종별 평균선령(2010년 통계기준)

업종명	평균선령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29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20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29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2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9
대형트롤어업	18
동해구트롤어업	21
대형선망어업	26
소형선망어업	11
근해채낚기어업	15
기선권현망어업	22
근해자망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6
잠수기어업	12
장어통발어업	11
기타통발어업	17
문어단지어업	13
패류형망어업	14
근해연승어업	12

2. 허가정수 대비 초과 및 미달 어업

- 우리나라 근해어업은 총 2,732건의 허가정수에 3,276건이 있으며, 근해채낚기가 589건으로 가장 많으며 근해자망 569건, 근해연승 479건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북 575건, 경남 557건, 전남 435건 순임

<표 3-9> 근해어업 허가정수 대비 초과 및 미달 어업 현황(2010년말 기준)

구 분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해어업	2,732	3,276	254	179	99	22	322	325	124	435	575	557	384	544
• 대형저인망(외)	34	47	21							16		10		13
• 대형저인망(쌍)	38	34	16	6						4		8		-4
• 동해구저인망	20	39					13				26			19
• 서남구(외)	29	42	11		9					9		12	1	13
• 서남구(쌍)	7	9								1		8		2
• 대형트롤	37	52	44									8		15
• 동해구트롤	23	39					6				33			16
• 대형선망	29	25	24								1			-4
• 소형선망	35	47		1			1	9	9	6	2	19		12
• 근해채낚기	618	699	61	17	34	2	150	22	10	34	231	70	68	81
• 기선권현망	68	77	1		1					16		59		9
• 근해자망	569	707	30	62	36	3	72	44	12	146	151	64	87	138
• 근해안강망	199	238		20	1	5		119	25	68				39
• 근해봉수망	55	40	1		2		3	1	2	5	13	5	8	-15
• 자리돔들망	6	5											5	-1
• 잠수기	175	236	1	11		4	7	14	8	52	11	128		61
• 장어통발	40	63	5					3		2		52	1	23
• 기타통발	159	214	8	18	6	4	26	29		14	72	35	2	55
• 문어단지	40	33		3			1	1	2	11	2	1	12	-7
• 패류형망	72	137		17		4	43	40	33					65
• 근해연승	479	493	31	24	10			43	23	51	33	78	200	14

제2절 조사대상 근해어업 조업실태 분석

- 2010년 현재 근해어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건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근해자망으로 707건으로 나타났고, 허가정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근해채낚기어업으로 618척으로 조사되었음. 각 어업에 대한 주요 어종과 조업구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10> 근해어업 일반현황(1)

(2010년 12월말 기준)

종류 (명칭)	허가 건수 (어선 척수)	허가 정수	종사자 (승선원)	주요 어종	주 조업구역	관련단체
대형저인망어업	81 (112)	72	1,315	삼치, 갈치, 참조기, 아귀	제주근해, 서해중부해역	대형기선 저인망수협
외끌이대형저인망	47(47)	34	463			
쌍끌이대형저인망	34(65)	38	852			
중형저인망어업	90 (99)	56	913	가자미, 아귀, 도루묵, 멸치	제주서방해역, 남해 (제주~대마도)	동해구 기저수협, 서남구 기저수협
동해구외끌이	39(39)	20	311			
서남해구외끌이	42(42)	29	357			
서남해구쌍끌이	9(18)	7	245			
근해트롤어업	91 (91)	60	1,056	오징어, 갈치, 삼치	제주남부, 남해 (제주~대마도)	대형기선 저인망수협
대형트롤	52(52)	37	722			
동해구트롤	39(39)	23	334			
근해선망어업	72 (222)	64	2,495	고등어, 삼치, 청어	서해, 제주근해	대형선망 수협
대형선망	25(144)	29	2,048			
소형선망	47(78)	35	447			
근해채낚기어업	699 (500)	618	3,375	오징어, 갈치	동해	근해오징어채 낚기 연합회
기선권현망어업	77 (399)	68	2,680	멸치	전남·경남연안 , 동해남부 경남, 울산이남 전남 해역	기선권현망수 협
기선권현망 제1구	62(309)	54	2,094			
기선권현망 제2구	16(90)	14	586			

<표 3-11> 근해어업 일반현황(2)

(2010년 12월말 기준)

종류 (명칭)	허가 건수 (어선 척수)	허가정수	종사자 (승선원)	주요 어종	주 조업구역	관련단체
근해자망어업	707 (401)	569	2,804	참조기 꽃게, 대게	전국연근해	근해유망 수협
근해안강망어업	238 (230)	199	1,443	참조기 병어, 멸치,젓새우, 아귀	서해, 제주서방해역	근해안강망수 협
근해봉수망어업	45 (10)	61	84	꽂치, 자리돔	전남·경남연안, 제주해역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40(10) 5(0)	55 6	84 0		전국 근해 제주도연해	
잠수기어업	236 (236)	175	713	키조개, 개조개, 해삼	경남·전남 연안	제1·2구 잠수기수협, 제3·4구 잠수기 수협
제1구	7(7)	6	21		강원도 연해	
제2구	11(11)	9	44		경북도 연해	
제3구	129(129)	93	375		부산·울산·경 남	
제4구	52(52)	39	156		전남연해	
제5구	37(37)	28	117		전북·충남·경 기	
근해통발어업	310 (226)	239	1,755	붕장어 볶은 대게,문어	동해, 전국연근해	근해통발 수협
근해장어통발	63(62)	40	632			
근해통발 근해문어단지	214(142) 33(22)	159 40	962 161			
근해형망어업	94 (91)	72	409	새조개, 키조개, 소라고둥	서해	
패류형망어업 제1구 패류형망어업 제2구	61(58) 33(33)	55 17	277 132		인천·경기·충 남 전북연해	
근해연승어업	536 (332)	479	3,007	갈치,복어 대구,홍어	제주근해, 전국연근해	
계	3,276 (2,949)	2,732건	22,049명			

1.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가. 어업허가 현황

- 대형기선저인망(외)는 총 44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20척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이 16척, 경남 8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12> 대형기선저인망(외)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전남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44	3,093	20	1,734	16	913	8	446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34건데도 불구하고 허가처분건수가 47건으로, 정한수초과 건수는 13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13> 대형기선저인망(외)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건수
	계	부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	47	21	16		10		13

나. 조업현황

- 외끌이기선저인망은 대형기선저인망과 중형기선저인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형기선저인망은 128° 이서해역에서 조업하도록 규제되고 있고, 총톤수 60톤 미만의 중형기선저인망은 128°선을 기준으로 이서해역에서 조업하는 서남해구기선저인망과 이동해역에서 조업하는 동해구기선저인망으로 세분되어지고 있음

- 동 어업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에 비해 장시간 어구를 끌지 않기 때문에, 다소 규모가 작고 예망력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어선규모는 70-80톤급, 어선마력수는 250-300HP정도이나 쌍끌이와 마찬가지로 어획물은 대부분 냉동처리 되고 있으며, 주 어기는 11월에서 익년 6월로서 이 기간 중 연간 어획량의 80%이상을 어획하고 있고 있는 실정임
- 주 어장은 서해와 남해어장으로서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해와 남해어장을 비슷한 비율로 이용해 왔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남해어장 이용율이 70-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970년대 초반에는 눈불대, 대구, 가자미류가 주 어획 대상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쥐치의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60%이상을 어획하기도 하였음
- 1980년대 이후에는 쥐치 혼획률이 줄어들어 1997년 경우, 총어획량 10,508톤중 가자미가 1,558톤으로 15%를 점한 반면 쥐치의 어획은 미미한 실정임
- 외끌이저인망어업은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하며 어선1척이 양측에 날개그물이 달린 자루그물을 투망한 다음 후릿줄로 대상 생물을 그물 속에 몰아넣어 어획하고 있음
- 어구의 형태는 쌍끌이저인망이나 저층 트롤망과 유사하지만 조업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며, 외끌이저인망어업은 투망할 때 부표를 던지고 후릿줄과 끌줄을 마름모꼴 또는 삼각형으로 투하한 다음 투망시 던진 부표를 건지고 끌줄을 예인하여 끌줄과 후릿줄이 오므라들면서 포위된 어군만 어획이 가능한 어업임
- 끌줄과 후릿줄이 어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어군의 포위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 쌍끌이저인망이나 저층 트롤보다 훨씬 긴 줄을 사용하고 있음

- 어군을 효과적으로 그물 속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끌줄과 후릿줄이 어군보다 빨리 오므라들지 않도록 후릿줄에 작은 체인을, 후릿줄과 끌줄 사이에 큰 체인을 달아 사용하며, 갑판에 잘 사려지는 굵은 섬유로프나 컴파운드 로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표 3-14>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규 모 (톤)	선원 수 (명)	어규규모	
					사용 망목	사용 수량
전라남도	참조기, 보구치, 아귀	9~5	39~69	8~9	40.4mm	1통
부산시	가자미, 붕장어, 아귀, 눈볼대, 갈치, 조기 등	연중 (10~5)	45~100	12~13	40mm	1통
울산시	가자미, 눈볼대, 참돔, 황돔, 붕장어, 문어, 아귀	9~6	20~60	8~10	33mm	1통
강원도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청어	6~4	50톤 내외	5~10	40mm	1통
경상북도	가자미, 도루묵, 대구, 새우	연중 (5월제 외)	50톤 내외	7~10	40mm	1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쌍끌이)

가. 어업허가 현황

- 대형기선저인망(쌍)은 총 76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34척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24척, 인천 10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15> 대형기선저인망(쌍)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인천		전남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76	8,644	34	4,641	10	940	8	732	24	2,331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38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34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3-16> 대형기선저인망(쌍)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부산	인천	전남	경남	
38	34	16	6	4	8	-4

나. 조업현황

-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은 저층끌이 그물류에 속하는 어업으로서 2척의 어선이 한 선단으로 구성되어 1통의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며 어업허가 조건에 의거, 실통수 60톤이상 140톤미만의 어선임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 어기는 10월에서 다음해 2월의 동절기로서 이 기간 중에 연간 어획량의 50-60%를 어획하고 있음
- 주 어장은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전 해역의 약100m 내외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쌍끌이저인망어업은 1개의 자루그물을 2척의 선박이 끌줄을 1개씩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예망하여 어획함
- 자루 그물의 구성은 등판, 밑판, 옆판으로 되어 있으며 양쪽 옆판의 앞쪽엔 날개 그물이 달려 있으며, 날개 그물 앞쪽에는 그물 목줄과 깃대를 부착하여 날개 그물이 잘 벌어지도록 하고 그 앞에 후릿줄과 끌줄을 연결하는 구조임
- 후릿줄은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 그물 속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직경이 굵은 컴파운드 로프 등을 사용하며, 끌줄은 높은 장력에 견디는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은 1970년대 초에는 참조기, 갈치, 강달이 순이었으며 이들 어종의 혼획율은 전체 어획물의 50% 이상을 점하였음.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꽃게, 보구치, 갑오징어의 혼획율이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참조기, 갈치 강달이 등도 많이 어획되고 있는 실정임
-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은 과거에는 50-80톤급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점차 대형화하여 최근에는 100톤을 넘는 어선들이 많고, 어획물도 과거에는 빙장이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냉동처리 되고 있음

<표 3-17>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 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 망목	사용 수량
경기·인천	홍어, 가오리, 서대, 넙치, 아귀	1~12	90~110	21~24	54mm	1통
전라남도	참조기, 보구치, 아귀	8~6	39~69	8~9	60mm	1통
경상남도	삼치, 갈치, 병어, 기타	연중	59~134	24~25	54mm	1통
부산시	삼치, 오징어, 갈치, 조기	연중 (휴어기: 4~7)	80~140	12~14	54mm	1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3. 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

가. 어업허가 현황

- 대형트롤은 총 53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45척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7척, 강원이 1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18> 대형트롤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강원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53	7,273	45	6,242	1	58	7	973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37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52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15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19> 대형트롤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부산	경남	
37	52	44	8	15

나. 조업현황

- 트롤어업이란 긴자루형의 그물 양측에 날개그물을 달고 상부에는 부자를, 하부에는 침자를 부착하여 날개그물앞쪽에 그물을 좌우로 벌리기 위한 전개판을 부착하고 양측 전개판에 끝줄을 연결한 어구 1통을 동력선 1척이 해저를 예인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으로 저인망 어업과 유사한 어업이며 수심에 따라 저층트롤과 중층트롤로 구분되어지고 있음
- 동 어업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어구인 전개판은 예인시 끌려가면서 수압을 받아 좌우로 벌어지게 되어있고, 또한 무게에 의하여 전개판의 아랫변이 해저에 접하여 예인되므로 그 뒤에 따라오는 그물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해저에 닿게 하는 장치로 만곡형과 평판형이 있는데 대부분 전개력이 큰 만곡형 전개판을 사용하고 있음
- 2010년 12월말 현재 대형트롤어업의 허가처분건수는 전국에 걸쳐 91건으로 주요 어항지는 부산, 마산, 여수, 삼천포 등지이며, 조업해역은 과

거에는 주로 동지나해나 서남해안이었으나 최근에는 오징어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 어장이 동지나해(겨울, 봄)와 동해안(여름, 가을)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임

- 대형트롤어업의 조업에 이용되는 어선은 신톤수 기준으로 120톤내외의 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어선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최근 신조되는 어선은 수산업법상 상한선인 140톤 규모에 거의 육박하는 대형선박이 건조되고 있으며, 어선의 특징으로는 해저의 포획된 그물을 양망하는 관계로 타 어업의 어선과 비교할 때 톤급에 비해 마력수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임
- 대형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은 해저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물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등판, 옆판, 날개그물로 되어 있으며, 등판과 밑판과 밑판 및 옆판의 수에 따라 4매망, 6매망, 8매망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또한, 8매망 이상을 세미 점보망, 12매망 이상을 점보망이라고 부르고 있음
- 동 어업의 승선원수는 1980년대에는 12~13명이 승선하여 조업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어선의 대형화에 따라 15명 정도가 승선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어선의 규모가 60톤 이상 140톤 미만(구 톤수 80톤 이상 170톤 미만)을 대형트롤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조업은 연중 조업하는 주년조업이며, 주로 오징어를 어획하는 여름 및 가을에는 어획이 순조로워 1항차 기간이 10일 내외임. 이에 비하여 갈치, 삼치 등을 어획하는 겨울과 봄에는 어획이 부진한 탓에 1항차 기간이 약 30~40일 정도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표 3-20> 대형트롤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 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 망목	사용 수량
부산시	오징어, 병어, 갈치, 조기	연중 (휴어기: 4~7)	140	14~16	54mm	1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4. 동해구트롤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동해구트롤은 총 39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경북이 35척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이 4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21> 동해구트롤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강원		경북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39	2,064	4	234	35	1,830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23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39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16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22> 동해구트롤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강원	경북	
23	39	6	33	16

나. 조업현황

- 동해구트롤선은 59톤급, 420마력인 강선이며, 일부가 최근 650~850마

력으로 고마력엔진을 사용하고 있음. 조업은 투망 및 양망을 좌현에서, 예망을 선미에서 하는 현측식(또는 반선미식) 조업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동 어업의 어장구역은 연안 8마일 바깥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조업수심은 대상어종 및 어기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 대체로 300~600m의 심해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특히 저질이 해초가 무성하거나 소형 불가사리가 많은 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동해구 중형트롤어업은 어선의 규모가 20톤 이상 60톤 미만(구 톤수 20톤 이상 80톤 미만)이며 동해안에서 트롤 어구를 사용하여 도루묵, 가자미, 청어, 임연수어, 오징어, 명태 등을 잡고 있는 실정임
- 사용어구를 살펴보면, 420마력의 트롤선은 전통적인 4매식 새우망을 사용하고 있고, 650마력이상급 트롤선은 삼각망을 부착하여 망고를 높인 6매식 새우망을 사용하고 있음
- 동해구트롤은 연안 8~10마일 이내 조업금지의 어장제한이 있는데, 가자미류나 대게류 등은 일반적으로 이 경계선 부근이나 그 안쪽의 수심 200~350m인 어장에서 어획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조업중 이 경계선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동해구트롤은 그물의 인망시 전개판은 유수 저항을 받아 각각 좌우로 벌어지고 전개력이 후릿줄에 전달되어 망구가 좌우로 전개되면, 예인중의 끌줄 및 후릿줄이 이루는 형상은 장형의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음
- 동 어업의 어기는 연중 조업되고 있으나 주어기는 1-3월로서 이 기간 동안 연간 어획량의 50% 이상을 어획하고 있으며, 주 어장은 울릉도와 부산사이의 동해 중·남부해역임

- 척당 승선원수는 1980년대에는 10명이 승선하여 조업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선원의 구인난에 따라 7~8명이 승선, 조업하고 있는 실정임
- 조업은 연중 조업하는 주년조업이며 1항차당 일수는 연안에서 조업하는 탓에 보통 새벽 4시경에 출어하여, 정오경에 입항하는 당일 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만, 명태가 주 어획대상이 되는 겨울에는 2~3일 정도 출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3> 동해구트롤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 망목	사용 수량
강원도	청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10~4	50톤 내외	5~7	43mm	1통
경상북도	청어, 가자미, 오징어, 도루묵, 새우	연중 (10~4)	50톤 내외	5~7	43mm	1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5. 근해선망(대형선망)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대형선망은 총 153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148척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과 경남이 2척, 전남이 1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24> 대형선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전북		전남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53	22,361	148	22,194	2	20	1	55	2	92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29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35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에 4건이 모자라는 것으로

과약되었음

<표 3-25> 대형선망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부산	경북	
29	25	24	1	-4

나. 조업현황

- 대형선망어업은 보통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서 3~4척 등 총 6~7척이 한선단(이하 한통이라고 함)을 이루어 조업을 하며 1통당 승선원수는 약 80명 전후임
- 대형선망어업은 대규모의 어군을 과학적으로 탐색하여야 하고, 잡어 후 대형 어망으로 신속하게 어획하여야 하며,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수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최신 어로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 대형선망어업의 조업방법은 본선이 어군탐지기, 수상등과 수중등을 이용하여 어군을 모으면 본선과 보조등선이 함께 신속히 그물을 투망하는 순수한 외두리 조업 방식이 아닌 다소 변형적 방법으로 행해지며, 어망에 포획된 어획물을 어항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피쉬펌프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어업은 긴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발줄 전체에 붙어 있는 조임줄을 조어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위 범위를 점차 좁혀 대상 생물을 어획하는 어업임
- 대형선망어업의 어구는 조업 방법 또는 대상 생물에 따라 그물의 모양이 약간 차이는 있으나 부분 날개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긴

네모꼴 형태이며 상부에는 뜬을, 하부에는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 되도록 하고, 발줄에 조임 고리와 조임 줄을 장치하여 어군을 포위한다음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어장은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일대 해역으로서 주조업 수심은 수심 200m이내이며, 주요 포획 어종은 고등어가 전체 어획량의 약 50 - 70%을 점유하고 있고, 그 외 삼치, 전갱이, 오징어 등이 어획되고 있음

<표 3-26> 대형선망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 망목	사용 수량
부산시	고등어, 전갱이, 삼치, 정어리, 오징어	연중 9~2	그물배 : 100~150 어탐선 : 35~60 운반선 : 150~250	25~30 (적당) 6~8 (적당) 8~10 (적당)	30mm	1통

6. 근해선망(소형선망)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소형선망은 총 77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42척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15척, 전북이 8척 등으로 파악되었음

<표 3-27> 소형선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강원		충남		전북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77	1,144	2	29	15	203	8	91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7	99	1	19	42	654	2	49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35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47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12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28> 소형선망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5	47	1	1	9	9	6	2	19	12

나. 조업현황

- 소형선망어업의 어선규모는 8톤(구톤수 10톤)이상 30톤(구톤수 40톤)미만의 동력선 1척과 1척이내의 등선 및 1척이내의 운반선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형선망어업은 긴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발줄 전체에 붙어 있는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위 범위를 좁혀 대상 생물을 어획하는 어업임
- 동 어업의 그물모양은 조업 방법 또는 대상 생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날개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긴 네모꼴이며 상부에는 뜰을, 하부에는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발줄

에 조임 고리와 조임 줄을 장치하여 어군을 포위한 다음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소형선망어업은 근해선망어업의 하나로서 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조업 구역은 대형선망어업과 동일하며, 8톤이상 30톤미만의 어선이 2척 또는 3척으로 선단을 이루어 연안에서 전어, 전갱이, 고등어, 멸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하고 있음
- 소형선망어업은 울산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따라 주조업구역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고 조업인원은 어선 1척당 5명 내외임
- 소형선망어업은 조업시 남해안에서는 기선권현망과 동해안에서는 동해구트롤어업과 동일어종어획 등으로 인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고, 주 조업대상 어종은 전어, 전갱이, 고등어 등임

<표 3-29> 소형선망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망목	사용수량
경상남도	전어, 청어	8~11(전어) 11~7(청어)	8톤내외	15~18	30mm 멸치 120경	1통
부산시	전어, 갈치, 고등어, 전갱이	7~3	8톤내외	5~8	30mm	1통
경상북도	청어, 전어, 멸치, 전갱이	8~11(전어) 2~9(청어)	20톤내외	20	30mm 멸치 : 세목망	1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7. 근해채낚기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근해채낚기어업은 총 476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경북이 186척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이 123척, 제주 40척 등으로 파악되었음

<표 3-30> 근해채낚기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476	17,650	39	1,469	3	46	21	872	123	5,610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6	181	1	19	9	195	186	7,056	48	1,324	40	878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618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699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81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31> 근해채낚기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건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18	699	61	17	34	2	150	22	10	34	231	70	68	81

나. 조업현황

- 채낚기어업이란 「낚시줄 1줄에 낚시를 1개 또는 여러개를 수직방향으로 달아 사람이 직접 손으로 고기를 낚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채낚기 어업의 어획대상 어종은 혼획하는 타 어업과는 달리 낚시어업의 특성상 단일어종의 어획이 가능해 주채포 어종에 따라 오징어채낚기, 갈치채낚기, 복어채낚기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낚기어업의 한 종류로는 걸이, 대낚시, 설낚시, 보채낚시 등을 옛날부터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연결식 낚시를 개량하여 로울러를 이용하여

낚시줄을 내리거나 올리는 로울러식 연결낚시나 이것을 동력화한 오징어 자동조획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임

- 채낚기어업은 주로 주광성 어종을 어획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고 낚시(모릿)줄 끝에 추를 달아 어구를 상승, 하강시키면서 대상 생물이 낚시에 걸리도록 하여 어획하고 있는 실정임
- 채낚기어업은 허가상 외줄낚시(一本組)와 채낚기 2종류로 허가가 부여되고 있으며 어선의 규모에 따라 톤급이 10톤(신통수)미만인 연안 채낚기어업과 8톤이상 90톤만의 근해채낚기어업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음
- 채낚기 어선에서는 어획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발전기와 집어등을 설치하며 선박이 해·조류를 따라 낚시와 함께 흘러가도록 물돛을 사용하고 있음
- 집어등은 낚시가 배의 그늘진 부분에 들어가도록 선박 중앙선 부분에 설치하며 대부분 갑판으로부터 약 2m 상부에 설치하고 있음
- 사용 집어등의 광력 기준은 어선 톤수에 따라 다르며 선박이 클수록 집어등 광력은 높으며, 채낚기 어선은 동해안 및 남해안에서 주로 오징어와 갈치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32> 근해채낚기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 어종	어기 (월)	어선 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낚시수	사용수량
전라남도	갈치	8~10	7~20	7~9	13~15개/줄	1~2줄/인
경상남도	갈치	5~11	10~70	7~10	15개/줄	1~2줄/인
부산시	오징어	연중 (8~12)	20~40	5~8	30개/줄	14대 (자동조상기)
울산시	오징어	7~2	10~30	5~13	35개/줄	20~36줄
강원도	오징어	연중	30톤 내외	5~6	30~40개/줄	12~14줄
경상북도	오징어	연중	20톤 내외	40	30~40개/줄	20~24줄

8. 기선권현망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기선권현망어업은 총 408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315척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이 81척, 울산 9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33> 기선권현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울산		충남		전남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408	16,709	2	31	9	328	1	20	81	4,026	315	12,304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68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77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9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34> 기선권현망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부산	울산	전남	경남	
68	77	1	1	16	59	9

나. 조업현황

-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의 톤수가 40톤(구톤수 50톤)미만의 동력선에 대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가공 및 운반겸용선과 어로보조선은 각각 2척 이내로 예인선의 기관은 회전수가 1,200미만은 200마력 이하, 1,200 이상은 350마력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기선권현망어업은 표·중층성 어종인 멸치를 주로 어획 대상으로 하여 조업하고 있음
- 동어업은 망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2척으로 구성되어 선단조업을 하며 자루그물 앞에 긴 날개그물이 달린 어구 1통을 망선 2척이 예망하여 어획하고 있음
- 그물은 크게 오비기, 수비, 자루그물로 되어있고, 이 중에서 날개그물인 오비기와 수비는 어군을 위협하여 어군을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며 그물코가 매우 큰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멸치는 육질이 약하여 빨리 상하므로 어획된 멸치는 가공선에서 자숙하여 운반, 건조하고 있음
-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방법은 투망을 2척의 그물배가 그물을 반씩 나누어 싣고 나란히 붙여서 항해하다가 어탐선이 어군을 발견하면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자루그물부터 투망하며, 투망이 완료되면 양 배는 각기 끌줄 1가닥씩을 선미측에 고정하고 양 배의 간격을 약 500~700m 정도 유지하면서 예망하기 시작하고 양 배가 간격을 좁혀 날개그물을 나란히하며 자루그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표 3-35> 기선권현망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 어종	어기 (월)	어선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 망목	사용 수량
전라남도	멸치	7~3	21~30	7~9	140경~3,600 mm	1통
경상남도	멸치	7~3	30	7~10	120~160경	1통
부산시	멸치	7~1 (8~11)	그물배 : 50~70 어탐선 : 15~25 가공선 : 60~100 운반선 : 30~50	척당 : 10~15 척당 : 2~3 척당 : 14~16 척당 : 3~4	140경	1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9. 근해자망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근해자망어업은 총 415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 보면, 전남이 117척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이 81척, 제주 56척으로 파악 되었음

<표 3-36> 근해자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인천		울산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415	11,123	11	262	81	2,224	23	405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	34	10	275	31	903	14	258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17	2,983	29	957	41	918	56	1,905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569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707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138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37> 근해자망 초과건수 현황

허가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건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69	707	30	62	36	3	72	44	12	146	151	64	87	138

나. 조업현황

- 근해자망어업의 어선규모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에 8톤(구톤수 10톤)이상 90톤(구톤수 130톤)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해자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전국근해로 하고 있으며 삼치의 어획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5호 별표5에 포획금지구역을 두어 조업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8에는 근해채낚기어업의 허가를 겸한 어선에 대한 별도의 조업구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해자망어업의 어선규모에 따른 사용어구 수량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서해안 지역의 주어획종은 꽃게, 조기, 갈치, 멸치 등이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어선들은 1척에서 2척의 부속선을 갖추어 닻자망이라 부르고 있는 고정자망으로 많은 조업을 하고 있고 남해안 지역은 유자망을 이용한 조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조기유자망에 의한 조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동 어업은 방추형의 어류를 주 대상으로 긴 띠 모양의 그물을 고기가 지나가는 곳에 부설하여, 대상 생물이 그물코에 꽂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임

- 근해자망어업의 어구는 다른 어구에 비해 그물감의 선택과 성형을 결정이 매우 중요한 어구이며, 그물감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대상 생물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야 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물코의 매듭이 밀리지 않아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가 일정하여야 하는 어구임

- 자망(결그물)은 긴 띠 모양의 사각형 어구로서 어군이 다니는 어도에 부설하여 대상물이 그물코에 꽂히도록 하여 어획하고 있음

- 그물감은 유연성이 좋고 망목크기가 균일하여야 하며 그물코의 매듭은 잘 밀리지 않는 막매듭을 사용하고 있음

- 어구의 재질은 나일론 그물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망목 크기는 대상 어종에 따라 각기 달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표 3-38> 근해자망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 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망목	사용수량
경기·인천	덕대, 젓새우, 농어 꽃게	5~7 3~12	13~37	4~7	8.7~151.5mm	10틀
충청남도	대구, 꽃게, 도다리 조피볼락	10~12	12~29	8~11	100~160mm 189.4mm	100~150폭
전라북도	대구, 가자미, 조피볼락	1~12	24	7~8	90~150mm	300폭
전라남도	삼치	6~11	38~56	10~13	100mm	200폭
	조기	8~4	38~56	10~13	50~58mm	500폭(25m/ 폭)
	젓새우	6~12	15~20	6~7	11.2mm	69폭
울산시	가자미, 대구, 꼼치	연중	12~30	4~5	12mm(가자 미)	150폭
	대게	11~3	12~30	4~5	240mm	100폭
강원도	꼼치	연중	10톤 내외	3~5	30mm	40~60폭
	대게, 붉은대게	12~5 4~9	10톤 내외	4~6	242mm	40~60폭
경상북도	꼼치	연중	10톤 30~50톤	3~5	28mm	60~80폭 100폭
	가자미 대구 대게	연중 11~5	10톤 내외	4~6	68~240mm 84~120mm 270mm	60폭 40~50폭 90~120폭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10. 근해안강망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근해안강망어업은 총 229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충남이 117척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이 71척, 전북 24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39> 근해안강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인천		경기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29	11,301	12	931	4	65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17	3,553	24	1,669	71	5,061	1	22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199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238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39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40> 근해안강망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199	238	20	1	5	119	25	68	39

나. 조업현황

- 근해안강망어업은 「긴자루형의 그물입구에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를 조류가 강한 해역에 닳으로 해저에 고정시켜놓고 조류에 의해 어군이 그물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어획하는 어업」으로 긴자루모양의 그물아궁이를 조류를 향하도록 벌려서 해저에 부설하고 조류의 힘에 의해 고기를 강제로 함정에 빠져 들어가도록 하여 어획하는 강제함정어법의 일종의 어업임
- 동 어업은 우리 조상 전래의 중선망 어구어법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안강망어업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동력선이 전래됨에 따라 이를 개량하여 보급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중선망어업이 현대식으로 개량되어 시험조업에 성공한 후 안강망어업은 서·남해에 급속히 전파되어 현재는 연근해 어구어법 중 가장 중요한

어법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는 서·남해가 안강망어업의 적정 해역일 뿐만 아니라, 안강망 어구어법 자체가 우리 고유어업인 중선망과 비슷하여 다루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안강망의 망구 전개장치로는 과거에는 나무나 철 파이프로 제작된 암해와 수해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어구의 입구 조우에 범포식 전개장치를 부착하여 망구를 전개시키고 있음
- 안강망어업은 어선규모에 따라 근해안강망어업과 연안안강망어업으로 나누어짐. 근해안강망어업은 어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농수부 장관의 허가어업임
- 어선톤수와 어선마력수는 그 동안의 어선대형화추세를 반증해 주듯이 동기간 중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1970년 동 어업의 총톤수가 26천톤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의 81천톤을 정점으로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장의 형성은 전통적으로 서해안에서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 동중국해 쪽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서해남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주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60년대 근해안강망어업의 주어획 대상은 참조기였으나 참조기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에는 갈치, 갑오징어, 강달이, 병어, 참조기, 꽃게 등 다양한 어종이 어획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 어종이 전체어획량의 70%를 점하고 있음
- 근해 안강망의 어선의 크기는 8톤이상 90톤 미만이며 주로 우리나라 남해서부 및 서해안 등에서 조업하고 있는 갈치, 조기, 꽃게, 멸치 등을 어획하고 있음
- 동 어업의 어기는 어장이 확장됨에 따라 연중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주 어기는 9월에서 익년 1월로서 이 기간 중 연간 어획량의

60-70%를 어획하고 있음

<표 3-41> 근해안강망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망목	사용수량
경기·인천	조기, 갈치, 아귀 강달이, 덕대, 꽃게, 멸치	4~6 7~12	60~90	3~6	35mm	5통
충청남도	멸치, 꽃게, 쭈꾸미, 젓새우, 까나라, 아귀 갑오징어	3~6 8~12	10~70	3~6	35mm	5통
전라북도	멸치, 꽃게, 오징어	3~5.15 1~6.16	69	9	5~303m m	5통
전라남도	갈치, 조기 병어	8~12	69~75	7~8	35mm	3통
부산시	멸치, 젓새우, 꽃게, 아귀	3~6 8~12	10~70	3~6	35mm	5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11. 잠수기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잠수기어업은 총 228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130척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이 54척, 충남 29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42> 잠수기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28	1,093	5	22	29	218	54	275	10	50	130	529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175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236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61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43> 잠수기 초과건수 현황

허가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건수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75	236	1	11	4	7	14	8	52	11	128	61

-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크게 동해권, 남해권, 서해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3구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에 93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 정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44> 잠수기어업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구분	허가정수	조업구역
잠수기어업	6건	강원도 연해
	9건	경상북도 연해
	93건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
	39건	전라남도 연해
	28건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

자료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나. 조업현황

- 잠수기어업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포1에 어선규모를 8톤(구톤수 10톤)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14조 별표8에 조업시 준수해야할 규칙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잠수기어업은 사람이 직접 물 속으로 들어가 대상 생물을 확인한 다음 칼, 갈고리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것으로, 각종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선박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조업하는 어업임
- 공기 공급방법은 이전에는 수동 펌프를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에어 컴프레서(air-compressor)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채취도구는 수역에 따라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사기 사용시에

는 어획 대상 패류의 종류(개조개, 키조개, 왕우럭, 코끼리조개, 바지락, 개불)와 분사기의 마력(8마력)을 제한하고 있음

- 잠수기어업은 사람이 직접 수중에서 어획을 하는 어업의 특성상 연안 해역을 주요어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근해어업과 달리 지역에 따라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허가를 하고 있으며 어획기실적이 어선이 나 기관 등 시설물의 규모 보다는 잠수부의 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잠수기어업 제1구를 살펴보면 강원도 연해에서 대부분 3~5톤급의 어선을 이용하여 선장, 잠수부, 선원 등 3명의 인원이 조업하고 있으며 주 어획종은 해삼, 멧게, 성게 등으로 포획한 어획물은 활어상태로 수협위판 또는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잠수기어업 제2구는 경상북도 연해에서 3~5톤급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있으나 신항만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조업어장이 감소하고 있고 조업환경의 악화로 조업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한편 여가활동으로 하는 스쿠버다이버들에 의한 불법적인 남획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 어획어종은 어패류 및 해삼, 멧게, 소라, 개조개 등으로 울릉지역에서는 수협위판을 통하여 주로 판매하나 기타지역에서는 사매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잠수기어업 제3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를 조업 구역으로 하며 주로 5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경상남도 연안에서 조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짐. 해삼, 멧게, 개불, 전복, 소라 등을 포획하여 대부분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잠수기어업 제4구는 전라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주로 4톤급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키조개, 개불, 개조개 등을

포획하여 수협위탁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 잠수기어업 제5구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어선의 규모가 큰 편이며, 주어획종은 키조개, 해삼, 전복, 개조개 등이며 특히 키조개의 경우 해당 지역내 구성되어 있는 어업인 단체에서 일일조업량을 정해 자원을 관리하며 어로행위를 하고 포획한 어획물은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를 하고 있음

<표 3-45> 잠수기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 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장비	잠수부 인원
경기·인 천	전복, 피빨고둥, 해삼, 성게	연중	6~8	2~3	마스크식, 갈구리, 망태	1~2명
충청남도	키조개, 개조개, 해삼	연중	4~8	3~4	잠수복, 갈구리, 망태	1~2명
전라북도	키조개, 해삼, 피빨고둥	연중	5~8	2~3	잠수복, 갈구리, 망태	1~2명
전라남도	개조개, 개불, 키조개, 왕우럭	연중	4~5	3	잠수복, 갈구리, 망태, 분사기	1명
경상남도	해삼, 전복, 우렁쉥이, 소라, 홍합, 문어, 성게	8~6	3~4	4	잠수복, 갈구리, 망태, 분사기	1명
부산시	키조개, 개조개	3~6 9~11	5~8	4~6	잠수복, 갈구리, 망태	1~2명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12. 근해통발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장어통발어업은 총 57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48척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이 5척, 충남 2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46> 장어통발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57	3,705	5	383	1	24	2	115	1	77	48	3,106

- 기타통발어업은 총 110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28척으로 가장 많으며, 경북이 21척, 충남 16척, 강원 11척 등으로 파악되었음

<표 3-47> 기타통발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인천		울산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10	5,768	6	372	10	170	5	131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	10	11	688	16	526	1	13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8	339	21	1,332	28	2,054	3	133

- 기타통발어업은 총 9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5척, 제주 5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48> 문어단지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전남		제주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9	105	4	46	5	60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장어통발의 경우 허가정수는 40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63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23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49> 장어통발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40	63	5	3	2	52	1	23

- 기타통발의 경우 허가정수는 159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214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55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50> 기타통발 초과건수 현황

허가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건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9	214	8	18	6	4	26	29	14	72	35	2	55

- 문어단지의 경우 허가정수는 40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33건으로, 정한수보다 7건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3-51> 문어단지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	33	3	1	1	2	11	2	1	12	-7

나. 조업현황

- 근해통발어업의 통발형태는 대상 수산동물에 따라 입구가 보통 한 개 내지 두개 혹은 세개가 있고, 외부 형태는 사각형 · 원추형 · 단지형 등이 있음
- 동 어업은 통발을 수십개 또는 수백개를 연결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릿줄과 아릿줄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 통발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표지기와 표지기줄, 미끼를 넣어 둘 수 있는 미끼 주머니, 통발을 모릿줄에 쉽게 붙이고 떼 수 있는 고리와 통발 고정용 닻이나 멍이 있음
- 통발어업의 어구는 철사, 철봉 등으로 제작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정 틀

에 그물감을 씌우고 상면 또는 측면에 1~4개의 입구를 설치한 어구임

- 근해통발어업의 주어기는 4~6월과 11~12월로서 연간 어획량의 50-60%를 어획하고 있음
- 통발어업은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주요 대상 어종은 동해안에서는 북쪽분홍새우, 문어, 물레고둥, 붉은대게 등이고, 서해안에서는 꽃게, 민꽃게, 조피불락, 쥐노래미, 피빨고둥 등이며, 남해안에서는 꽃게, 문어, 붕장어, 골뱅이 등이 있음
- 통발어업에서 통발의 크기와 형상은 대상 어종에 따라 다르며, 미끼는 주로 고등어, 정어리, 멸치 등을 사용하고 있음

<표 3-52> 근해통발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 어종	어기 (월)	업선 (톤)	선원수 (명)	어구규모	
					사용망목	사용수량
경기·인천	꽃게, 민꽃게 쥐노래미, 피빨고둥	3~6 8~12	8~70	3~7	65mm 35mm	1,500~2,500개
충청남도	꽃게, 민꽃게 고등류, 낙지 쥐노래미	연중	9~15	4~5	65mm 35~37mm	1,600~2,000개
전라남도	꽃게	9~1 1~8	60~70	11~12	65mm	5,000개 이하
	골뱅이	1~8	60~70	11~12	35mm	5,000개 이하
경상남도	꽃게	9~6	50'80	10~12	65mm	10조(500개/ 조)
	붕장어	연중	50'80	10~12	통수공Ø 7.45mm	7,000개
부산시	꽃게, 골뱅이 불락, 잡어	연중 (꽃게 9~12)	30'60	8~12	65mm	2조(2000개/ 조)
	붕장어	연중	60~70	7~10	통수공Ø 9~12mm	5,000개 이하
강원도	북쪽분홍새우 붉은대게 문어 고둥	연중	20톤 내외	3~5	북쪽분홍새우 : 35mm 붉은대게 : 125mm 문어 : 40mm 골뱅이 : 35mm	2,000~4,000개
경상북도	새우 문어 물레고둥 붉은대게	연중	20톤 내외	5~6	새우 : 35mm 문어 : 35mm 골뱅이 : 35mm 붉은대게 : 125mm	3,000~4,000개 2,100~3,000개 3,000개 1,500개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13. 근해형망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근해형망어업은 총 75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전북이 53척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11척, 경남이 6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53> 근해형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인천		경기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75	873	1	13	2	22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1	131	53	601	2	16	6	90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72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137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65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54> 근해형망 초과건수 현황

허가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건수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72	137	17	4	43	40	33	65

나. 조업현황

- 근해형망어업은 해저 부근의 모래나 펄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포획하는 어업임
- 어구는 일정한 크기의 틀에 자루그물을 붙이고 해저 밑바닥을 긁어서 조개를 어획하고 있으며 형망 틀은 대상 패류 또는 해역 따라 조금씩

다르나, 가로270~300cm, 세로(높이)30cm 내외의 크기로 제작하며, 망자는 주로 PE 57mm 망목의 그물감을 사용하고 있음

<표 3-55> 근해형망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규모 (톤)	선원수 (명)	어구규모	
					사용망목	사용수량
충청남도	새조개, 키조개, 파랏고등	8~5	9~10	3~4	57~60mm	2~4통
전라북도	키조개, 파랏고등, 골뱅이, 개우렁	8~5	8~5	3~4	57~101m m	1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14. 근해주낙(연승)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근해연승어업은 총 323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183척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53척, 전남 25척, 부산 19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56> 근해연승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부산		인천		울산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323	8,939	19	432	7	134	1	69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0	0	4	201	11	210	13	421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5	598	7	202	53	1,349	183	5,323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479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493건으로, 정한수 초과 건수는 14건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한수 조정이 필요한 업종임

<표 3-57> 근해연승 초과건수 현황

허가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건수
	계	부산	인천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79	493	31	24	10	43	23	51	33	78	200	14

나. 조업현황

- 주낙(연승)어업은 대상 생물을 일시에 여러 마리 잡기 위하여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가닥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마다 낚기 1개씩을 달아 수평으로 어구를 부설하여 대상 생물을 낚아 올리는 어업임
- 일반적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고정 주낙, 표·중층성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는 흘림 주낙을 사용하고 있음
- 근해주낙연승어업은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사용 미끼는 대상어종에 따라 다소 다르나, 오징어, 꽁치, 양미리, 정어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주낙은 고기를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기 위하여 모릿줄이라고 하는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아릿줄이라고 하는 여러가닥의 가짓줄을 달고, 아릿줄 마다 낚시 한 개씩을 미끼와 함께 달아 여러개의 낚시를 동시에 물 속에 드리웠다가 차례로 걷어 들여서 고기를 낚는 것이므로 주낙은 외줄낚시에 비해 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리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해역별·어종별 연승 어구어법을 살펴보면, 동해안의 경우는 명태 및 가자미연승이 있으며, 서해안은 농어 및 넙치연승, 남해안은 붕장어 및 옥돔연승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 연승어업은 어획대상 생물을 일시에 여러 마리를 잡기 위하여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마다 낚시 1개씩을 달아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물을 낚아 잡는 어업임

- 연승어업은 어선규모에 따라 근해연승어업과 연안연승어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근해연승어업은 어선 총톤수 8톤 이상에서 70톤미만의 동력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요 주낙 어업은 옥돔, 갈치, 가자미, 붕장어, 복어, 홍어 주낙 등이 있음

<표 3-58> 근해연승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 규모 (톤)	선원수 (명)	어규규모	
					사용낚시	사용수량
경기·인천	홍어	5~8, 11	8~20	3~4	450개/광주리	200광주리
전라남도	홍어	연중	10~30	4~5	300개/광주리	30~40광주리
경상남도	붕장어	연중	24~38	10~12	160개/광주리	150광주리
부산시	옥돔, 아귀, 가자미, 붕장어	연중	10~15	5~7	200개/광주리	70~80광주리
강원도	복어, 가자미	연중	10톤 내외	3	130개/광주리	40광주리
경상북도	복어, 가자미	10~3	10톤	2~4	128개/광주리	35광주리
		3~11	내외		100개/광주리	15~20광주리
제주도	갈치, 옥돔	9~2	21~30	8	110개/광주리	80~90광주리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15. 근해들망어업

가. 어업허가 현황

- 근해들망 어업의 허가정수는 6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제주에 5건으로, 정한수에 1건이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3-59> 근해들망 초과건수 현황

허가 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 건수
	계	제주	
6	5	5	-1

나. 조업현황

- 들망어업은 정착성 생물이나 환경에 따라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습성이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업임
- 어구는 물 속에 미리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설하여 두고 대상 생물이 그 위에 오면 신속히 들어 올려 어획하고 있음
- 근해 들망의 대표적인 어구 형태로는 화살꼴뚜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들망과 쫑치를 대상으로 하는 원양 봉수망이 있음
- 채들망 어구의 형태는 까래그물, 날개그물, 고기받이로 되어 있으며 전체모양은 한면이 트인 상자형임

<표 3-60> 근해들망어업 현황

지역	주요대상어종	어기 (월)	어선규모 (톤)	선원수 (명)	어구규모	
					사용망목	사용수량
경상북도	화살꼴뚜기	2~4	20톤내외	7~9	37.9mm	1통

※ 어기 : 어종별 해역별 금어기에는 휴어

16. 근해봉수망

가. 어업허가 현황

- 근해봉수망어업은 총 3척으로 이 중에서 지역별 척수 및 톤수를 살펴보면, 전북 2척, 전남 1척으로 파악되었음

<표 3-61> 근해 봉수망 지역별 척수 및 톤수

총계		전북		전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3	35	2	26	1	10

- 다음으로 허가정수 대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허가정수는 55건이나 허가처분건수가 40건으로, 정한수보다 15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2> 근해 봉수망 초과건수 현황

허가정수	허가처분 건수 (2010년말 기준)										초과건수
	계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5	40	1	2	3	1	2	5	13	5	8	-15

나. 조업현황

- 봉수망어업은 8톤(구톤수 10톤)이상 90톤(구톤수 130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4각형 보자기 모양의 그물감 상부에 뜬대를 하부에 발돌과 돋움줄을 양 옆에 조임고리와 조임줄을 부착하여 투망시에는 그물이 뜬대에 의해 좌우로 전개됨과 동시에 뜬대의 부력과 발돌의 침력에 의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어구를 불빛으로 그물위로 유도하거나 소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고기 스스로가 그물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어획하는 어업임
- 봉수망어업의 조업은 낮에 해황을 조사하거나 육안으로 어군을 탐색하는 등 어장을 선정하였다가 해가 진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색등과 스캐닝소나로 어군을 탐색하여 어군이 발견되면 집어등을 켜고 배를 미속으로 전진시키면서 어군을 집어하기 시작하여 어군이 충분히 집어되면 배를 정선하여 집어시킨 반대현에 그물을 투망 방식임
- 근해봉수망어업은 전국적으로 2010년 12월말 현재 61건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업실태조사를 위해 각 지역 업무담당자의 협조와 현지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재 봉수망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자를 수소문하였으나 다른 어업허가를 복수로 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제 봉수망어업만을 하는 어업자는 극히 드물었음.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봉수망으로 조업을 하는 어업자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

도 복수로 어업허가를 취득하여 특정시기에만 조업하고 있으므로 주어업이라기보다 부어업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음

- 근해붕수망어업은 붕수망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들이 겸업으로 하고 있는 다른 허가업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업실태분석 결과를 기초로 어업경영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음

제4장 조사대상 근해어업 어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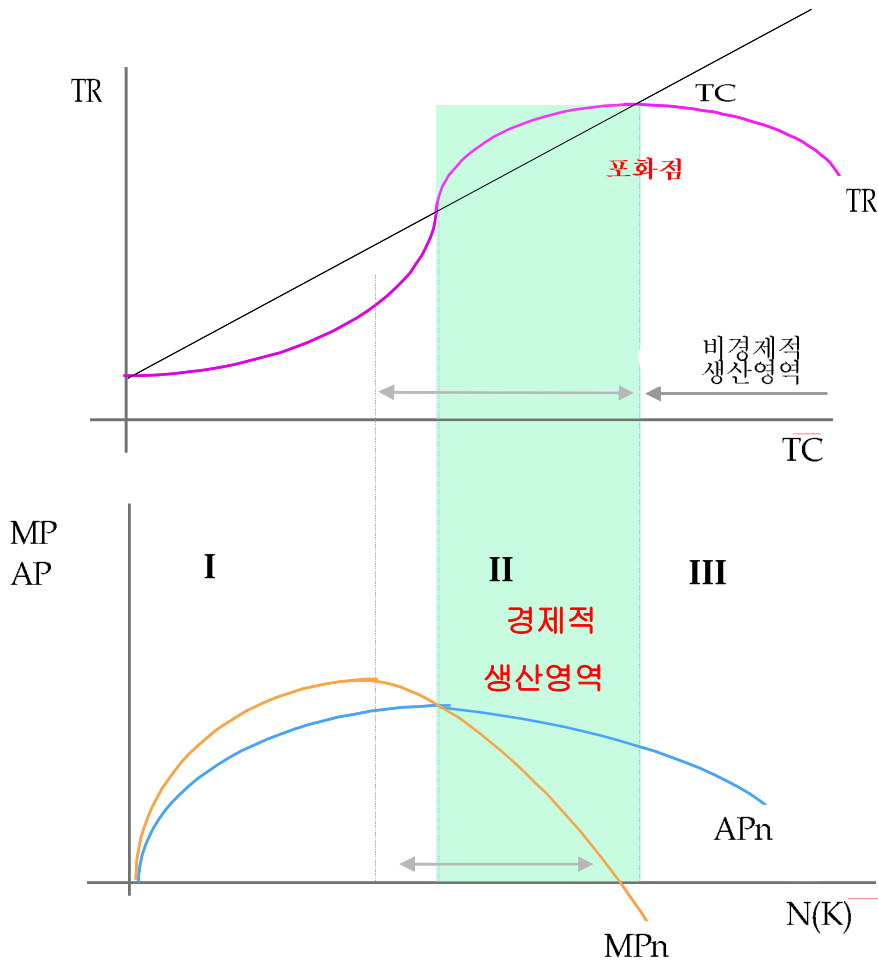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근해어업 21개 업종이며, 이에 대하여 어업경영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장에서는 근해어선 감척단가 추정의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관련제도 및 추정방법과 결과를 도출함. 또한 업종별 톤급별 세부적인 감척단가 추정에 대한 방법과 세부적인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음
-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인 근해어선 감척기준에 대해 톤급별로 2011년 동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제1절 근해어선 감척단가 추정 기초분석

1. 이론적 검토

- 일반적으로 어업의 경우 어획노력량(비용)과 어업생산량(금액)과의 관계에서는 한계생산체감이 발생함. 여기에서 어획노력량의 증가는 결국 비용의 증가를 발생하므로 비례관계가 성립되며, 어업생산량은 생산금액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비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됨
- 어획노력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업비용을 상승시키게 될 경우 어업생산금액은 증가를 하게 되나 이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게 되며, 어업비용이 증가 할수록 그 한계생산량은 체감하게 됨
- 한계생산성과 평균생산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동투입량(투입비용)이 증가할 때는 평균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한계생산량의 증가폭보다 낮으며, 평균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한계생산량 보다 낮음.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평균생산량 증가 → $MP_n > AP_n$
 - 평균생산량 감소 → $MP_n < AP_n$
- 그러므로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II 영역의 경우 투입되는 비용 이상으로 수입을 얻는 영역으로 근해어업에서 조업활동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즉, 이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조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게 됨
- 그러나, III 영역의 경우는 생산성이 음이어서 투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영역이며, 투입노력(비용)의 희소성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임. 이 영역의 경제활동은 경제이론에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따른 기준단가산정이므로 최소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제 II 영역이 되어야만 분석이 가능함



<그림 4-1> 근해어선 감척 기준단가 산정 이론적 범위

2. 관련제도 및 추정방법

가.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

-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수산업법 제81조와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별표4의 내용을 바탕으로 3년평균 수익액에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동안 소급하여 기산한 경비를 차감하여 평년수익액을 도출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함
- 평년수익액 산정 방법
 -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함

○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

-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소급하여 기산한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경비항목 및 산출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표 4-1> 평년어업 경비 항목

구분	경비항목
1. 생산관리비	① 어미고기 및 종묘구입비 ② 미끼구입비 ③ 사료비 ④ 유지보수비 ⑤ 연료 및 유류비 ⑥ 전기료 ⑦ 약품비 ⑧ 소모품비 ⑨ 어장관리비[어장 청소,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驅除) 및 표지시설 설치 등] ⑩ 자원조성비 ⑪ 용선료(傭船料)
2. 인건비	①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② 본인 외의 사람에게 대한 인건비
3. 감가상각비	① 시설물 ② 어선 또는 관리선[선체, 기관 및 의장품(艙裝品) 등 포함] ③ 어구 ④ 그 밖의 장비 및 도구
4. 판매관리비	① 가공비 ② 보관비 ③ 용기대 ④ 판매수수료 ⑤ 판매잡비(운반·포장 등)
5. 그 밖의 잡비	① 각종 세금과 공과금 ② 어장행사료 ③ 주식·부식비 ④ 복리후생비 ⑤ 보험료 및 공제료 ⑥ 그 밖의 경비

○ 2011년도 근해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산정방법

- 3년평균수익액(A) : 2008~2010년 (3년) 의 평균 수익액
- 연간평균비용(B) : 2010년(당해년도) 어업비용
- 폐업지원금 : A-B

○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해어업의 연간 순수익을 산정하는 식은 관련규정에 따라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순수익은 3년 평균 어업수입과 비용의 차이로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FP = TR_x - TC_x$$

$$TR_x = \frac{TR_t + TR_{t-1} + TR_{t-2}}{3}$$

- 어업비용은 크게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됨

$$TC_x = TC_t = (PC_t + LC_t + DC_t + SC_t + OE_t)$$

PC = production management cost(생산관리비)

LC = labor costs(인건비)

DC = depreciation cost(감가상각비)

SC = sales management cost(판매관리비)

OC = other expenses(기타비용)

- 여기에서 생산관리비는 미끼구입비, 유지보수비, 유류비, 소모품비를 포함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PC_t = (BC_t + MC_t + FC_t + SE_t)$$

BC = 미끼구입비

MC = 유지보수비

DC = 유류비

SE = 소모품비

-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선체, 기관, 어구, 기타시설에서 발생함

$$DC_t = (BS_t + EN_t + FG_t + OT_t)$$

BS = 선체

EN = 기관

FG = 어구

OT = 기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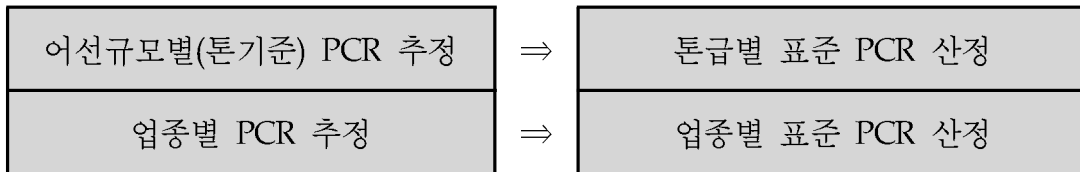
- 그러므로 어선규모별 비용구조를 추정하여 톤급별 표준 비용비율 산정 하였으며, 또한, 업종별로도 각각의 표준 비용비율을 산정하였음. 추정을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PCR = \frac{PC_t}{TC_t}, LCR = \frac{LC_t}{TC_t} \dots \dots, OCR = \frac{OC_t}{TC_t}$$

PCR = 생산관리비 비율

LCR = 인건비 비율

OCR = 기타비용 비율



나. 추정 방법

1) 자료 수집 및 활용

- 업종별·톤급별 표준 구성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익과 비용의 기초자료는 첫째, 기존의 어업손실보상에서 산정한 어업비용구조 자료 (감정평가법인 내부자료), 둘째, 자율관리어업 소득추정 자료, 셋째, 2010년 어업총조사(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넷째, 연구팀 자체 실태조사 자료 등이 사용되었고, 각 항목별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4-2> 항목별 추정 방법

구분		추정방법
3년 평균 수익(A)		- 조사대상 어선의 최근 3년 연간평균수익액 - 2008~2010 3개년 평균수익액 - 개별 어선에 대하여 어업경영실태조사 및 기존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추정 ※ 조사대상어선의 최근 생산액 실적이 중요
총 비용(B)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 일반적으로 통발이나 채낚기 등에서 미끼를 사용하는 어업에서만 해당 - 평균연간생산액과 연동되는것이 일반적임
	유지보수비	- 선체, 기관, 어구 등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여 일정한 유지보수비를 비용으로 계산
	유류비	- 어업생산금액과 일반적으로 연동하여 산정
	소모품비	- 어업생산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인건비		- 일반적으로 생산량과 톤수에 비례함
감가상각비	선체	- 업종별 선체, 기관, 어구 등에 대한 정율법을 이용한 표준 비용 산정
	기관	
	어구	
	기타시설	
판매관리비		-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일정비율 반영
기타잡비		

2) 표본집단 조사결과

- 근해어업 2010년 12월 현재 기준, 조사대상 모집단의 허가건수는 3,276건, 어선척수는 2,943건이며, 이에 대해 연구팀 자체 현장실태조사, 수협중앙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표본집단의 어선척수는 317척이고, 이는 전체 모집단 비율 11.13%에 해당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남구기저(쌍) 어선척수 15척에서 자료확보 표본 어선척수가 12척으로 8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형선망이 39.2%, 대기저(쌍)이 36.8% 등임

- 여기에서 복합어업의 모집단 대비 표본집단이 0.99%로 나타나 수치상으로는 가장 적게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조사척수는 249척으로 가장 많이 조사함. 이는 근해복합어업의 경우 동, 서, 남해, 제주 등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 척수도 가장 많아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또한, 자망의 경우도 복합어업과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수가 매우 많고,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사대상 척수는 209척으로 매우 많은 유효표본집단을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표 4-3> 근해어선 조사대상 모집단과 표본집단 현황(1)

업종		허가 건수	어선 척수(A)	정한수	표본 수	표본 합계(B)	(B)/(A)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	구분 없음	47	44	34	7	7	15.9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100톤 미만	34	76	38	8	28	36.8
	100톤~130톤 미만				12		
	130톤 이상				8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39	43	20	4	4	9.3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42	42	29	4	4	9.5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9	15	7	6	12	80.0
	50톤 이상				6		
근해트롤 (대형트롤)	구분 없음	52	53	37	6	6	11.3
근해트롤 (동해구트롤)	40톤 미만	39	39	23	3	6	15.4
	40톤 이상				3		
근해선망 (대형선망)	100톤 미만	25	153	29	12	60	39.2
	100톤~120톤 미만				-		
	120톤 이상				48		
근해선망 (소형선망)	구분 없음	47	77	35	24	24	31.2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699	476	618	8	25	5.3
	35톤~65톤 미만				8		
	65톤 이상				9		

<표 4-4> 근해어선 조사대상 모집단과 표본집단 현황(2)

업종	허가 건수	어선 척수(A)	정한수	표본 수	표본 합계(B)	(B)/(A)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외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77	408	68	4	28	6.9
	200톤 이상(선단기준)				24		
근해자망	35톤 미만	707	415	569	7	21	5.1
	35톤~65톤 미만				7		
	65톤 이상				7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238	229	199	7	19	8.3
	35톤~65톤 미만				6		
	65톤 이상				6		
잠수기	1,2구	18	18	15	2	2	11.1
	3,4구	181	181	132	4	4	2.2
	5구	37	37	28	4	4	10.8
근해통발 (장어통발)	35톤 미만	63	62	40	2	7	11.3
	35톤~65톤 미만				2		
	65톤 이상				3		
근해통발 (기타통발)	35톤 미만	214	142	159	5	15	10.6
	35톤~65톤 미만				4		
	65톤 이상				6		
근해통발 (문어단지)	구분 없음	33	22	40	2	2	9.1
근해형망 (패류형망)	구분 없음	94	75	72	8	8	10.7
근해연승	20톤 미만	536	323	479	9	31	9.6
	20톤~35톤 미만				12		
	35톤 이상				10		
자리돔들망	구분 없음	5	10	55	0	-	0.0
붕수망	구분 없음	40	3	6	0	-	0.0
합계		3,276	2,943	2,732	317		

조사대상 표본 집단 평균 비율 : 11.13%

3. 추정결과

가. 업종별 수익액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해어업에 대해 분석이 가능한 (어선규모별 3개이상의 구분) 어업종류에 연간수익액을 추정하였으며, 여기에서 평균수익액은 2008년~2010년(3년간) 이며, 근해어업의 개별·규모별 평균수익액의 변화에 따른 추정식은 아래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예를들면 근해채낚기의 경우 회귀분석결과 3년간 평균수익액은 기본수익액이 26,013천원이며, 어선의 규모가 1단위(35톤 미만, 35톤~65톤, 65톤 이상)이 증가할 때 마다 86,04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분석의 설명력은 약 77%로 나타났음.

$$Y = 86,046\ln(x) + 26,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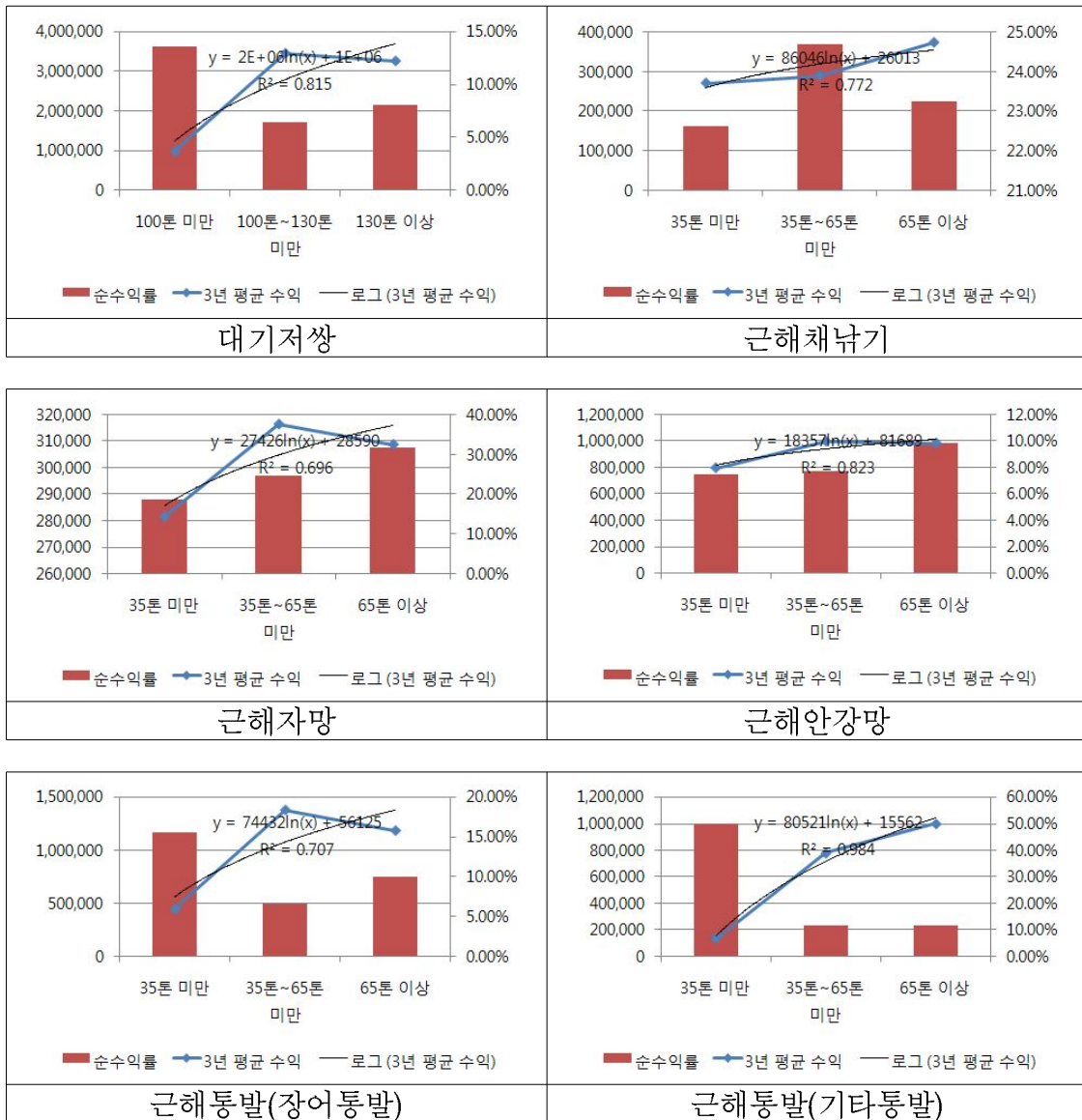
Y : 3년평균수익액

X : 어선규모(톤)

<표 4-5> 업종별 수익액 추정

어업종류	추정식	R2
대기저(쌍)	$y = 2E+06\ln(x) + 1E+06$	0.815
근해채낚기	$y = 86,046\ln(x) + 26,013$	0.772
근해자망	$y = 27,426\ln(x) + 28,590$	0.696
근해안강망	$y = 18,357\ln(x) + 81,689$	0.823
근해통발(장어통발)	$y = 74,432\ln(x) + 56,125$	0.707
근해통발(기타통발)	$y = 80,521\ln(x) + 15,562$	0.984
근해연승	$y = -2E+0\ln(x) + 59,294$	0.392

- 추정된 모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균수익액은 어선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투입되는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금액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세미로그함수 (semi-log function) 형태임을 고려할 때 한계생산체감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2> 어선규모별 평균수익액 변화

- 그러나, 평균수익률을 살펴보면, 근해어업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어선의 규모가 클수록 투입되는 비용의 규모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근해어업 업종별 톤급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미 언급한 회귀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톤수가 증가할수록 3년평균 수익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6> 근해어업 3년평균 수익액 추정 결과

업종		표본 수	최고	최저	평균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7	1,310,125	621,235	921,580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8	1,301,457	789,870	997,132
	100톤~130톤 미만	12	4,321,548	2,487,980	3,462,557
	130톤 이상	8	4,351,530	2,654,880	3,270,470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4	1,062,420	590,789	854,745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4	1,140,420	541,580	861,943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6	1,234,000	848,680	1,008,517
	50톤 이상	6	1,324,578	898,480	1,037,074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6	1,684,570	1,020,130	1,318,722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3	948,000	657,400	817,400
	40톤 이상	3	1,035,180	846,870	956,619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12	9,597,000	7,898,750	8,962,953
	100톤~120톤 미만	-	-	-	-
	120톤 이상	46	18,501,500	7,987,898	10,785,353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24	1,562,350	815,857	1,178,930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8	424,859	124,857	271,064
	35톤~65톤 미만	8	340,130	235,420	290,164
	65톤 이상	9	564,850	205,050	373,350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축)	4	2,159,540	1,964,540	2,030,830
	200톤 이상(선단기축)	24	2,523,510	1,684,870	2,014,866
근해자망	35톤 미만	7	496,487	159,848	281,660
	35톤~65톤 미만	7	421,954	226,482	316,412
	65톤 이상	7	485,245	198,487	308,780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7	984,890	675,216	797,016
	35톤~65톤 미만	6	1,468,904	516,940	998,009
	65톤 이상	6	1,345,156	614,140	1,000,788
잠수기	1구	5	389,848	215,321	313,596
	2구	4	357,667	212,351	289,582
	3구	10	723,215	223,978	481,510
	4구	4	805,960	210,700	436,579
	5구	4	539,152	211,072	376,550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2	491,356	406,931	449,144
	35톤~65톤 미만	2	1,561,237	1,200,650	1,380,944
	65톤 이상	3	1,434,595	927,023	1,187,323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5	202,311	90,648	132,179
	35톤~65톤 미만	4	1,003,212	567,944	777,284
	65톤 이상	6	1,216,975	794,263	1,000,164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2	131,819	78,072	98,263
근해형망(패류형망)	구분 없음	8	245,931	108,988	172,515
근해연승	20톤 미만	9	953,179	403,174	650,360
	20톤~35톤 미만	12	412,360	145,031	300,743
	35톤 이상	10	806,478	284,127	474,558
자리돔들망	구분 없음	0	-	-	*
봉수망	구분 없음	0	-	-	-

나. 어업경비

1) 근해 업종별 비용 비율

- 조사대상 근해어업 중 추정식의 설명력이 높은 업종에 대한 평균비용의 어선규모별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추정식을 통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어선규모가 커질수록 비용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예를들어 근해채낚기의 경우 기본적인 어업비용은 20,021천원이며, 어선의 규모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63,70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분석의 설명력은 약 70.9%로 나타남.

$$Y = 63702\log X + 20021 (R^2 = 0.709)$$

Y : 평균비용

X : 어선규모(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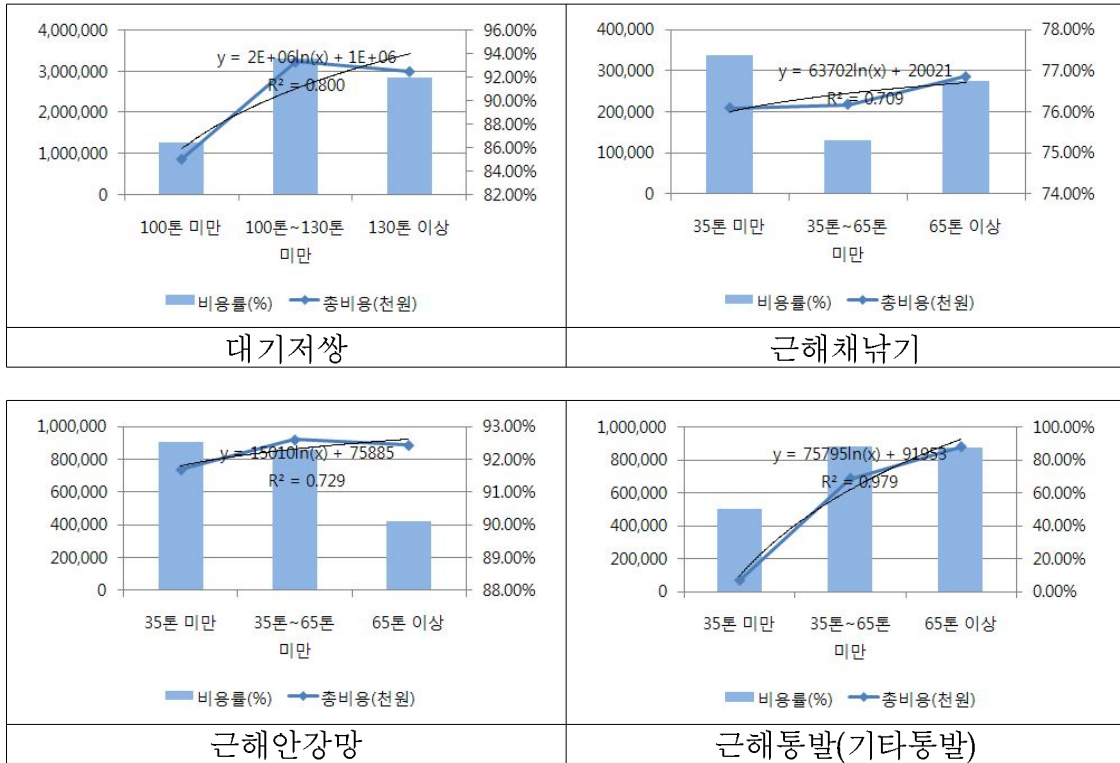
- 이는 어선의 규모가 증가할 수록 생산관리비, 인건비 등 각 비용항목이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됨

<표 4-7> 업종별 비율 추정

어업종류	추정식	R2
대기저(쌍)	$y = 2E+06\ln(x) + 1E+06$	0.800
근해채낚기	$y = 63702\ln(x) + 20021$	0.709
근해안강망	$y = 15010\ln(x) + 75885$	0.729
근해통발(기타통발)	$y = 75795\ln(x) + 91953$	0.979

- 추정된 모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본어업비용은 어선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해어업 업종별 규모별 비용구조를 파악하는데 매

우 도움이 되었으며, 동 자료는 근해어업 일부의 어업비용에 관한 회귀분석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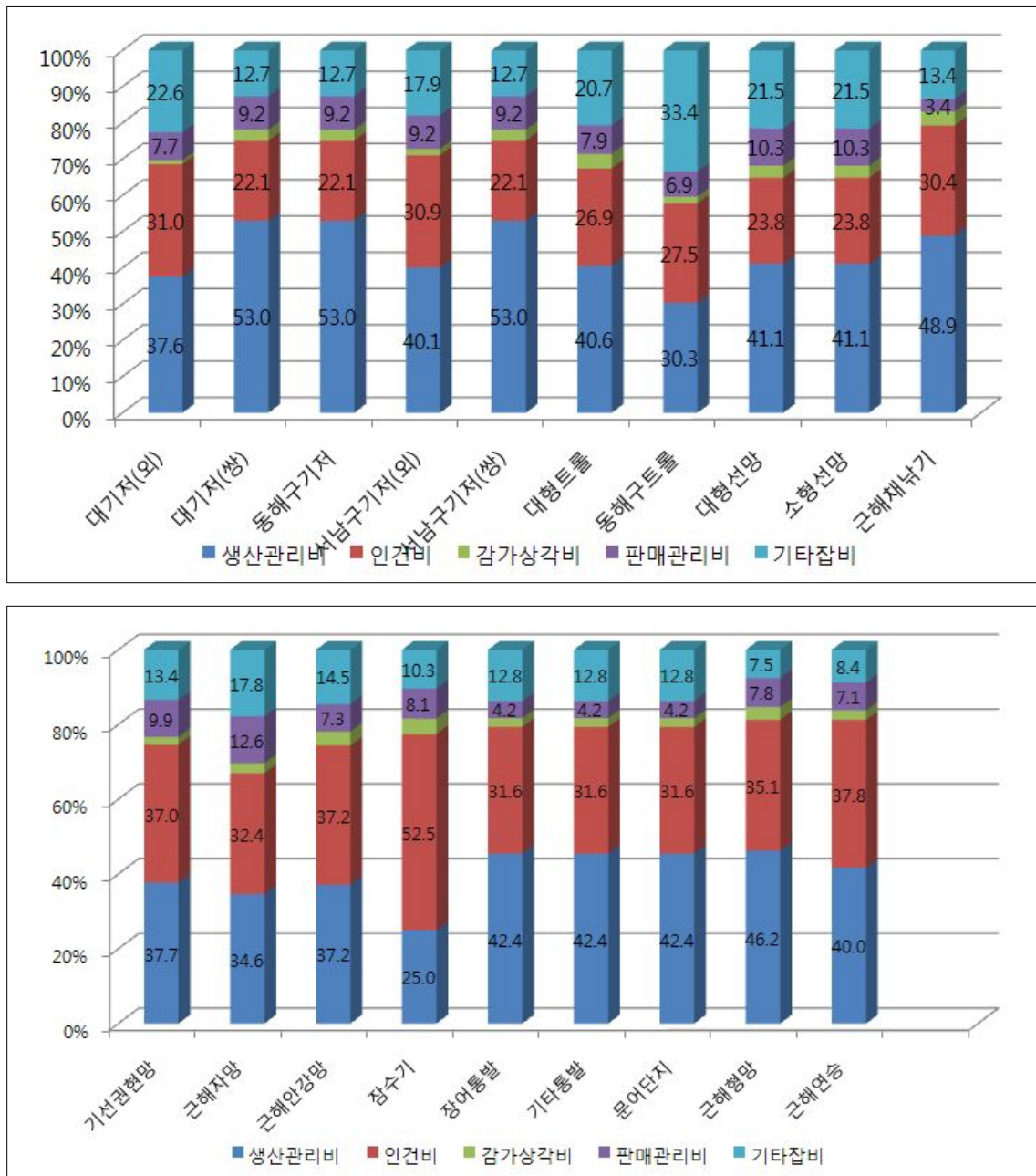


<그림 4-3> 어선규모별 평균비용 변화

<표 4-8> 근해어업 업종별 비용 비율 구조 종합

구분	생산관리비(A)					인건비(B)	감가상각비(C)					판매관리비(D)	기타잡비(E)
	(a)	(b)	(c)	(d)	계		(e)	(f)	(g)	(h)	계		
대기저(외)		15.24	16.98	5.39	37.61	30.97	0.57	0.34	0.23	0.00	1.14	7.70	22.60
대기저(쌍)		8.37	38.62	5.97	52.96	22.14	1.50	0.90	0.60	0.00	3	9.22	12.68
동해구기저		8.37	38.62	5.97	52.96	22.14	1.50	0.90	0.60	0.00	3	9.22	12.68
서남구기저(외)		11.87	23.32	4.92	40.11	30.94	0.90	0.54	0.36	0.00	1.8	9.21	17.94
서남구기저(쌍)		8.37	38.62	5.97	52.96	22.14	1.50	0.90	0.60	0.00	3	9.22	12.68
대형트롤		10.77	22.75	7.06	40.58	26.85	2.03	1.22	0.81	0.00	4.06	7.87	20.65
동해구트롤		6.66	19.87	3.80	30.33	27.50	0.93	0.56	0.37	0.00	1.86	6.91	33.40
대형선망		10.60	26.18	4.29	41.07	23.79	1.65	0.99	0.66	0.00	3.3	10.29	21.54
소형선망		10.60	26.18	4.29	41.07	23.79	1.65	0.99	0.66	0.00	3.3	10.29	21.54
근해채낚기		9.00	36.92	2.96	48.88	30.43	1.92	1.15	0.77	0.00	3.84	3.44	13.40
기선권현망		8.55	26.41	2.73	37.69	36.96	1.03	0.62	0.41	0.00	2.06	9.91	13.39
근해자망		15.59	14.04	4.97	34.6	32.41	1.33	0.80	0.53	0.00	2.66	12.58	17.75
근해안강망		9.44	24.98	2.73	37.15	37.23	1.88	1.13	0.75	0.00	3.76	7.33	14.52
잡수기		6.17	15.55	3.29	25.01	52.46	2.06	1.24	0.82	0.00	4.12	8.07	10.34
장어통발	6.79	9.86	22.05	10.47	42.38	31.57	1.11	0.67	0.44	0.00	2.22	4.23	12.81
기타통발	6.79	9.86	22.05	10.47	42.38	31.57	1.11	0.67	0.44	0.00	2.22	4.23	12.81
문어단지	6.79	9.86	22.05	10.47	42.38	31.57	1.11	0.67	0.44	0.00	2.22	4.23	12.81
근해형망		13.35	27.31	5.55	46.21	35.06	1.71	1.03	0.69	0.00	3.43	7.78	7.52
근해연승	4.25	12.69	19.23	8.03	39.95	37.82	1.23	0.74	0.49	0.00	2.46	7.13	8.38
자리돔들망													
붕수망													

① 미끼구입비 / ② 유지보수비 / ③ 유류비 / ④ 소모품비 / ⑤ 선체 / ⑥ 기관 / ⑦ 어구 / ⑧ 기타시설



<그림 4-4> 근해어업 업종별 비용 비율 구조 종합

제2절 업종별 규모별 감척단가 추정 결과

1. 대기저(외)

- 어선척수 44척에 대한 표본수는 7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5.9%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921,58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805,918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7.45%로 분석되었음

<표 4-9> 대형기선저인망(외)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921,580	
총 비용(B)		805,918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22,792	15.24
	유류비	136,825	16.98
	소모품비	43,411	5.39
	합계	303,028	
인건비		249,555	30.97
감가상각비	선체	4,558	0.57
	기관	2,735	0.34
	어구	1,823	0.23
	기타시설	0	0.00
	합계	9,116	
판매관리비	합계	62,091	7.70
기타잡비	합계	182,128	22.60
경비율(A/B)		87.45%	

2. 대기저(쌍)

가. 100톤 미만

- 어선척수 76척에 대한 표본수는 8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28.9%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997,132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861,478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6.40%로 분석되었음

<표 4-10> 대형기선저인망(쌍)의 100톤 미만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997,132	
총 비용(B)		861,478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72,123	8.37
	유류비	332,726	38.62
	소모품비	51,402	5.97
	합계	456,251	
인건비		190,694	22.14
감가상각비	선체	12,892	1.50
	기관	7,735	0.90
	어구	5,157	0.60
	기타시설	0	0.00
	합계	25,784	
판매관리비	합계	79,470	9.22
기타잡비	합계	109,278	12.68
경비율(A/B)		86.40%	

나. 100~130톤 미만

- 어선척수 76척에 대한 표본수는 12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28.9%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3,462,557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3,240,076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3.57%로 분석되었음

<표 4-11> 대형기선저인망(쌍)의 100~130톤 미만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3,462,557	
총 비용(B)		3,240,076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271,261	8.37
	유류비	1,251,406	38.62
	소모품비	193,325	5.97
	합계	1,715,993	
인건비		717,214	22.14
감가상각비	선체	48,488	1.50
	기관	29,093	0.90
	어구	19,395	0.60
	기타시설	0	0.00
	합계	96,975	
판매관리비	합계	298,892	9.22
기타잡비	합계	411,003	12.68
경비율(A/B)		93.57%	

다. 130톤 이상

- 어선척수 76척에 대한 표본수는 8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28.9%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3,270,47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3,006,887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1.94%로 분석되었음

<표 4-12> 대형기선저인망(쌍)의 130톤 이상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3,270,470	
총 비용(B)		3,006,887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251,738	8.37
	유류비	1,161,342	38.62
	소모품비	179,412	5.97
	합계	1,592,492	
인건비		665,596	22.14
감가상각비	선체	44,998	1.50
	기관	26,999	0.90
	어구	17,999	0.60
	기타시설	0	0.00
	합계	89,996	
판매관리비	합계	277,380	9.22
기타잡비	합계	381,423	12.68
경비율(A/B)		91.94%	

3. 동해구기저

- 어선척수 43척에 대한 표본수는 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9.3%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854,745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727,866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5.16%로 분석되었음

<표 4-13>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저)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854,745	
총 비용(B)		727,866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59,492	8.17
	유류비	136,258	18.72
	소모품비	18,100	2.49
	합계	213,850	
인건비		245,816	33.77
감가상각비	선체	6,801	0.93
	기관	4,080	0.56
	어구	2,720	0.37
	기타시설	0	0.00
	합계	13,601	
판매관리비	합계	42,991	5.91
기타잡비	합계	211,606	29.07
경비율(A/B)		85.16%	

4. 서남구기저(외)

- 어선척수 42척에 대한 표본수는 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9.5%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861,943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682,563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9.19%로 분석되었음

<표 4-14>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외)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861,943	
총 비용(B)		682,563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81,032	11.87
	유류비	159,186	23.32
	소모품비	33,552	4.92
	합계	273,770	
인건비		211,164	30.94
감가상각비	선체	6,158	0.90
	기관	3,695	0.54
	어구	2,463	0.36
	기타시설	0	0.00
	합계	12,316	
판매관리비	합계	62,842	9.21
기타잡비	합계	122,471	17.94
경비율(A/B)		79.19%	

5. 서남구기저(쌍)

가. 50톤 미만

- 어선척수 15척에 대한 표본수는 6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80%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008,517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832,630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2.56%로 분석되었음

<표 4-15>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쌍) 5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008,517	
총 비용(B)		832,630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69,708	8.37
	유류비	321,585	38.62
	소모품비	49,680	5.97
	합계	440,973	
인건비		184,308	22.14
감가상각비	선체	12,460	1.50
	기관	7,476	0.90
	어구	4,984	0.60
	기타시설	0	0.00
	합계	24,921	
판매관리비	합계	76,809	9.22
기타잡비	합계	105,619	12.68
경비율(A/B)		82.56%	

나. 50톤 이상

- 어선척수 15척에 대한 표본수는 6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80%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037,07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764,564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3.72%로 분석되었음

<표 4-16>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쌍) 50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037,074	
총 비용(B)		764,564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64,010	8.37
	유류비	295,296	38.62
	소모품비	45,619	5.97
	합계	404,925	
인건비		169,242	22.14
감가상각비	선체	11,442	1.50
	기관	6,865	0.90
	어구	4,577	0.60
	기타시설	0	0.00
	합계	22,883	
판매관리비	합계	70,530	9.22
기타잡비	합계	96,985	12.68
경비율(A/B)		73.72%	

6. 대형트롤

- 어선척수 53척에 대한 표본수는 6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1.3%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318,722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1,091,021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2.73%로 분석되었음

<표 4-17> 대형트롤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318,722	
총 비용(B)		1,091,021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17,452	10.77
	유류비	248,230	22.75
	소모품비	77,068	7.06
	합계	442,751	
인건비		292,885	26.85
감가상각비	선체	22,156	2.03
	기관	13,294	1.22
	어구	8,862	0.81
	기타시설	0	0.00
	합계	44,312	
판매관리비	합계	85,824	7.87
기타잡비	합계	225,249	20.65
경비율(A/B)		82.73%	

7. 동해구트롤

가. 40톤 미만

- 어선척수 39척에 대한 표본수는 3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5.4%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817,40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709,593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6.81%로 분석되었음

<표 4-18> 근해트롤(동해구) 4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817,400	
총 비용(B)		709,593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47,226	6.66
	유류비	140,972	19.87
	소모품비	26,980	3.80
	합계	215,178	
인건비		195,111	27.50
감가상각비	선체	6,625	0.93
	기관	3,975	0.56
	어구	2,650	0.37
	기타시설	0	0.00
	합계	13,250	
판매관리비	합계	49,065	6.91
기타잡비	합계	236,989	33.40
경비율(A/B)		86.81%	

나. 40톤 이상

- 어선척수 39척에 대한 표본수는 3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5.4%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956,619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721,453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5.42%로 분석되었음

<표 4-19> 근해트롤(동해구) 40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956,619	
총 비용(B)		721,453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48,015	6.66
	유류비	143,329	19.87
	소모품비	27,431	3.80
	합계	218,775	
인건비		198,372	27.50
감가상각비	선체	6,736	0.93
	기관	4,041	0.56
	어구	2,694	0.37
	기타시설	0	0.00
	합계	13,471	
판매관리비	합계	49,885	6.91
기타잡비	합계	240,950	33.40
경비율(A/B)		75.42%	

8. 대형선망

가. 100톤 미만

- 어선척수 153척에 대한 표본수는 12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37.9%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8,962,953천 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8,529,154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5.16%로 분석되었음

<표 4-20> 근해선망(대형) 10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8,962,953	
총 비용(B)		8,529,154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904,351	10.60
	유류비	2,232,823	26.18
	소모품비	366,012	4.29
	합계	3,503,186	
인건비		2,029,501	23.79
감가상각비	선체	141,083	1.65
	기관	84,650	0.99
	어구	56,433	0.66
	기타시설	0	0.00
	합계	282,167	
판매관리비	합계	877,245	10.29
기타잡비	합계	1,837,054	12.23
경비율(A/B)		95.16%	

나. 120톤 이상

- 어선척수 153척에 대한 표본수는 48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37.9%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0,785,353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9,978,409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는 92.52%로 분석되었음

<표 4-21> 근해선망(대형) 120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0,785,353		
총 비용(B)	9,978,409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058,017	10.60
	유류비	2,612,220	26.18
	소모품비	428,204	4.29
	합계	4,098,440	
인건비	2,374,349	23.79	
감가상각비	선체	165,056	1.65
	기관	99,034	0.99
	어구	66,022	0.66
	기타시설	0	0.00
	합계	330,112	
판매관리비	합계	1,026,305	10.29
기타잡비	합계	2,149,203	21.54
경비율(A/B)	92.52%		

9. 소형선망

- 어선척수 77척에 대한 표본수는 2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31.2%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178,93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1,110,680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4.21%로 분석되었음

<표 4-22> 근해선망(소형)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178,930	
총 비용(B)		1,110,680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17,766	10.60
	유류비	290,762	26.18
	소모품비	47,663	4.29
	합계	456,191	
인건비		264,285	23.79
감가상각비	선체	18,372	1.65
	기관	11,023	0.99
	어구	7,349	0.66
	기타시설	0	0.00
	합계	36,744	
판매관리비	합계	114,236	10.29
기타잡비	합계	239,224	21.54
경비율(A/B)		94.21%	

10. 근해채낚기

가. 35톤 미만

- 어선척수 476척에 대한 표본수는 8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5.3%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271,06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09,757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7.38%로 분석되었음

<표 4-23> 근해채낚기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271,064	
총 비용(B)		209,757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8,886	9.00
	유류비	77,434	36.92
	소모품비	6,216	2.96
	합계	102,535	
인건비		63,821	30.43
감가상각비	선체	4,034	1.92
	기관	2,421	1.15
	어구	1,614	0.77
	기타시설	0	0.00
	합계	8,068	
판매관리비	합계	7,222	3.44
기타잡비	합계	28,109	13.40
경비율(A/B)		77.38%	

나. 35톤~65톤 미만

- 어선척수 476척에 대한 표본수는 8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5.3%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290,16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18,531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5.31%로 분석되었음

<표 4-24> 근해채낚기 35~65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290,164	
총 비용(B)		218,531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9,676	9.00
	유류비	80,673	36.92
	소모품비	6,475	2.96
	합계	106,824	
인건비		66,491	30.43
감가상각비	선체	4,203	1.92
	기관	2,522	1.15
	어구	1,681	0.77
	기타시설	0	0.00
	합계	8,406	
판매관리비	합계	7,524	3.44
기타잡비	합계	29,285	13.40
경비율(A/B)		75.31%	

다. 65톤 이상

- 어선척수 476척에 대한 표본수는 9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5.3%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373,35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86,508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6.74%로 분석되었음

<표 4-25> 근해채낚기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373,350		
총 비용(B)	286,508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25,796	9.00
	유류비	105,767	36.92
	소모품비	8,490	2.96
	합계	140,054	
인건비	87,174	30.43	
감가상각비	선체	5,510	1.92
	기관	3,306	1.15
	어구	2,204	0.77
	기타시설	0	0.00
	합계	11,021	
판매관리비	합계	9,865	3.44
기타잡비	합계	38,395	13.40
경비율(A/B)	76.74%		

11. 기선권현망

가. 200톤 미만

- 어선척수 408척에 대한 표본수는 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6.9%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2,030,83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1,874,343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2.29%로 분석되었음

<표 4-26> 기선권현망 20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2,030,830	
총 비용(B)		1,874,343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60,335	8.55
	유류비	495,014	26.41
	소모품비	51,141	2.73
	합계	706,490	
인건비		692,669	36.96
감가상각비	선체	19,246	1.03
	기관	11,548	0.62
	어구	7,699	0.41
	기타시설	0	0.00
	합계	38,493	
판매관리비	합계	185,744	9.91
기타잡비	합계	250,947	13.39
경비율(A/B)		92.29%	

나. 200톤 이상

- 어선척수 408척에 대한 표본수는 2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6.9%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2,014,866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1,810,765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9.87%로 분석되었음

<표 4-27> 기선권현망 200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2,014,866	
총 비용(B)		1,810,765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54,897	8.55
	유류비	478,223	26.41
	소모품비	49,406	2.73
	합계	682,526	
인건비		669,173	36.96
감가상각비	선체	18,594	1.03
	기관	11,156	0.62
	어구	7,437	0.41
	기타시설	0	0.00
	합계	37,187	
판매관리비	합계	179,444	9.91
기타잡비	합계	242,435	13.39
경비율(A/B)		89.87%	

12. 근해자망

가. 35톤 미만

- 어선척수 415척에 대한 표본수는 7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7.5%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281,66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29,014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1.31%로 분석되었음

<표 4-28> 근해자망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281,660	
총 비용(B)		229,014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35,705	15.59
	유류비	32,150	14.04
	소모품비	11,380	4.97
	합계	79,235	
인건비		74,219	32.41
감가상각비	선체	3,053	1.33
	기관	1,832	0.80
	어구	1,221	0.53
	기타시설	0	0.00
	합계	6,107	
판매관리비	합계	28,803	12.58
기타잡비	합계	40,650	17.75
경비율(A/B)		81.31%	

나. 35톤~65톤 미만

- 어선척수 415척에 대한 표본수는 7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7.5%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316,412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38,387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5.34%로 분석되었음

<표 4-29> 근해자망 35~6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316,412	
총 비용(B)	238,387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유지보수비	37,166
	유류비	33,466
	소모품비	11,846
	합계	82,478
인건비	77,257	32.41
감가상각비	선체	3,178
	기관	1,907
	어구	1,271
	기타시설	0
	합계	6,357
판매관리비	합계	29,982
기타잡비	합계	42,314
경비율(A/B)	75.34%	

다. 65톤 이상

- 어선척수 415척에 대한 표본수는 7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7.5%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308,78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11,057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68.35%로 분석되었음

<표 4-30> 근해자망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308,780	
총 비용(B)		211,057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32,905	15.59
	유류비	29,629	14.04
	소모품비	10,488	4.97
	합계	73,022	
인건비		68,400	32.41
감가상각비	선체	2,814	1.33
	기관	1,688	0.80
	어구	1,126	0.53
	기타시설	0	0.00
	합계	5,628	
판매관리비	합계	26,544	12.58
기타잡비	합계	37,463	17.75
경비율(A/B)		68.35%	

13. 근해안강망

가. 35톤 미만

- 어선척수 229척에 대한 표본수는 7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8.7%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797,016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737,453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2.53%로 분석되었음

<표 4-31> 근해안강망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797,016	
총 비용(B)		737,453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69,650	9.44
	유류비	184,197	24.98
	소모품비	20,102	2.73
	합계	273,949	
인건비		274,586	37.23
감가상각비	선체	13,889	1.88
	기관	8,333	1.13
	어구	5,556	0.75
	기타시설	0	0.00
	합계	27,778	
판매관리비	합계	54,045	7.33
기타잡비	합계	107,096	14.52
경비율(A/B)		92.53%	

나. 35톤~65톤 미만

- 어선척수 229척에 대한 표본수는 6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8.7%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998,009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920,876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2.27%로 분석되었음

<표 4-32> 근해안강망 35~6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998,009	
총 비용(B)		920,876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86,974	9.44
	유류비	230,011	24.98
	소모품비	25,102	2.73
	합계	342,086	
인건비		342,882	37.23
감가상각비	선체	17,343	1.88
	기관	10,406	1.13
	어구	6,937	0.75
	기타시설	0	0.00
	합계	34,687	
판매관리비	합계	67,487	7.33
기타잡비	합계	133,734	14.52
경비율(A/B)		92.27%	

다. 65톤 이상

- 어선척수 229척에 대한 표본수는 6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8.7%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984,588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887,183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0.11%로 분석되었음

<표 4-33> 근해안강망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984,588	
총 비용(B)		887,183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0	9.44
	유류비	0	24.98
	소모품비	0	2.73
	합계	329,570	
인건비		330,337	37.23
감가상각비	선체	0	1.88
	기관	0	1.13
	어구	0	0.75
	기타시설	0	0.00
	합계	33,417	
판매관리비	합계	65,018	7.33
기타잡비	합계	128,841	14.52
경비율(A/B)		90.11%	

14. 잠수기

가. 1구

- 어선척수 18척에 대한 표본수는 2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1.1%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313,596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31,890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3.95%로 분석되었음

<표 4-34> 잠수기(1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313,596	
총 비용(B)		231,890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4,305	6.17
	유류비	36,058	15.55
	소모품비	7,618	3.29
	합계	57,982	
인건비		121,647	52.46
감가상각비	선체	4,777	2.06
	기관	2,866	1.24
	어구	1,911	0.82
	기타시설	0	0.00
	합계	9,553	
판매관리비	합계	18,721	8.07
기타잡비	합계	23,988	10.34
경비율(A/B)		73.95%	

나. 2구

- 어선척수 18척에 대한 표본수는 2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1.1%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289,582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40,039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2.89%로 분석되었음

<표 4-35> 잠수기(2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289,582	
총 비용(B)		240,039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4,808	6.17
	유류비	37,325	15.55
	소모품비	7,886	3.29
	합계	60,019	
인건비		125,921	52.46
감가상각비	선체	4,944	2.06
	기관	2,967	1.24
	어구	1,978	0.82
	기타시설	0	0.00
	합계	9,889	
판매관리비	합계	19,379	8.07
기타잡비	합계	24,831	10.34
경비율(A/B)		82.89%	

다. 3구

- 어선척수 181척에 대한 표본수는 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2.2%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481,51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416,655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6.53%로 분석되었음

<표 4-36> 잠수기(3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481,510	
총 비용(B)	416,655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유지보수비	25,703
	유류비	64,788
	소모품비	13,689
	합계	104,180
인건비	218,572	52.46
감가상각비	선체	8,582
	기관	5,149
	어구	3,433
	기타시설	0
	합계	17,165
판매관리비	합계	33,638
기타잡비	합계	43,101
경비율(A/B)	86.53%	

라. 4구

- 어선척수 181척에 대한 표본수는 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2.2%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436,579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387,528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8.76%로 분석되었음

<표 4-37> 잠수기(4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436,579	
총 비용(B)		387,528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23,906	6.17
	유류비	60,259	15.55
	소모품비	12,732	3.29
	합계	96,897	
인건비		203,292	52.46
감가상각비	선체	7,982	2.06
	기관	4,789	1.24
	어구	3,193	0.82
	기타시설	0	0.00
	합계	15,965	
판매관리비	합계	31,286	8.07
기타잡비	합계	40,088	10.34
경비율(A/B)		88.76%	

마. 5구

- 어선척수 37척에 대한 표본수는 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0.8%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376,55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300,913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9.91%로 분석되었음

<표 4-38> 잠수기(5구)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376,550	
총 비용(B)		300,913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8,563	6.17
	유류비	46,791	15.55
	소모품비	9,886	3.29
	합계	75,240	
인건비		157,855	52.46
감가상각비	선체	6,198	2.06
	기관	3,719	1.24
	어구	2,479	0.82
	기타시설	0	0.00
	합계	12,397	
판매관리비	합계	24,293	8.07
기타잡비	합계	31,128	10.34
경비율(A/B)		79.91%	

15. 근해장어통발

가. 35톤 미만

- 어선척수 62척에 대한 표본수는 2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1.3%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449,14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379,170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4.42%로 분석되었음

<표 4-39> 근해통발(장어)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449,144	
총 비용(B)		379,170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25,748	6.79
	유지보수비	37,391	9.86
	유류비	83,614	22.05
	소모품비	39,693	10.47
	합계	186,446	
인건비		119,704	31.57
감가상각비	선체	4,215	1.11
	기관	2,529	0.67
	어구	1,686	0.44
	기타시설	0	0.00
	합계	8,429	
판매관리비	합계	16,033	4.23
기타잡비	합계	48,557	12.81
경비율(A/B)		84.42%	

15. 근해장어통발

나. 35톤~65톤 미만

- 어선척수 62척에 대한 표본수는 2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1.3%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380,94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1,289,998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3.41%로 분석되었음

<표 4-40> 근해통발(장어) 35~6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380,944	
총 비용(B)		1,289,998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87,599	6.79
	유지보수비	127,212	9.86
	유류비	284,468	22.05
	소모품비	135,041	10.47
	합계	634,319	
인건비		407,253	31.57
감가상각비	선체	14,339	1.11
	기관	8,603	0.67
	어구	5,736	0.44
	기타시설	0	0.00
	합계	28,678	
판매관리비	합계	54,548	4.23
기타잡비	합계	165,199	12.81
경비율(A/B)		93.41%	

15. 근해장어통발

다. 65톤 이상

- 어선척수 62척에 대한 표본수는 3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1.3%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187,323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1,068,878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0.02%로 분석되었음

<표 4-41> 근해통발(장어)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187,323	
총 비용(B)		1,068,878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72,584	6.79
	유지보수비	105,406	9.86
	유류비	235,707	22.05
	소모품비	111,893	10.47
	합계	525,590	
인건비		337,446	31.57
감가상각비	선체	11,881	1.11
	기관	7,129	0.67
	어구	4,752	0.44
	기타시설	0	0.00
	합계	23,762	
판매관리비	합계	45,198	4.23
기타잡비	합계	136,882	12.81
경비율(A/B)		90.02%	

16. 근해 기타통발

가. 35톤 미만

- 어선척수 142척에 대한 표본수는 5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0.6%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32,179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66,240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50.11%로 분석되었음

<표 4-42> 근해통발(기타) 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32,179	
총 비용(B)		66,240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4,498	6.79
	유지보수비	6,532	9.86
	유류비	14,607	22.05
	소모품비	6,934	10.47
	합계	32,572	
인건비		20,912	31.57
감가상각비	선체	736	1.11
	기관	442	0.67
	어구	295	0.44
	기타시설	0	0.00
	합계	1,473	
판매관리비	합계	2,801	4.23
기타잡비	합계	8,483	12.81
경비율(A/B)		50.11%	

나. 35톤~65톤 미만

- 어선척수 142척에 대한 표본수는 4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0.6%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777,28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686,994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8.38%로 분석되었음

<표 4-43> 근해통발(기타) 35~6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777,284		
총 비용(B)	686,994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46,651	6.79
	유지보수비	67,747	9.86
	유류비	151,494	22.05
	소모품비	71,916	10.47
	합계	337,809	
인건비	216,884	31.57	
감가상각비	선체	7,636	1.11
	기관	4,582	0.67
	어구	3,054	0.44
	기타시설	0	0.00
	합계	15,272	
판매관리비	합계	29,050	4.23
기타잡비	합계	87,978	12.81
경비율(A/B)	88.38%		

다. 65톤 이상

- 어선척수 142척에 대한 표본수는 6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0.6%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000,16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880,691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8.05%로 분석되었음

<표 4-44> 근해통발(기타) 6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000,164	
총 비용(B)		880,691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59,805	6.79
	유지보수비	86,848	9.86
	유류비	194,208	22.05
	소모품비	92,193	10.47
	합계	433,054	
인건비		278,035	31.57
감가상각비	선체	9,789	1.11
	기관	5,874	0.67
	어구	3,916	0.44
	기타시설	0	0.00
	합계	19,578	
판매관리비	합계	37,240	4.23
기타잡비	합계	112,783	12.81
경비율(A/B)		88.05%	

17. 근해통발 - 문어단지

- 어선척수 22척에 대한 표본수는 2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9.1%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98,263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37,895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38.56%로 분석되었음

<표 4-45> 근해통발(문어단지)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98,263	
총 비용(B)		37,895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2,573	6.79
	유지보수비	3,737	9.86
	유류비	8,357	22.05
	소모품비	3,967	10.47
	합계	18,634	
인건비		11,963	31.57
감가상각비	선체	421	1.11
	기관	253	0.67
	어구	168	0.44
	기타시설	0	0.00
	합계	842	
판매관리비	합계	1,602	4.23
기타잡비	합계	4,853	12.81
경비율(A/B)		38.56%	

18. 근해형망

- 어선척수 75척에 대한 표본수는 8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10.7%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172,515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111,358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64.55%로 분석되었음

<표 4-46> 근해형망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172,515		
총 비용(B)	111,358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14,866	13.35
	유류비	30,412	27.31
	소모품비	6,180	5.55
	합계	51,459	
인건비	39,042	35.06	
감가상각비	선체	1,908	1.71
	기관	1,145	1.03
	어구	763	0.69
	기타시설	0	0.00
	합계	3,816	
판매관리비	합계	8,667	7.78
기타잡비	합계	8,373	7.52
경비율(A/B)	64.55%		

19. 근해연승

가. 20톤 미만

- 어선척수 323척에 대한 표본수는 9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9.6%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650,36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590,404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90.78%로 분석되었음

<표 4-47> 근해연승 20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650,360	
총 비용(B)		590,404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25,114	4.25
	유지보수비	74,931	12.69
	유류비	113,545	19.23
	소모품비	47,407	8.03
	합계	260,997	
인건비		223,293	37.82
감가상각비	선체	7,265	1.23
	기관	4,359	0.74
	어구	2,906	0.49
	기타시설	0	0.00
	합계	14,529	
판매관리비	합계	42,082	7.13
기타잡비	합계	49,504	8.38
경비율(A/B)		90.78%	

나. 20톤~35톤 미만

- 어선척수 323척에 대한 표본수는 12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9.6%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300,743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232,005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77.14%로 분석되었음

<표 4-48> 근해연승 20~35톤 미만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300,743	
총 비용(B)		232,005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9,869	4.25
	유지보수비	29,445	12.69
	유류비	44,618	19.23
	소모품비	18,629	8.03
	합계	102,561	
인건비		87,745	37.82
감가상각비	선체	2,855	1.23
	기관	1,713	0.74
	어구	1,142	0.49
	기타시설	0	0.00
	합계	5,709	
판매관리비	합계	16,536	7.13
기타잡비	합계	19,453	8.38
경비율(A/B)		77.14%	

다. 35톤 이상

- 어선척수 323척에 대한 표본수는 10개로 조사대상 표본의 비율은 9.6% 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평균 수익액이 474,558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어업총비용은 393,456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비율은 82.91%로 분석되었음

<표 4-49> 근해연승 35톤 이상의 수익·비용 추정결과

구분	분석 결과	비율(%)	
3년 평균 수익(A)	474,558		
총 비용(B)	393,456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16,736	4.25
	유지보수비	49,935	12.69
	유류비	75,668	19.23
	소모품비	31,593	8.03
	합계	173,933	
인건비	148,807	37.82	
감가상각비	선체	4,841	1.23
	기관	2,905	0.74
	어구	1,936	0.49
	기타시설	0	0.00
	합계	9,682	
판매관리비	합계	28,044	7.13
기타잡비	합계	32,990	8.38
경비율(A/B)	82.91%		

제3절 소결

1. 수익 및 비용과 경비율 종합

- 조사방법은 연근해어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도, 시·군·구, 수협(업종별, 지구별) 및 한국수산회가 참여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에 따라 전체 어획고를 산출한 후 업종별 톤급구간별로 통계 처리하여 폐업지원금 기준단가 산정을 위한 평년수익액을 산출하였음
- 근해어업의 업종별 수익, 비용, 경비율의 종합은 아래와 같음. 업종별 수익이 높은 업종은 대형기저, 대형트롤, 근해선망, 기선선인망 등이며, 낮은 업종은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형망 등으로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업종별 경비율을 살펴보면, 대형기저, 근해선망, 근해안강망 등의 경비율이 높으며,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형망 등의 업종 경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50> 근해어업 수익, 비용, 경비율 종합(1)

업종	구분	톤급단위 (본선기준)	3년평균수익	총비용 경비율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921,580	805,918	87.45%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997,132	861,478	86.40%
	100톤~130톤 미만	3,462,557	3,240,076	93.57%
	130톤 이상	3,270,470	3,006,887	91.94%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854,745	727,866	85.16%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861,943	682,563	79.19%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1,008,517	832,630	82.56%
	50톤 이상	1,037,074	764,564	73.72%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1,318,722	1,091,021	82.73%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817,400	709,593	86.81%
	40톤 이상	956,619	721,453	75.42%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8,962,953	8,529,154	95.16%
	100톤~120톤 미만	-	-	-
	120톤 이상	10,785,353	9,978,409	92.52%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1,178,930	1,110,680	94.21%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271,064	209,757	77.38%
	35톤~65톤 미만	290,164	218,531	75.31%
	65톤 이상	373,350	286,508	76.74%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 준)	2,030,830	1,874,343	92.29%
	200톤 이상(선단기 준)	2,014,866	1,810,765	89.87%
근해자망	35톤 미만	281,660	229,014	81.31%
	35톤~65톤 미만	316,412	238,387	75.34%
	65톤 이상	308,780	211,057	68.35%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797,016	737,453	92.53%
	35톤~65톤 미만	998,009	920,876	92.27%
	65톤 이상	984,588	887,183	90.11%
잠수기	1구	313,596	231,890	73.95%
	2구	289,582	240,039	82.89%
	3구	481,510	416,655	86.53%
	4구	436,579	387,528	88.76%
	5구	376,550	300,913	79.91%

<표 4-51> 근해어업 수익, 비용, 경비율 종합(2)

업종	톤급단위 (본선기준)	3년평균수익	총비용 경비율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449,144	379,170	84.42%
	35톤~65톤 미만	1,380,944	1,289,998	93.41%
	65톤 이상	1,187,323	1,068,878	90.02%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32,179	66,240	50.11%
	35톤~65톤 미만	777,284	686,994	88.38%
	65톤 이상	1,000,164	880,691	88.05%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98,263	37,895	38.56%
근해형망(패류형망)	구분 없음	172,515	111,358	64.55%
근해연승	20톤 미만	650,360	590,404	90.78%
	20톤~35톤 미만	300,743	232,005	77.14%
	35톤 이상	474,558	393,456	82.91%
자리돔들망	구분 없음			
붕수망	구분 없음			

2. 2010년 기준단가와의 비교

- 업종별 어선척수 및 표본수(회수율)는 총 2,875척 중 320척을 표본으로 분석하였으며, 표본 비율은 11.13%임. 분석 결과 업종별 폐업지원금 산정 결과 근해어선은 대부분 1~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형선망(100톤 미만) 161.4%, 잠수기(3구) 32.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근해자망(35톤 미만), 근해안강망(35톤~65톤 미만) 및 근해형망어업은 -3.5, -1.3, -4.0%로 각각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표 4-52> 근해어업 기준단가 산정 결과(2)

(단위 : 천원)

어업	톤급단위 (본선기준)	종전 기준단가		연구용역 결과		증감율 (B/A)	사유
		기초금액 (100%)	기준단가 (A) (80%)	기초금액 (100%)	기준단가 (B) (80%)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	구분 없음	328,923	263,138	346,986	277,589	5.5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100톤 미만	384,646	307,717	406,964	325,571	5.8	
	100톤~130톤 미만	632,050	505,640	676,027	540,822	7.0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저)	130톤 이상	747,023	597,618	790,748	632,598	5.9	
	구분 없음	358,263	286,610	380,639	304,511	6.2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511,334	409,067	538,139	430,511	5.2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488,385	390,708	527,660	422,128	8.0	
	50톤 이상	769,369	615,495	817,528	654,022	6.3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646,949	517,559	683,104	546,483	5.6	
근해트롤 (동해구트롤)	40톤 미만	304,173	243,338	323,420	258,736	6.3	
	40톤 이상	663,176	530,541	705,497	564,398	6.4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497,765	398,212	1,301,397	1,041,118	161.4	<원인분석1>
	100톤~120톤 미만	1,886,970	1,509,576	1,886,976	1,509,576	0.0	해당 어선이 없어 2010년도 기준금액 준용
	120톤 이상	2,286,554	1,829,243	2,420,834	1,936,667	5.9	

<표 4-53> 근해어업 기준단가 산정 결과(2)

(단위 : 천원)

어업	톤급단위 (본선기준)	종전 기준단가		연구용역 결과		증감율 (B/A)	사유	
		기초금액 (100%)	기준단가 (A) (80%)	기초금액 (100%)	기준단가 (B) (80%)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204,719	163,775	204,749	163,799	0.0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173,933	139,146	183,921	147,137	5.7		
	35톤~65톤 미만	200,983	160,786	214,900	171,920	6.9		
	65톤 이상	244,253	195,402	260,526	208,421	6.7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 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435,393	348,314	469,459	375,567	7.8		
	200톤 이상(선단기준)	607,486	485,989	612,303	489,842	0.8		
잠수기	1구	구분 없음	242,565	194,052	245,148	196,118	1.1	
	2구	구분 없음	147,063	117,650	148,629	118,903	1.1	
	3구	구분 없음	147,063	117,650	194,564	155,651	32.3	<원인분석2>
	4구	구분 없음	142,475	113,980	147,153	117,722	3.3	
	5구	구분 없음	221,371	177,097	226,913	181,530	2.5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198,815	159,052	209,921	167,937	5.6		
	35톤~65톤 미만	258,390	206,712	272,838	218,270	5.6		
	65톤 이상	336,489	269,191	355,335	284,268	5.6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87,301	149,841	197,818	158,254	5.6		
	35톤~65톤 미만	256,499	205,199	270,872	216,698	5.6		
	65톤 이상	339,406	271,525	358,418	286,734	5.6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181,103	144,882	181,104	144,883	0.0		
근해형망(패류형망)	구분 없음	191,149	152,919	183,470	146,776	-4.0		
근해연승	20톤 미만	178,368	142,694	179,867	143,894	0.8		
	20톤~35톤 미만	204,531	163,625	206,213	164,970	0.8		
	35톤 이상	241,488	193,190	243,304	194,643	0.8		
자리돔들망	35톤 미만	86,965	69,572	86,965	69,572	0.0		
	35톤~65톤 미만	100,491	80,393	100,491	80,393	0.0		
	65톤 이상	122,125	97,700	122,125	97,700	0.0		
붕수망	35톤 미만	86,965	69,572	86,965	69,572	0.0		
	35톤~65톤 미만	100,491	80,393	100,491	80,393	0.0		
	65톤 이상	122,125	97,700	122,125	97,700	0.0		

* 종전의 기준단가는 2008년도 분석된 기초자료에서 연도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임

3. 특이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가. 근해선망(100톤 미만) 기준단가 증가 사유

- '08년 연구에서 대형선망의 경우 톤급별 구분 없이 전체 표본(50톤~130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100톤 미만에 대한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어업실태 분석은 곤란함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연간어획금액에서 평균어업경비를 제외한 어업순수익에서 3년을 곱하여 산출(1,934백만원)하고, 100톤 미만 어선에서 대하여 어선규모간의 상관관계 및 평년수익액 추정 모형(선형회귀모형)¹⁾을 통한 평년수익(474,064천원)을 예측한 것으로 추정됨

<표 4-54> 근해선망(100톤 미만) 2008년도 분석 결과와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추정) (50~130톤)	본 연구(2011)	
			100톤 미만	120톤 이상
평균연간 어획금액	최저금액	673,132	9,485,480	9,215,487
	최고금액	9,722,766	9,597,000	18,501,500
	평균금액	7,728,569	9,541,240	12,270,914
평년수익액	최저금액	56,140	378,780	267,905
	최고금액	810,879	488,818	1,200,258
	평균금액	644,563	433,799	806,945
평균어업경비율		91.66%	95.45%	93.42%
3년 어업 순수익		1,933,689	1,301,397	2,420,834

- 본 연구에서는 실제 100톤 미만 어선이 2통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실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임
- 실제어선은 성산수산(81톤), 진명수산(56톤)에 대해 직접 방문 및 어업경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방법은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였고(9,597,000천원, 9,485,480천원), 동 평균매출액(9,541,240천원)은 2010년도 연근해총조사보

1) 선형회귀모형이란 독립변수(예 : 어선톤수, 매출액, 어업경비 등)와 종속변수(예 : 어업종류별 톤급)간의 관계 분석

고서에서도 대형선망(소규모)이 약 9,600,000천원으로 분석²⁾되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어업경비는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경비 등 5개의 어업경비에 대해 어업경영조사보고, 감정평가사로부터 최근 어업보상 한 어업경비형태 등을 기초로 어업경비에 대한 모형(업종별어업경비모형)³⁾을 설정하여 총 매출액에서 어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음

<표 4-55> 대형선망 100톤 미만 경영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분석 결과	비율(%)
연간 평균어획금액(A)		9,541,240	
총 비용(B)		9,107,441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965,668	10.60
	유류비	2,384,211	26.18
	소모품비	390,828	4.29
	합계	3,740,707	
인건비		2,167,104	23.79
감가상각비	선체	150,649	1.65
	기관	90,389	0.99
	어구	60,260	0.66
	기타시설	0	0.00
	합계	301,298	
판매관리비	합계	936,723	10.29
기타잡비	합계	1,961,609	12.23
경비율(A/B)		95.45%	
3년간 어업순이익 (A-B)×3년		1,301,397	

○ 결론적으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업종간, 어선규모간의 상관관계 및 평년수익액을 추정한 결과와 금번 연구에서는 실제 확인된 표본(2통)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8년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대형선망에 대한 어선감척단가를 측정한 이후 100톤 미만, 100~120톤, 120톤 이상에 대해 함수식을 이용하여 일괄적용

2) 2010년 연근해어업총조사(국립수산과학원) 종합편 P399

3) 업종별어업경비모형이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경비형태를 표준화하여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모델

- 본 연구에서는 100톤 미만 2통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 및 근거자료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음
- 대형선망 100톤 미만의 경우 '08년 대비 총어획금액에서 차지하는 어업경비가 91.66% → 95.45%로 증가(인건비 등 물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총어획금액에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나. 잠수기어업 3구 기준단가 증가 사유

- '08년 연구에서의 잠수기어업의 경우 지역별 구분 없이 전체 표본(1~5구)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최종결과에서 각각의 지역(1~5구)별로 어업 실태를 도출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3구의 세부적인 분석은 곤란함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연간어획금액에서 평균어업경비를 제외한 어업순수익에서 3년을 곱하여 산출(145,773천원)하고, 어선규모간의 상관관계 및 평년수익액 추정 모형(선형회귀모형)을 통한 평년수익(48,591천원)을 예측한 것으로 추정됨

<표 4-56> 잠수기어업 3구 2008년도 분석결과와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추정)	본 연구(2011) : 3구
평균연간 어획금액	최저금액	113,200	223,978
	최고금액	311,822	755,960
	평균금액	178,576	481,510
평년수익 액	최저금액	30,802	16,570
	최고금액	84,847	94,231
	평균금액	48,591	64,855
평균어업경비율		72.79%	86.53%
3년 어업 순수익		145,773	194,565

- 본 연구에서는 잠수기어업 제3구(부산시, 울산시 및 경상남도 연해) 93건에 대해 조사대상 가능 표본 10개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임⁴⁾

4) 조사대상어선의 구체적인 정보는 미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선명 및 톤수는 본 보고서에서 수록하지 않음

- 분석방법은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였고, 최고 755,960천원, 최저 223,978천원, 평균매출액 481,510천원으로 분석되었음
- 어업경비는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기타경비 등 5개 어업경비에 대해 어업경영조사보고, 감정평가사로부터 최근 어업보상 한 어업경비형태 등을 기초로 어업경비에 대한 모형(업종별어업경비모형)을 설정하여 총 매출액에서 어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음

<표 4-57> 잠수기어업 3구 경영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분석 결과	비율(%)
연간 평균어획금액(A)		481,510	
총 비용(B)		416,654	100.00
생산관리비	미끼구입비	0	0.00
	유지보수비	25,703	6.17
	유류비	64,788	15.55
	소모품비	13,689	3.29
	합계	104,180	
인건비		218,572	52.46
감가상각비	선체	8,582	2.06
	기관	5,149	1.24
	어구	3,433	0.82
	기타시설	0	0.00
	합계	17,165	
판매관리비	합계	33,638	8.07
기타잡비	합계	43,101	10.34
경비율(A/B)		86.53%	
3년간 어업순이익 (A-B)×3년		194,565	

- 결론적으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업종간, 어선규모간의 상관관계 및 평년수익액을 추정한 결과와 금번 연구에서는 최근 어획금액이 반영된 실제 확인된 표본(10건)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8년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잠수기어업에 대한 어선감척단가를 측정된 이후 1구에서 5구를 배분하여 적용
- 본 연구에서는 직접 10건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음

제5장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 및 평가기준 수량 제시

제1절 잔존가치평가 개요

- 본 장에서는 근해어선들이 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어선·어구 등의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허가업종별 규모 및 수량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 평가범위를 정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어선·어구 등의 시설물 잔존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어선·어구 등의 시설물의 표준가 및 표준수량 등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2007. 12)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였고, 또한 3개 감정평가기관의 자문을 거쳐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 및 평가기준 수량을 제시하였음

1. 조사개요 및 방법

가. 현장조사

1) 업종별 어선·어구 등 수량

- 어업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현장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표본어선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허가업종의 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 및 어구, 어업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면담·탐문조사를 병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선체는 어선의 톤수 및 선질, 구조 및 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기관은 기관의 종류(육상용, 해상용) 및 기관마력, 사용연료(경유, 휘발유), 제작사, 기통수, RPM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의장품은 보조기관

및 발전기류, 항해용 기기류(갑판포함), 전자장비, 갑판·어업기기류로 구분하고, 각 의장품별 명칭 및 규격·형식, 용도, 수량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어구는 허가업종과의 적합성,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어구에 의해 포획되는 어종, 어구 보유수량, 그리고 어업자가 실제 조업에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어구 1틀(통)의 어구 구성품 내역 및 수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2) 업종별 어선·어구 등의 제조달원가

- 업종별 조사대상 어선들을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조사대상 어업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구입방법 및 구입처, 거래가격 등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해당 시설물 관련 제작소 및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탐문 조사 등을 병행하여 조사대상 어선어업과 관련된 어선·어구 등의 신조가격 및 중고품 거래가격조사를 실시하였음

나. 자료수집 및 정리

- 업종별 어업실태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업종별·톤급별로 근해어선어업에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전의 국제규제 감척사업 및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평가전례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시설물을 지역별·업종별·톤급별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액 산정기준 및 방법, 제조달원가, 적용율, 수량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시설물의 잔존가치 표준가 및 표준수량 산정에 참고하였음

제2절 선체·장비·어구 등의 잔존가치 표준단가

1. 선체·장비·어구 등의 잔존가치 표준단가

가. 선체 표준단가

- 근해어선어업의 어업실태를 살펴보면, 어선의 톤급과 어구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낮은 톤급의 어선들은 주로 내구성 및 관리상의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FRP로 제작된 FRP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높은 톤급의 어선들은 강재로 건조된 강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소형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구수량이 적은 업종에서는 FRP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선단조업을 하거나 대형의 어구들을 사용하는 업종들은 강선을 이용하고 있음
- 현재 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목선과 강선들은 건조된 지 오래된 어선이 많으며, 강선은 요즘도 가끔씩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목선의 경우는 관리가 어렵고 목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도 드문 편이라 건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알루미늄으로 선체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실용·보편화 되지 못한 상황에 있음
- 근해어선의 선체는 강선, FRP선, 목선으로 구분하였으며 어선을 신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허가업종이나 톤수, 재질의 두께 및 구조, 어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선체를 신조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재조달가격을 기초하여 선체의 표준단가(재조달원가)를 산정함
- 선질이 강재인 강선을 살펴보면, 허가업종 또는 조업방식 및 조업강도에 따라서 어선을 신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최근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가격의 변동이 심함

-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강선의 선체 표준단가를 톤당 500만원 ~ 1,500만원(700만원~1,000만원/2007.12 기준)의 범위로 정하고 차등 적용 하였음
- 선질이 FRP인 FRP선을 살펴보면, 어선의 규모가 작거나 어구의 규모가 작은 허가업종에서 사용하는 어선은 관리, 수리·보수 및 내구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FRP로 제작된 FRP선이 많으며, 새로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목선이나 강선보다는 FRP선을 많이 선호하고 있음
- FRP선 건조를 위해 소요되는 톤당 재조달원가는 지역, 선체의 두께 및 구조, 어업자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800만원~1,100만원(700만원~1,000만원/2007.12 기준) 정도로 가격차이를 보이며 FRP선의 선체 표준단가는 톤당 900만원(750만원/2007.12 기준)으로 정하였음
- 선질이 목재인 목선을 살펴보면, 이전의 감척사업 및 어선대체 등을 통하여 많은 수의 목선들이 FRP선 등으로 대체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선들은 건조한 지 오래된 어선들이 대부분임
- 선체의 외부를 보면 목재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어업자들은 목재로 된 선체 내·외부에 FRP 피복을 입혀서 사용하거나 특수 도료를 발라서 선체의 내구성을 높여 사용하고 있음
- 새로이 목선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톤당 700만원(500만원 이상/2007.12 기준)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목선의 표준단가는 톤당 800만원(550만원 2007.12 기준)으로 정하였음

<표 5-1> 근해어선 선체 표준단가

(단위 : 원)

구 분	규격·형식 및 용량	제조달원가(원/톤)		잔가율 (%)	내용 년수	
		범 위	표준단가(원)			
2007. 12	강		3,000,000~12,000,000	허가업종별 차등적용	20	25
	FRP		7,000,000~10,000,000	7,500,000	10	20
	목	목, FRP 피복	5,000,000 이상	5,500,000	10	15
2011. 5	강		5,000,000~15,000,000	허가업종별 차등적용	20	25
	FRP		8,000,000~11,000,000	9,000,000	10	20
	목	목, FRP 피복	7,000,000 이상	8,000,000	10	15

나. 기관 표준단가

- 조업에 사용하는 어선들의 주기관은 사용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디젤기관과 가솔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디젤기관은 기관의 종류에 따라 육상(차량)용 디젤기관과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선외기는 가솔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근해어선의 주기관은 주로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속선에서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어선의 규모가 작고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하거나 고출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상용 디젤기관을 사용하나 근해어선어업에 사용하는 주기관은 대부분 해상용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있음
- 해상용 디젤기관은 국내산과 외국산간에 가격차이가 있고 제작사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있음. 기관의 RPM(회전수)에 따라서 저속, 중속, 고속엔진으로 구분되며 이들간에도 가격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기관의 가격은 모델이나 기관구성, 기관의 마력에 의해 차이가 있으며 판매가격은 모델에 차이가 있으나 기관마력과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마력당 표준단가를 구하여 기관의 표

준가를 산정하였음

- 주기관은 감속장치 및 축계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어선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시 이들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음.
-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선박검사증서상의 검사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선박의 경우에는 공부서류상의 기관마력과 실제 부착된 기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육상용 디젤기관의 마력당 제조달원가는 70,000원~100,000원(60,000원~100,000원/2007.12 기준)정도이며 표준단가는 마력당 85,000원(80,000원/2007.12 기준)으로 정하였음
- 해상용 디젤기관을 살펴보면, 수입산 고속기관은 비슷한 기관마력이라 하더라도 제작사(볼보, 얀마, 커민스, 카타필라, 보드윈, MTU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마력당 제조달원가는 140,000원~220,000원(140,000원~200,000원/2007.12 기준)정도이고 중속기관은 180,000원~250,000원(180,000원~250,000원/2007.12 기준)정도이며, 저속기관은 250,000원~350,000원(250,000원~350,000원/2007.12 기준)정도임
- 국내산 해상용 디젤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마력 등에 따라서 110,000원~160,000원(100,000원~150,000원/2007.12 기준)정도임. 그래서 해상용 디젤기관의 표준단가는 수입산 고속기관은 170,000원(160,000원/2007.12 기준)으로 정하였고, 중속기관은 210,000원(200,000원/2007.12 기준), 저속기관은 280,000원(280,000원/2007.12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국내산 기관은 마력당 140,000원(130,000원/2007.12 기준)으로 정하였음

<표 5-2> 근해어선 기관 표준단가

(단위 : 원)

구 분	규격·형식 및 용량	제조달원가(원/마력)		잔가율 (%)	내용 년수 (년)	비고	
		범 위	표P준단가(원)				
2007. 12	육상용 디젤	육상차량용 기관 개조	60,000~100,000	80,000	10	20	제작사 모델 등에 의해 가격차이 있음
	해상용 디젤	수입산 (고속 기관)	140,000~200,000	160,000			
		중속기관	180,000~250,000	200,000			
		저속기관	250,000~300,000	280,000			
	국내산, 일부 수입산	100,000~150,000	130,000				
2011. 5	육상용 디젤	육상차량용 기관 개조	70,000~100,000	85,000	10	20	
	해상용 디젤	수입산 (고속 기관)	140,000~220,000	170,000			
		중속기관	180,000~250,000	210,000			
		저속기관	250,000~300,000	280,000			
	국내산, 일부 수입산	110,000~160,000	140,000				

다. 의장품 및 어구 표준단가

- 의장품은 동력원으로부터 전달된 동력에 의해 단독으로 작동하는 기기류와 동력전달과 함께 부가적인 기기들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작동되는 기기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의장품들이 후자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의장품으로 보고 일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의장품은 규모나 구동방식, 모델 등에 의해서 가격차가 있으나 의장품별로 허가업종이나 톤급에 상응하는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가격을 정하였음
- 기관류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조업활동을 위하여 주기관 이외의 보조기관과 발전기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보조기관은 주로 발전기 구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어업기기류나 해수펌프 등에 동력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보조기관의 표준단가는 제작사, 기통수, 모델 등을 기준으로 하여 1대당 표준단가를 산정하였으며, 발전기의 경우는 주로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연결을 통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관과 발전기를 하나의 의장품으로 보고 일괄평가하기도 하고 발전기만 분리하여 평가하기도 함.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의 용량을 고려하여 1대당 표준단가를 산정하였음
- 항해용 기기류를 살펴보면, 앵카, 앵카로프, 씨앙카(물퐁, 해묘), 조타기, 자동항법장치, 나침의, 자이로콤파스, 선회창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이들은 크기, 구동방식, 모델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조타기는 동력전달방식 및 규격·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전자장비를 살펴보면, 어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전자장비는 레이더, 무전기, 어군탐지기, 소나, GPS 네비게이트, GPS 플로터, NET FINDER, EPIRB 등이 있으며, 이들 전자장비는 모델 및 규격·형식, 제작사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 별로 단일 표준단가를 산정하였음
- 갑판·어업기구류를 살펴보면, 허가업종을 고려하여 조업에 적합한 여러 종류의 어업기구류들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적은 인원으로도 원활한 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허가업종, 지역에 따라서 명칭은 다르나 기능면에서는 비슷한 경우가 많고, 같은 기능을 하는 기기류도 어선의 규모나 작동방식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이드로라의 경우는 기관에 벨트를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받아 작동하는 방식과 유압장치들의 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방식이 있으며, 작동방식뿐 만 아니라 어선의 규모, 용량 등에 의해서도 가격의 차이를 보임

- 양망기와 양승기는 주로 유압장치나 전동모타 등을 이용하여 작동을 하며, 양망기는 어망을 감아올리는 역할을 하고 양승기는 줄을 감아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명칭은 달리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로라, NET WINCH 등이 있으며, 대형어선의 경우는 DECK MACHINERY라고 하여 양망관련 시스템이 있으며 이것 또한 사용하는 업종 및 어선의 규모, 용량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음
- 연안어업과 달리 일일조업이 아니라 항차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획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선도 있음
- 그 외의 의장품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허가업종 및 어획종에 맞게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규모와 용량에 따라 많은 가격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통일된 가격을 정하는 것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지만, 현장조사 자료와 전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업종 및 명칭, 기능에 따라 각 의장품에 대한 표준단가(재조달원가)를 산정하였음
- 어구를 살펴보면,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는 허가업종별로 구분하고 실제 조업시에 설치하는 어구의 1틀(통)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1척의 어선에 2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여 연중조업을 하는 경우는 어느 1개의 허가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동일 허가업종 내에서도 어획되는 어종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구의 규격, 크기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동일지역 내에서도 조업어장의 여건 및 어업자의 조업방법에 의해 사용하는 어구의 수량, 길이, 재료, 간격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어구도 하나의 통일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따라서 표준단가를 산정한 어구는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추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 거래되는 어구의 경우에는 지역간의 가격차이가 있기는 하나 1개의 가격으로 통일시켜 일괄 적용 하였음

- 또한, 어업자가 직접 원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꾸며 사용하는 어구의 경우에도 전체 가격범위 내에서 하나의 가격으로 통일시켜 일괄 적용 하였으며, 자망어구는 1폭, 주낙은 1바퀴, 문어단지는 1개, 통발어구는 부속구를 제외한 통발만 1개, 기타 대형어구는 1틀(통)을 기준으로 하여 어구의 표준단가(제조달원가)를 산정하였음

<표 5-3> 의장품 표준단가 (2007. 12 기준) (1)

구 분	규격·형식 및 용량	단 위	제조달원가(원)		잔가 율 (%)	내용 년수 (년)	비고	
			범 위	표준단가(원)				
기 관 류	보조기관	4,6,V-8기통	대	30,000~150,000/마력	10,000,000	10	20	
	발전기		대	20,000~50,000KVA	5,000,000	10	20	
항 해 용 기 류	앵카		개	1,500~2,500/kg	600,000	10	20	
	앵카체인		개		300,000	10	20	
	Sea Anchor	채납기용	폭	30,000~55,000	55,000	10	3	
	조타기	Hyd' Type	대	2,000,000~20,000,000	7,000,000	10	20	
	자동항법 장치		대	3,000,000~5,000,000	4,000,000	10	15	
	나침의	2"~7"	대	200,000~600,000	350,000	10	15	
	자이로 콤파스		대		9,000,000	10	15	
	선회창	Φ250mm Φ300mm	대	200,000~300,000	300,000	10	15	
	전 자 장 비 류	레이다	24,36,48,64, 72mile 등	대	3,000,000~7,000,000	7,000,000	10	15
무전기 (SSB)		10W,30W,50w	대	1,000,000~4,000,000	1,000,000 ~4,000,000	10	15	
무전기 (VHF)			대		1,000,000	10	15	
무전기 (DSB)			대		1,000,000	10	15	
어군탐지기		GPS플로터 결용	대	600,000~7,000,000	5,000,000	10	15	
소나			대	13,000,000~200,000,000	20,000,000	10	15	
GPS 네비게이트			대	1,500,000~2,500,000	1,700,000	10	15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결용	대	1,500,000~6,000,000	4,000,000	10	15	
팩스			대		3,000,000	10	15	
수은계			대		1,300,000	10	15	
EPIRB			대		1,100,000	10	15	
무선위치 자동발생기			대		3,000,000	10	15	

<표 5-4> 의장품 표준단가 (2007. 12 기준) (2)

구 분	규격 · 용량 등	단위	제조달원가(원)		잔가율 (%)	내용년수 (년)	비고	
			범 위	표준단가(원)				
전 자 장 비 류	Net Recorder		대		16,000,000	10	15	
	위성전화		대		2,000,000	10	15	
	항만전화		대	600,000~1,100,000	600,000	10	15	
갑 판 · 어 업 기 기 류	사이드로라	Belt Type Elec. Type Hyd' Type	식	3,000,000~20,000,000	3,000,000 ~20,000,000	10	15 ~20	
	양망기	Hyd' Type	식	2,000,000~20,000,000	10,000,000	10	15 ~20	
	양승기	Hyd' Type	식	2,000,000~5,000,000	4,000,000	10	15 ~20	
	로라	Elec. Type Hyd' Type	식	1,000,000~60,000,000	1,000,000 ~60,000,000	10	15 ~20	
	선수로라	Elec. Type Hyd' Type	식	3,000,000~10,000,000	9,000,000	10	15 ~20	
	선미로라	Elec. Type Hyd' Type	식	3,000,000~10,000,000	9,000,000	10	15 ~20	
	볼양망기	Hyd' Type	식	10,000,000내외	10,000,000	10	15 ~20	
	Net 원치류	Hyd' Type	식	25,000,000내외	25,000,000	10	15 ~20	
	이송기	Hyd' Type	식		4,000,000	10	15 ~20	
	로프처리기	Hyd' Type	식		4,000,000	10	15 ~20	
	라인로라	Elec. Type Hyd' Type	식	3,000,000~15,000,000	3,000,000 ~15,000,000	10	15 ~20	
	파워블록	Hyd' Type	식		8,000,000	10	15 ~20	
	크레인	Hyd' Type	식	20,000,000내외	20,000,000	10	15 ~20	
	Derrick	SS, 받침대 포함	대	200,000~1,000,000	200,000 ~1,000,000	10	15 ~20	
	호이스트		대	1,000,000~5,000,000	4,000,000	10	15 ~20	
멸치자숙기	SUS	대	4,000,000~25,000,000	4,000,000 ~25,000,000	10	15 ~20		

<표 5-5> 의장품 표준단가 (2007. 12 기준) (3)

구 분	규격·형식 및 용량	단위	제조달원가(원)		잔가율 (%)	내용 년수 (년)	비고	
			범 위	표준단가(원)				
감 관 · 어 업 기 기 류	버너	대	300,000~1,200,000	600,000	10	15 ~20		
	Fish Pump	대	17,000,000내외	17,000,000	10	15 ~20		
	Pump	대	200,000~1,500,000	200,000 ~1,500,000	10	15 ~20		
	해수펌프	대	3,000,000~7,000,000	5,000,000	10	15 ~20		
	조수기	대	10,000,000내외	10,000,000	10	15 ~20		
	냉동시설	대	15,000,000~150,000,000	15,000,000 ~150,000,000	10	15 ~20		
	밴딩기	자동 반자동	대		4,000,000	10	15 ~20	
	콘베어	Chain Type Hyd' Type	대 (식)	3,000,000~25,000,000	3,000,000 ~25,000,000	10	15 ~20	
	조상기		대	3,450,000~10,000,000	5,000,000	10	15 ~20	
	조상기판넬	12회로용	대	3,000,000~10,000,000	5,000,000	10	15 ~20	
	구멍땀목		대	3,000,000~4,000,000	3,000,000 ~4,000,000	10	20	
	컴프레샤	공랭식 수냉식	대		800,000	10	15 ~20	
	유수분리기		대		2,000,000	10	15 ~20	
	Deck Machinery		식	20,000,000~200,000,000	20,000,000 ~200,000,000	10	20	
집 어 시 설	안정기	1.5kW × 2등용 2kW × 2등용	대	180,000~250,000 200,000~300,000	200,000, 250,000	10	10	
	등	수은등 수중등 할로겐등	개		50,000 60,000			
	소켓	등에 포함	개					
	전선	배전반 포함	개 가 닥					
	배전반	전선포함	식	2,000,000~4,000,000	2,000,000 ~4,000,000			
	권양기		대					

<표 5-6> 의장품 표준단가 (2011. 5 기준)(1)

구분	규격·형식 및 용량	단위	제조달원가(원)		잔가율 (%)	내용 년수 (년)	비고	
			범 위	표준단가(원)				
기관류	보조기관	4,6,V-8기통	대	60,000~150,000/마력	10,000,000	10	20	
	발전기		대	30,000~60,000KVA	5,500,000	10	20	
항 해 용 기 류	앵카		개	2,000~2,500/kg	700,000	10	20	
	앵카체인		개		350,000	10	20	
	Sea Anchor	채납기용	폭	45,000~65,000	60,000	10	3	
	조타기	Hyd' Type	대	3,000,000~25,000,000	7,000,000	10	20	
	자동항법 장치		대	3,000,000~5,000,000	4,000,000	10	15	
	나침의	2"~7"	대	200,000~600,000	350,000	10	15	
	자이로 컴파스		대		9,000,000	10	15	
	선회창	Φ250mm Φ300mm	대	200,000~300,000	300,000	10	15	
전 자 장 비 류	레이다	24,36,48,64, 72mile 등	대	3,000,000~10,000,000	7,000,000	10	15	
	무전기 (SSB)	10W,30W,50w	대	1,000,000~4,000,000	1,000,000 ~4,000,000	10	15	
	무전기 (VHF)		대		1,000,000	10	15	
	무전기 (DSB)		대		1,000,000	10	15	
	어군탐지기	GPS플로터 겸용	대	1,000,000~8,000,000	5,500,000	10	15	
	소나		대	13,000,000~200,000,000	25,000,000	10	15	
	GPS 네비게이트		대	1,500,000~2,500,000	1,800,000	10	15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겸용	대	2,000,000~7,000,000	4,500,000	10	15	
	팩스		대		3,000,000	10	15	
	수은계		대		1,500,000	10	15	
	EPIRB		대		1,100,000	10	15	
	무선위치 자동발생기		대		3,000,000	10	15	

<표 5-7> 의장품 표준단가 (2011. 5 기준)(2)

구 분	규격·용량 등	단위	제조달원가(원)		잔가율 (%)	내용 년수 (년)	비고	
			범 위	표준단가(원)				
전 자 장 비 류	Net Recorder		대		5,000,000	10	15	
	위성전화		대		2,500,000	10	15	
	항만전화		대	600,000~1,100,000	600,000	10	15	
갑 판 · 어 업 기 류	사이드로라	Belt Type Elec. Type Hyd' Type	식	3,000,000~25,000,000	3,000,000 ~25,000,000	10	15 ~20	
	양망기	Hyd' Type	식	2,500,000~25,000,000	15,000,000	10	15 ~20	
	양승기	Hyd' Type	식	2,500,000~6,000,000	4,500,000	10	15 ~20	
	로라	Elec. Type Hyd' Type	식	1,000,000~60,000,000	1,000,000 ~60,000,000	10	15 ~20	
	선수로라	Elec. Type Hyd' Type	식	4,000,000~11,000,000	9,500,000	10	15 ~20	
	선미로라	Elec. Type Hyd' Type	식	4,000,000~11,000,000	9,500,000	10	15 ~20	
	불양망기	Hyd' Type	식	10,000,000내외	10,000,000	10	15 ~20	
	Net 원치류	Hyd' Type	식	25,000,000내외	25,000,000	10	15 ~20	
	이송기	Hyd' Type	식		4,000,000	10	15 ~20	
	로프처리기	Hyd' Type	식		4,500,000	10	15 ~20	
	라인로라	Elec. Type Hyd' Type	식	3,000,000~15,000,000	3,000,000 ~15,000,000	10	15 ~20	
	파워블록	Hyd' Type	식		8,000,000	10	15 ~20	
	크레인	Hyd' Type	식	20,000,000내외	20,000,000	10	15 ~20	
	Derrick	SS, 받침대 포함	대	300,000~1,000,000	300,000 ~1,000,000	10	15 ~20	
	호이스트		대	1,000,000~5,000,000	4,000,000	10	15 ~20	
	멀치자속기	SUS	대	4,000,000~25,000,000	4,000,000 ~25,000,000	10	15 ~20	

<표 5-8> 의장품 표준단가 (2011. 5 기준)(3)

구 분	규격·형식 및 용량	단위	제조달원가(원)		잔가율 (%)	내용 년수 (년)	비고	
			범 위	표준단가(원)				
갑 관 · 어 업 기 기 류	버너	대	400,000~1,200,000	600,000	10	15 ~20		
	Fish Pump	대	17,000,000내외	17,000,000	10	15 ~20		
	Pump	대	300,000~1,500,000	300,000 ~1,500,000	10	15 ~20		
	해수펌프	대	3,000,000~7,000,000	5,000,000	10	15 ~20		
	조수기	대	10,000,000내외	10,000,000	10	15 ~20		
	냉동시설	대	18,000,000~180,000,000	18,000,000 ~180,000,000	10	15 ~20		
	밴딩기	자동 반자동	대		4,000,000	10	15 ~20	
	콘베어	Chain Type Hyd' Type	대 (식)	3,000,000~25,000,000	3,000,000 ~25,000,000	10	15 ~20	
	조상기		대	4,000,000~10,000,000	5,000,000	10	15 ~20	
	조상기판넬	12회로용	대	3,000,000~10,000,000	5,000,000	10	15 ~20	
	구멍땃목		대	3,000,000~4,000,000	3,000,000 ~4,000,000	10	20	
	컴프레샤	공랭식 수냉식	대		800,000	10	15 ~20	
	유수분리기		대		2,000,000	10	15 ~20	
	Deck Machinery		식	20,000,000~200,000,000	20,000,000 ~200,000,000	10	20	
집 어 시 설	안정기	1.5kW × 2등용 2kW × 2등용	대	180,000~250,000 200,000~300,000	200,000, 250,000	10	10	
	등	수은등 수증등 할로겐등	개		50,000 60,000			
	소켓	등에 포함	개					
	전선	배전반 포함	가닥					
	배전반	전선포함	식	2,000,000~4,000,000	2,000,000 ~4,000,000			
	권양기		대					

<표 5-9> 어구수량 및 내용년수, 표준단가 (2007. 12 기준)(1)

업종	어구명	규격·용량	표준수량		내용년수(년)	잔가율(%)	표준단가(원)	비고
			수량	단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3	10	25,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통	3	10	30,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동해구기선저인망	저인망	Warp, 어망	2	틀	3	10	15,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서남구기저(외)	저인망	Warp, 어망	2	틀	3	10	12,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서남구기저(쌍)	저인망	Warp, 어망	2	통	3	10	25,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판	2	틀	3	10	50,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판	2	틀	3	10	40,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대형선망	선망	어망, 로프 등	1	틀	3	10	250,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소형선망	선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15,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기선권현망	권현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50,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자망	자망	8~20톤미만	15,000	미터	3	10	80,000	1)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의함 2)설치간격은 10미터 이내 (동해안은 40미터이내)
		20~40톤미만	18,000					
		40톤이상	21,000					
안강망	잡어용	어장돛 1개씩 포함	5~10	틀	3	10	20,000,000	예비어망 3틀 추가
봉수망	봉수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예비어망 2틀 추가
자리돔들망	들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예비어망 2틀 추가
잠수기	잠수어구		2	식	3	10	3,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표 5-10> 어구수량 및 내용년수, 표준단가 (2007. 12 기준)(2)

업종	어구명	규격 · 용량	표준수량		내용 년수 (년)	잔가 율 (%)	표준단가 (원)	비고
			수량	단위				
통발	기타통발	8~20톤미만	2,500	개	3	10	5,500	1)어업허 가및신고 등에관한 규칙 별표 9에 의함 2)설치간 격은 10미터 이내 (동해안은 40미터이 내)
		20~40톤미만	3,500					
		40톤이상	5,000					
	기타통발 (동해안)	8~20톤미만	4,000	개	3	10	17,000	
		20~40톤미만	5,500					
		40톤이상	7,000					
	장어통발	8~20톤미만	3,200	개	3	10	1,000	
		20~40톤미만	5,000					
		40톤이상	7,000					
	문어단지	8톤이상	7,000	개	3	10	800	
형망	형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4,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연승	갈치주낙		1,000	바퀴	3	10	55,000	모릿줄, 닷 등 내구성어 구만 평가함

<표 5-11> 어구수량 및 내용년수, 표준단가 (2011. 5 기준)(1)

업종	어구명	규격·용량	표준수량		내용 년수 (년)	잔가 율 (%)	표준단가 (원)	비고
			수량	단위				
대형기저 (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3	10	27,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대형기저 (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통	3	10	33,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동해구 기선저인망	저인망	Warp, 어망	2	틀	3	10	17,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서남구기저(외)	저인망	Warp, 어망	2	틀	3	10	15,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서남구기저(쌍)	저인망	Warp, 어망	2	통	3	10	27,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판	2	틀	3	10	55,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판	2	틀	3	10	40,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대형선망	선망	어망, 로프 등	1	틀	3	10	270,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소형선망	선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17,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기선권현망	권현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55,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자망	자망	8~20톤미만	15,000	미터	3	10	100,000	1) 어업허 가 및 신 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의함 2) 설치 간 격은 10미 터 이내 (동해안은 40미터이 내)
		20~40톤미만	18,000					
		40톤이상	21,000					
안강망	잡어용	어장돛 1개씩 포함	5 ~10	틀	3	10	22,000,000	예비어망 3틀 추가
봉수망	봉수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예비어망 2틀 추가
자리돛들망	들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예비어망 2틀 추가
잠수기	잠수어구		2	식	3	10	3,5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표 5-12> 어구수량 및 내용년수, 표준단가 (2011. 5 기준)(2)

업종	어구명	규격 · 용량	표준수량		내용년수 (년)	잔가율 (%)	표준단가 (원)	비고
			수량	단위				
통발	기타통발	8~20톤미만	2,500	개	3	10	7,000	1) 어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의함 2)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20~40톤미만	3,500					
		40톤이상	5,000					
	기타통발 (동해안)	8~20톤미만	4,000	개	3	10	18,000	
		20~40톤미만	5,500					
		40톤이상	7,000					
	장어통발	8~20톤미만	3,200	개	3	10	1,200	
		20~40톤미만	5,000					
		40톤이상	7,000					
	문어단지	8톤이상	7,000	개	3	10	800	
형망	형망	어망, 로프 등	2	틀	3	10	4,000,000	예비어망 2틀 추가
연승	갈치주낙		1,000	바퀴	3	10	60,000	모릿줄, 닻 등 내구성어구만 평가함

2. 선박별 의장품 · 어구 등 표준 수량 및 특수 시설의 범위

가. 선박별 의장품 · 어구 등 표준 수량

- 일반적으로 선박평가는 대체로 근해어업, 원양어업처럼 어업경영규모가 큰 어업의 조업활동에 사용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업종이나 어선규모에 따라 조업 방식 및 어선구조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되는 의장품 품목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선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해당선박의 선체와 기관에 대한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며, 의장품은 해당선박의 용도에 따라서 설치하는 의장품

의 구성 및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의장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목적에 따라 선박의 용도에 맞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평가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선체에 설치되어 있는 의장품 전부를 평가에 포함시키기도 함

- 선박의 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선박들에 설치되어져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선체에 포함시켜서 일괄평가하기도 함
- 선박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품목이 아니라 분리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거나 선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운반 또는 이동이 자유롭거나 소유자의 식별이 어려운 품목 및 예비품, 그리고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있음
- 선박평가에 포함되는 선체, 기관을 비롯한 의장품 등의 수량은 어선 1척을 사용해서 조업하는 경우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속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속선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도 하여야 함
- 조업어장의 여건이나 조업에 사용하는 사용어구, 어선규모 등에 따라 설치하는 의장품의 차이는 있으나 당해허가업종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한 선박평가를 하는 경우에 평가에 포함시켜야 할 일반적인 업종별 시설물의 보유수량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표 5-13>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1)

구 분		단위	연승	안강망	기선권현망 (본선)	기선권현망 (어탐선)	기선권현망 (가공 및 운반선)	동해구 트롤	동해구 기저
선체	목선	척	1	1	1	1	1	1	1
	FRP선								
	강선								
기관류	주기관	대	1	1	1	1	1	1	1
	보조기관	대	2	2	1	1	1	2	1
	발전기	대	2	2	1	1	1	2	1
항해용기기류	앵카	개	2	2	1	1	1	2	2
항해용기기류	앵카체인	개	2	2	1	1	1	2	2
	조타기	대	1	1	1	1	1	1	1
	자동항법장치	대	1	1	1			1	1
	나침의	대	1	1	1	1	1	1	1
	자이로콤파스	대						1	
	선회창	대	1	1	1	1	1	1	1
전자장비류	레이다	대	1	2	1	1	1	2	1
	무전기(SSB)	대	3	3	2	2	1	4	1
	무전기(VHF)	대	1	1					
	무전기(DSB)	대							
	어군탐지기	대	1	1	1	1		1	1
	소나	대			1	1			
	GPS네비게이트	대							
	GPS플로터	대	1	2	1	1	1	1	1
	팩스	대							
	수온계	대	1	1				1	
	EPIRB	대	1	1			1	1	1
	Net Recorder	대						1	
	위성전화	대						1	
항만전화	대	1	1	1	1		2	1	
사이드로라	사이드로라	식	1	1	1			1	1
	양망기	식							
	양승기	식	3						
	선수로라	식		1				1	
	선미로라	식		1				1	
	불양망기	식		2					
	Net 원치류	식				1		1	

<표 5-14>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2)

구 분	단위	연승	안강망	기선권현망 (본선)	기선권현망 (어탐선)	기선권현망 (가공 및 운반선)	동해구 트롤	동해구 기저	
갑판· 어업기기류	이송기	식			1				
	로프처리기	식						1	
	파워블록	식			1				
	크레인	식			1				
	Derrick	대		1					
	호이스트	대					1	2	
	멸치자숙기	대			-		1		
	버너	대			-		1		
	Fish Pump	대			1				
	Pump	대	2	2	1			2	2
	냉동시설	식	1	1					
	콘베어	대		1					
	구멍뗏목	대	1	1	1	1	1	1	1
	컴프레샤	대		1			1	1	1
	유수분리기	대		1			1		
전기시설	식	1	1	1	1	1	1	1	

<표 5-15>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3)

구분	단위	기타통발	장어통발	문어단지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쌍끌이 본선)	대형트롤
선체	목선	척	1	1	1	1	1
	FRP선						
	강선						
기관류	주기관	대	1	1	1	1	1
	보조기관	대	3	3		2	2
	발전기	대	2	2	1	2	2
항해용기기류	앵카	개	2	2	2	2	2
	앵카체인	개	2	2	2	2	2
	조타기	대	1	1	1	1	1
	자동항법장치	대	1	1	1	1	1
	나침의	대	1	1	1	1	1
	자이로컴파스	대					1
	선회창	대	1	1	1	1	1
전자장비류	레이다	대	2	2	1	1	2
	무전기(SSB)	대	2	2	2	3	3
	무전기(VHF)	대	1	1	1	1	1
	무전기(DSB)	대				3	1
	어군탐지기	대	1	1	1	1	1
	소나	대					1
	GPS네비게이트	대				1	1
	GPS플로터	대	2	2	1	1	2
	팩스	대					1
	수온계	대		1		1	1
	EPIRB	대	1	1		1	1
	Net Recorder	대					1
	위성전화	대	1	1		1	1
	항만전화	대	1	1		1	1
갑판·어업기 기류	사이드로라	식			1	1	
	양승기	식			1		
	로프처리기	식	1	1			
	라인로라	식	1	1		1	
	자동탈락기	대		1			
	호이스트	대					2
	Pump	대	2	2	2	2	2
	해수펌프	대					
	조수기	대	1	1		1	1
	냉동시설	식	1	1		1	1
	밴딩기	대	1				
	콘베어	대	6	6			1
	구멍뗏목	대	1	1		1	1
	컴프레샤	대	1	1		1	2
	유수분리기	대	1	1		1	1
	Deck Machinery	식					1
전기시설	식	1	1	1	1	1	

<표 5-16>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4)

구분	단위	서남구기저 (외끌이)	서남구기저 (쌍끌이) 본선	근해자망	잠수기	근해형망
선체	목선	척	1	1	1	1
	FRP선					
	강선					
기관류	주기관	대	1	1	1	1
	보조기관	대	1	2	2	1
	발전기	대	1	2	2	1
항해용기기류	앵카	개	2	2	2	1
	앵카체인	개	2	2	2	1
	조타기	대	1	1	1	1
	자동항법장치	대	1	1	1	1
	나침의	대	1	1	1	1
	선회창	대	1	1	1	1
	레이다	대	1	2	1	1
전자장비류	무전기(SSB)	대	1	2	3	1
	무전기(VHF)	대		1	1	1
	어군탐지기	대	1	1	1	1
	GPS플로터	대	1	1	1	1
	수은계	대			1	
	EPIRB	대	1	1	1	
	Net Recorder	대		1		
	위성전화	대		1	1	
	항만전화	대	1	1	1	
	사이드로라	식	1		1	1
갑판·어업기 기류	양망기	식		1		
	Net 원치류	식		1		
	로프처리기	식	1			
	Derrick	대			1	2
	Pump	대	2	2	2	1
	조수기	대			1	
	냉동시설	식		1	1	
	구멍뗏목	대	1		1	
	컴프레샤	대	1	1		1
	유수분리기	대		1	1	
	Deck Machinery	식		1		
	전기시설	식	1	1	1	1

<표 5-17>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5)

구 분		단위	소형선망 (본선)	소형선망 (등선)	소형선망 (운반선)
선체	목선	척	1	1	1
	FRP선				
	강선				
기관류	주기관	대	1	1	1
	보조기관	대	2	1	1
	발전기	대	1	1	
항해용기기류	앵카	개	1	1	1
	앵카체인	개	1	1	1
	조타기	대	1	1	1
	자동항법장치	대	1		
	나침의	대	1	1	1
	선회장치	대	1	1	1
전자장비류	레이다	대	1	1	1
	무전기(SSB)	대	2	1	1
	어군탐지기	대	1	1	1
	소나	대	1		
	GPS플로터	대	1	1	1
	EPIRB	대			1
	항만전화	대	1	1	1
갑판·어업기 기류	사이드로라	식	1		1
	Net 원치류	식	2		2
	이송기	식	1		1
	파워블록	식	1		1
	Pump	대	2		2
	구멍땀목	대	1		1
	전기시설	식	1	1	1
집어시설	안정기	대		90	
	등	개		170	
	소켓	개		170	
	전선	가닥		170	
	배전반	식		1	

<표 5-18> 업종별 시설물 보유수량(2011. 5 기준)(6)

구 분		단위	대형선망 (본선)	대형선망 (등선)	대형선망 (운반선)
선체	목선	척	1	1	1
	FRP선				
	강선				
기관류	주기관	대	1	1	1
	보조기관	대	2	2	2
	발전기	대	2	2	2
항해용기기류	앵카	개	1	1	1
	조타기	대	1	1	1
	나침의	대	1	1	1
	선회장치	대	1	1	1
전자장비류	알파레이다	대	1		
	레이다	대	1	1	1
	무전기(SSB)	대	2	2	2
	무전기(VHF)	대	2	1	1
	무전기(DSB)	대	3	2	1
	어군탐지기	대	4	3	
	소나	대	1	2	
	GPS 네비게이트	대		1	
	GPS플로터	대		2	1
	Receiver	대	2	2	
	Tele Sounder	대	1	1	
	팩스	대	1		
	수온계	대	1		
	Wire Count	대	1		
갑판·어업기 기류	Indicator	대	1		
	EPIRB	대	1	1	1
	Net Finder	대		1	
	사이드로라	식			1
	로라	식			2
	Net 원치류	식			1
	Pump	대	10	7	2
	조수기	대	1		
	에어컨	대	2	1	
	구멍뗏목	대	2	1	1
	컴프레샤	대	2	2	2
유수분리기	대	1		1	
Deck Machinery	식	1	1		
전기시설	식	1	1	1	
집어서설	합 계	식		1	
	안정기	대	1		
	등	개	2		

- 일반 선박평가에서는 어구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잔존가치 보상평가에서는 허가업종에 적합하게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어구는 같은 허가업종으로 조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업어장의 여건, 어선의 규모, 어업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구의 크기 및 보유수량, 설치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업실태 조사시 실시한 현장조사의 자료와 감척사업 및 어업피해보상 평가의 전례자료, 연근해어업 총조사 보고서(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2004년),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업종별로 어구를 분류하고, 업종에 따라 사용하는 일부 어구에 대하여 표준수량을 산정하였음

나. 특수 시설의 범위

- 잔존가치 보상평가에 있어서는 일반 선박평가에 포함되는 의장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조업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선체에 설치(부착)된 예비품목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함
- 2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절에 맞게 연중 조업을 하기 때문에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가 다르며 어구에 따라서 사용하는 의장품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조업에 필요한 모든 의장품들을 선체에 설치하기도 하며 조업하지 않는 허가업종의 일부 장비들은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체에서 분리하여 필요시 바로 사용가능한 형태로 보관하다가 다시 해당 어업으로 조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바로 선체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의장품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어획물을 바로 판매하지 않고 가공·건조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에 특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음. 멸치를 주어획 어종으로 하는 허가업종에서는 생멸치를 바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건멸치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고부가가치의 건멸치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육상에 건조가공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많으며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건멸치 가공공장에 일정금액의 가공비를 지불하여 건멸치로 판매하기도 함
- 육상 가공시설에는 저온시설, 건조기, 선별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육상 가공시설물은 타 용도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여 관련 어선어업이 폐업할 경우 관련 기기들의 적정한 매각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음
- 가공시설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잔존가치액을 감안할 때 어업자들의 실제 손실액은 클 것이므로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시 어선 등 어업관련 시설물에 포함하여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됨
- 그러나, 현재 시행중에 있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도 연안선망·선인망어업과 같은 업종들도 규모가 작기는 하나 육상에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도 육상의 가공시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여 평가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육상의 가공시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표 5-19> 육상의 가공시설

구분		규격·형식	수량	단위	표준단가 (원)	잔가율 (%)	내용 년수
2007. 12	저온시설	40평기준	1	식	3,000,000/평	10	15 ~ 20
	건조기	1280발 기준	4	대	70,000,000/대	10	15 ~ 20
	선별기		3	대	15,000,000/대	10	15 ~ 20
2011. 5	저온시설	40평기준	1	식	3,500,000/평	10	15 ~ 20
	건조기	1280발 기준	4	대	75,000,000/대	10	15 ~ 20
	선별기		3	대	18,000,000/대	10	15 ~ 20

3. 잔존가치 표준가

- 어선의 잔존가치 표준가는 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각각에 대한 표준 단가(제조달원가)에 내용년수와 경과년수를 고려한 정율법에 의한 잔존 가치 적용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수량을 곱하여 품목별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방법은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얻어진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선체와 주기관은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나머지 의장품은 일괄 평가하여 이들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 전자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어선에 설치된 의장품에 대한 규격·형식, 모델, 수량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 개별 평가가 가능할 때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평가방법이 있음
- 후자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의장품 각각에 대한 규모·형식, 모델, 제작사, 제작일자, 보유수량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거나 분리

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내용과 부합되는 바, 이 방법에 의해 표준가를 산정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지역별·업종별·톤급별에 따라서, 조업어장의 여건, 사용어구에 따라 시설물의 구성이나 수량의 차이가 있으며, 선체의 선질이나 기관의 종류 및 마력수, 의장품의 구성 및 수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규격·형식, 모델, 기관의 회전수, 경과년수(또는 잔존년수)에 따라서 평가되는 평가금액에 차이가 생기고 있음
- 그래서 어선 잔존가치 표준가는 앞에서 산정한 선체 표준단가(표 6-1), 기관 표준단가(표 6-2), 의장품 표준단가(표 6-3) 및 표준수량(표 6-5), 어구의 표준단가 및 적정수량(표 6-4)을 이용하여 선체, 기관, 의장품 및 어구의 표준가를 구한 다음, 이를 합산한 잔존가치 표준가를 산정하고 있음
- 선체의 경우는 선질에 의한 제조달원가와 내용년수, 잔가율, 제작일자 등에 의한 잔존가치 적용율을 구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기관의 경우는 기관의 종류, 마력, 모델, 제작사, RPM, 등에 의한 제조달원가와 내용년수, 잔가율, 제작일자 등에 의한 잔존가치 적용율을 구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였음

<표 5-20> 선체, 기관의 잔존가치 표준가 및 적용율

구 분	규격·형식 및 수량	단위당 제조달원가	내용년수	잔가율	적용율	표준가	비고
선체	어업자별 선체 톤수 적용	선질별 톤당 단가 적용 (표7-1참조)	선질별 내용년수 적용 (표7-1참조)	선질별 잔가율 적용 (표7-1참조)	선체 경과년수 고려하여 적용	어업자 개인별 평가	
기관	어업자별 기관마력 적용	기관별 마력당 단가 적용 (표7-2참조)	20년	10%	기관 경과년수 고려하여 적용	어업자 개인별 평가	

- 의장품은 용량 및 크기 등에 의한 제조달원가와 내용년수와 잔가율, 제작일자 등을 고려하여 정율법에 의한 적용율을 계산하여 잔존가치 평가액을 산출함

- 의장품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각 어선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장품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선체는 허가업종에 따라 강선 또는 FRP선을 표본어선으로 하여 업종별·톤급별로 조업에 필요한 의장품의 표준을 정하여 수량 및 단가를 정하였음
- 업종별·톤급별 의장품을 일괄 합산하여 표준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업종별·톤급별 의장품의 표준 재조달원가에 선체의 경과년수(또는 잔존년수)를 고려하여 정율법에 의한 잔존가치 적용율을 적용하여 의장품의 표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5-21> 의장품 잔존가치 표준가 및 적용율

구 분	규격·형식 및 수량	표준가격	내용년수	잔가율	적용율	표준가	비고
의장품	업종별·톤급별 표준수량 적용	업종별·톤급별 표준 재조달원가 적용	15~20년	10%	선체의 경과년수를 기준하여 산출된 적용율 적용	어업자 개인별 평가	업종별·톤급별 표준 의장품 재조달원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어구는 어구종류에 따라서 재조달원가와 내용년수, 잔가율, 경과년수(또는 잔존년수) 등에 의한 잔존가치 적용율을 구하고 수량을 곱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허가업종, 조업어장의 여건, 어선의 규모, 조업인원에 따라 사용하는 어구의 규격, 재조달가격, 수량 등이 다르며, 2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여 여러 종류의 어구들을 함께 보유하고 여기에 따라 다른 어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일정한 어구의 표준가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업자 개인별 어구에 대해 표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5-22> 어구 잔존가치 표준가 및 적용율

구분	규격·형식 및 수량	표준가격	내용 년수	잔가율	적용율	표준가	비고
어구	어업자별 어구 보유수량 적용	어구별 제조달원가 적용 (표7-4참조)	3년	10%	어구의 경과년수 고려하여 적용	어업자 개인별 평가	어구의 경우에는적 용율을 내용월수 및 경과월수에 의해 산정할 수도 있음

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표 5-23>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60톤미만	목	488,900	232,531	123,648	70,104	59,690	59,690
	FRP	553,400	294,064	170,088	101,709	66,140	66,140
	강	531,900	330,984	226,293	158,895	116,936	94,090
60톤이상 ~	목	783,700	384,498	202,677	111,666	89,170	89,170
	FRP	881,200	477,513	272,877	159,441	98,920	98,920
70톤미만	강	848,700	533,322	357,839	245,885	175,705	141,170
70톤이상 ~	목	806,850	393,687	206,053	112,745	91,485	91,485
	FRP	913,350	495,288	282,733	164,930	102,135	102,135
80톤미만	강	877,850	556,249	375,537	259,353	186,007	148,285
80톤이상 ~	목	903,900	440,849	229,116	124,146	101,190	101,190
	FRP	1,028,400	559,622	318,756	185,151	113,640	113,640
90톤미만	강	986,900	630,886	427,245	295,533	211,688	167,590

<표 5-24>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60톤미만	목	535,000	248,000	135,000	75,000	65,000	65,000
	FRP	610,000	342,000	190,000	120,000	70,000	70,000
	강	590,000	365,000	250,000	180,000	135,000	105,00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865,000	402,000	220,000	130,000	95,000	95,000
	FRP	965,000	535,000	296,000	177,000	108,000	108,000
	강	930,000	595,000	384,000	268,000	200,000	155,00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875,000	420,000	235,000	135,000	100,000	100,000
	FRP	975,000	545,000	305,000	185,000	115,000	115,000
	강	955,000	615,000	395,000	275,000	215,000	160,000
80톤이상 ~ 90톤미만	목	950,000	450,000	244,000	140,000	110,000	110,000
	FRP	1,050,000	565,000	325,000	190,000	120,000	120,000
	강	1,000,000	635,000	435,000	300,000	220,000	175,000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표 5-25>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60톤이상 ~ 80톤미만	강	1,731,200	1,094,990	725,854	491,876	346,150	277,080
80톤이상 ~ 100톤미만	강	2,346,800	1,494,154	989,740	669,386	469,274	373,640
100톤이상 ~ 120톤미만	강	2,874,800	1,833,534	1,212,162	817,786	571,326	454,440
120톤이상 ~ 140톤미만	강	3,671,800	2,339,532	1,538,988	1,032,498	715,054	570,540

<표 5-26>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60톤이상 ~ 80톤미만	강	1,900,000	1,200,000	800,000	550,000	400,000	310,000
80톤이상 ~ 100톤미만	강	2,500,000	1,650,000	1,100,000	750,000	520,000	410,000
100톤이상 ~ 120톤미만	강	3,200,000	2,020,000	1,350,000	900,000	630,000	500,000
120톤이상 ~ 140톤미만	강	4,050,000	2,600,000	1,700,000	1,150,000	800,000	630,000

3) 동해구기저

<표 5-27> 동해구기저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373,700	181,617	98,961	57,266	46,010	46,010
	FRP	411,200	217,392	125,961	75,641	49,760	49,760
	강	398,700	238,857	158,639	108,889	79,293	66,01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449,200	218,168	116,759	66,025	53,560	53,560
	FRP	501,700	268,253	154,559	91,750	58,810	58,810
	강	484,200	298,304	200,308	138,297	100,156	81,56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30,300	257,758	136,216	75,695	61,670	61,670
	FRP	597,800	322,153	184,816	108,770	68,420	68,420
	강	575,300	360,790	243,636	168,616	121,579	97,670
50톤이상 ~ 60톤미만	목	640,300	311,346	162,492	88,723	72,670	72,670
	FRP	728,800	395,775	226,212	132,088	81,520	81,520
	강	699,300	446,432	303,331	210,552	151,217	119,870

<표 5-28> 동해구기저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410,000	200,000	110,000	70,000	55,000	55,000
	FRP	450,000	235,000	140,000	85,000	57,000	57,000
	강	440,000	260,000	170,000	120,000	85,000	70,00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490,000	240,000	130,000	80,000	60,000	60,000
	FRP	550,000	290,000	165,000	100,000	65,000	65,000
	강	530,000	330,000	220,000	150,000	110,000	90,00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80,000	280,000	150,000	85,000	67,000	67,000
	FRP	650,000	350,000	200,000	120,000	70,000	70,000
	강	630,000	395,000	260,000	180,000	130,000	110,000
50톤이상 ~ 60톤미만	목	700,000	340,000	180,000	95,000	80,000	80,000
	FRP	800,000	430,000	245,000	150,000	90,000	90,000
	강	770,000	480,000	330,000	230,000	170,000	135,000

4)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표 5-29>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30톤급	목	473,200	229,304	121,919	68,425	55,960	55,960
	FRP	531,700	285,113	164,039	97,090	61,810	61,810
	강	512,200	318,598	215,016	148,956	107,881	87,160
40톤급	목	517,800	250,733	132,266	73,470	60,420	60,420
	FRP	585,300	315,128	180,866	106,545	67,170	67,170
	강	562,800	353,765	239,686	166,391	120,329	96,420
50톤급	목	603,300	291,728	152,012	83,073	68,970	68,970
	FRP	688,800	373,295	213,572	124,968	77,520	77,520
	강	660,300	422,235	288,077	200,772	144,854	114,570

<표 5-30> 외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30톤급	목	520,000	250,000	135,000	75,000	65,000	65,000
	FRP	580,000	300,000	180,000	110,000	68,000	68,000
	강	560,000	350,000	235,000	165,000	115,000	100,000
40톤급	목	570,000	280,000	145,000	80,000	67,000	67,000
	FRP	640,000	350,000	200,000	115,000	73,000	73,000
	강	620,000	380,000	260,000	180,000	135,000	105,000
50톤급	목	660,000	325,000	175,000	90,000	75,000	75,000
	FRP	750,000	400,000	235,000	135,000	85,000	85,000
	강	730,000	460,000	310,000	220,000	160,000	130,000

5)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표 5-31>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30톤급	목	1,213,200	608,294	322,816	177,462	134,280	134,280
	FRP	1,330,200	719,912	407,056	234,792	145,980	145,980
	강	1,291,200	786,882	509,010	338,524	238,122	196,680
50톤급	목	1,761,200	892,750	471,744	256,286	189,080	189,080
	FRP	1,938,200	1,061,608	599,184	343,016	206,780	206,780
	강	1,879,200	1,162,922	753,422	499,944	346,174	283,480

<표 5-32> 쌍끌이서남구기선저인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30톤급	목	1,300,000	670,000	350,000	200,000	150,000	150,000
	FRP	1,450,000	780,000	450,000	250,000	170,000	170,000
	강	1,420,000	850,000	550,000	370,000	260,000	220,000
50톤급	목	1,900,000	950,000	510,000	280,000	210,000	210,000
	FRP	2,150,000	1,150,000	650,000	370,000	230,000	230,000
	강	2,100,000	1,250,000	820,000	550,000	375,000	300,000

6) 대형트롤

<표 5-33> 대형트롤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120톤이상 ~ 130톤미만	강	1,554,400	978,230	660,738	457,348	330,953	264,540
130톤이상 ~ 140톤미만	강	1,681,400	1,065,558	721,381	499,818	360,891	287,040

<표 5-34> 대형트롤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120톤이상 ~ 130톤미만	강	1,700,000	1,080,000	730,000	500,000	360,000	300,000
130톤이상 ~ 140톤미만	강	1,850,000	1,170,000	800,000	550,000	400,000	315,000

7) 동해구트롤

<표 5-35> 동해구트롤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20톤이상 ~	목	478,700	230,846	129,668	78,185	62,990	62,990
	FRP	516,200	266,621	156,668	96,560	66,740	66,740
30톤미만	강	503,700	288,086	189,346	129,808	96,273	82,990
50톤이상 ~	목	1,044,700	517,940	284,183	164,275	126,070	126,070
	FRP	1,133,200	602,369	347,903	207,640	134,920	134,920
60톤미만	강	1,103,700	653,026	425,022	286,104	204,617	173,270

<표 5-36> 동해구트롤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20톤이상 ~	목	530,000	250,000	140,000	85,000	68,000	68,000
	FRP	570,000	300,000	170,000	105,000	72,000	72,000
30톤미만	강	550,000	320,000	210,000	140,000	105,000	90,000
50톤이상 ~	목	1,150,000	570,000	310,000	180,000	140,000	140,000
	FRP	1,250,000	660,000	380,000	230,000	150,000	150,000
60톤미만	강	1,200,000	720,000	470,000	310,000	220,000	190,000

8) 대형선망

<표 5-37> 대형선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129톤급 (본선)	10,384,810	6,596,172	4,383,233	2,986,748	2,133,724	1,687,203
80톤급 (본선)	8,554,810	5,284,441	3,440,772	2,308,309	1,644,658	1,330,203
50톤급 (본선)	7,978,810	4,911,889	3,195,966	2,144,971	1,534,288	1,242,603

<표 5-38> 대형선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129톤급 (본선)	11,500,000	7,250,000	4,800,000	3,300,000	2,350,000	1,900,000
80톤급 (본선)	9,400,000	5,800,000	3,800,000	2,500,000	1,800,000	1,500,000
50톤급 (본선)	8,800,000	5,400,000	3,500,000	2,400,000	1,700,000	1,400,000

9) 소형선망

<표 5-39> 소형선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본선	목	336,800	164,163	90,685	53,310	42,320	42,320
	FRP	359,300	185,628	106,885	64,335	44,570	44,570
	강	329,300	182,199	114,672	75,718	56,082	49,820
등선	목	281,300	108,386	52,762	29,942	23,110	23,110
	FRP	299,300	125,558	65,722	38,762	24,910	24,910
	강	275,300	122,815	71,952	47,868	34,119	29,110
운반선	목	224,520	116,515	60,990	32,272	22,452	22,452
	FRP	239,175	130,496	71,542	39,453	23,918	23,918
	강	219,635	128,262	76,614	46,867	31,415	27,337

<표 5-40> 소형선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본선	목	370,000	180,000	100,000	60,000	46,000	46,000
	FRP	400,000	200,000	120,000	70,000	50,000	50,000
	강	360,000	200,000	130,000	84,000	60,000	55,000
등선	목	300,000	120,000	60,000	33,000	25,000	25,000
	FRP	330,000	140,000	70,000	43,000	27,000	27,000
	강	300,000	135,000	80,000	54,000	37,000	33,000
운반선	목	250,000	130,000	70,000	36,000	25,000	25,000
	FRP	260,000	145,000	80,000	43,000	26,000	26,000
	강	240,000	140,000	85,000	50,000	34,000	30,000

10) 근해채낚기

<표 5-41> 근해채낚기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403,220	185,477	94,147	50,592	37,636	37,636
	FRP	425,720	206,942	110,347	61,617	39,886	39,886
20톤이상 ~ 30톤미만	강	395,720	203,513	118,134	73,000	51,398	45,136
	목	500,820	233,469	117,919	62,504	47,396	47,396
30톤이상 ~ 40톤미만	FRP	538,320	269,244	144,919	80,879	51,146	51,146
	강	488,320	263,529	157,898	99,850	70,332	59,896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607,100	278,081	139,033	73,393	56,990	56,990
	FRP	659,600	328,166	176,833	99,118	62,240	62,240
50톤이상 ~ 60톤미만	강	589,600	320,165	195,003	125,678	89,101	74,490
	목	686,200	316,557	157,868	82,715	64,900	64,900
60톤이상 ~ 70톤미만	FRP	753,700	380,952	206,468	115,790	71,650	71,650
	강	663,700	370,665	229,830	149,938	106,185	87,40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763,940	351,344	174,347	90,868	72,312	72,312
	FRP	846,440	430,049	233,747	131,293	80,562	80,562
80톤이상	강	736,440	417,476	262,300	173,030	122,772	99,812
	목	907,140	422,835	210,338	109,205	86,632	86,632
90톤이상 ~ 100톤미만	FRP	1,004,640	515,850	280,538	156,980	96,382	96,382
	강	874,640	500,991	314,283	206,305	146,266	119,132
100톤이상 ~ 110톤미만	목	973,600	451,241	222,897	114,914	93,020	93,020
	FRP	1,086,100	558,566	303,897	170,039	104,270	104,270
110톤이상 ~ 120톤미만	강	936,100	541,421	342,833	226,953	161,829	130,520
	목	1,103,600	517,441	256,907	132,594	106,020	106,020
120톤이상	FRP	1,231,100	639,076	348,707	195,069	118,770	118,770
	강	1,061,100	619,645	392,835	259,571	184,003	148,520

<표 5-42> 근해채낚기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440,000	200,000	100,000	55,000	40,000	40,000
	FRP	470,000	230,000	120,000	67,000	44,000	44,000
	강	435,000	225,000	130,000	80,000	56,000	50,00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550,000	250,000	130,000	68,000	54,000	54,000
	FRP	590,000	300,000	150,000	88,000	56,000	56,000
	강	540,000	280,000	170,000	110,000	77,000	66,00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660,000	300,000	150,000	80,000	62,000	62,000
	FRP	700,000	360,000	190,000	110,000	68,000	68,000
	강	650,000	350,000	215,000	135,000	98,000	81,00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760,000	345,000	170,000	90,000	70,000	70,000
	FRP	820,000	410,000	230,000	130,000	78,000	78,000
	강	720,000	400,000	250,000	160,000	115,000	98,000
50톤이상 ~ 60미만	목	830,000	380,000	185,000	100,000	80,000	80,000
	FRP	930,000	470,000	250,000	140,000	88,000	88,000
	강	800,000	460,000	280,000	185,000	130,000	110,00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1,000,000	460,000	230,000	120,000	95,000	95,000
	FRP	1,100,000	570,000	300,000	175,000	104,000	104,000
	강	960,000	550,000	345,000	225,000	165,000	130,00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1,050,000	500,000	240,000	125,000	100,000	100,000
	FRP	1,150,000	610,000	330,000	180,000	115,000	115,000
	강	1,050,000	600,000	370,000	250,000	170,000	140,000
80톤이상	목	1,200,000	570,000	280,000	145,000	115,000	115,000
	FRP	1,350,000	700,000	380,000	215,000	130,000	130,000
	강	1,150,000	680,000	440,000	280,000	200,000	160,000

11) 기선권현망

<표 5-43> 기선권현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본선 톤급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20톤미만	목	1,661,400	793,838	426,500	244,487	205,020	205,020
	FRP	1,830,900	955,541	548,540	327,542	221,970	221,970
	강	1,499,900	853,605	552,047	373,319	279,723	240,52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2,268,500	1,090,143	572,084	316,828	265,730	265,730
	FRP	2,553,500	1,362,033	777,284	456,478	294,230	294,230
	강	1,993,500	1,188,135	781,369	532,133	390,383	324,730
30톤이상	목	2,754,300	1,322,983	684,187	371,320	314,310	314,310
	FRP	3,136,800	1,687,888	959,587	558,745	352,560	352,560
	강	2,386,800	1,455,643	965,898	660,884	482,044	393,810

<표 5-44> 기선권현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본선 톤급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20톤미만	목	1,850,000	850,000	470,000	260,000	230,000	230,000
	FRP	2,000,000	1,050,000	600,000	360,000	240,000	240,000
	강	1,650,000	930,000	600,000	400,000	300,000	260,000
20톤이상 ~	목	2,450,000	1,200,000	620,000	350,000	290,000	290,000
	FRP	2,750,000	1,500,000	850,000	500,000	320,000	320,000
30톤미만	강	2,200,000	1,300,000	850,000	580,000	430,000	350,000
30톤이상	목	2,950,000	1,400,000	750,000	400,000	340,000	340,000
	FRP	3,500,000	1,800,000	1,050,000	600,000	380,000	380,000
	강	2,600,000	1,600,000	1,060,000	720,000	520,000	420,000

※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맞은반선 2척을 1선단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였음.

12) 근해자망

<표 5-45> 근해자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목	259,000	127,790	68,605	38,636	30,220	30,220
	FRP	281,500	149,255	84,805	49,661	32,470	32,470
20톤미만	강	251,500	145,826	92,592	61,044	43,982	37,720
20톤이상 ~	목	409,500	205,213	109,800	61,063	46,134	46,134
	FRP	447,000	240,988	136,800	79,438	49,884	49,884
30톤미만	강	397,000	235,273	149,779	98,409	69,070	58,634
30톤이상 ~	목	481,700	239,292	125,918	68,743	53,354	53,354
	FRP	534,200	289,377	163,718	94,468	58,604	58,604
40톤미만	강	464,200	281,376	181,888	121,028	85,465	70,854
40톤이상 ~	목	557,400	274,971	143,780	78,090	61,788	61,788
	FRP	624,900	339,366	192,380	111,165	68,538	68,538
50톤미만	강	534,900	329,079	215,742	145,313	103,073	84,288
50톤이상 ~	목	667,400	330,313	171,864	92,514	72,788	72,788
	FRP	749,900	409,018	231,264	132,939	81,038	81,038
60미만	강	639,900	396,445	259,817	174,676	123,248	100,288
60톤이상 ~	목	764,600	379,376	195,833	104,054	81,644	81,644
	FRP	862,100	472,391	266,033	151,829	91,394	91,394
70톤미만	강	732,100	457,532	299,778	201,154	141,278	114,144
70톤이상 ~	목	829,100	408,761	210,155	111,407	88,958	88,958
	FRP	941,600	516,086	291,155	166,532	100,208	100,208
80톤미만	강	791,600	498,941	330,091	223,446	157,767	126,458
80톤이상	목	916,400	451,816	231,551	122,165	97,688	97,688
	FRP	1,043,900	573,451	323,351	184,640	110,438	110,438
	강	873,900	554,020	367,479	249,142	175,671	140,188

<표 5-46> 근해자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80,000	140,000	75,000	42,000	33,000	33,000
	FRP	300,000	160,000	92,000	55,000	35,000	35,000
20톤이상 ~ 30톤미만	강	270,000	155,000	100,000	67,000	47,000	40,000
	목	450,000	225,000	120,000	67,000	50,000	50,000
30톤이상 ~ 40톤미만	FRP	500,000	260,000	150,000	88,000	55,000	55,000
	강	440,000	255,000	160,000	110,000	77,000	65,00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20,000	260,000	140,000	75,000	60,000	60,000
	FRP	580,000	310,000	170,000	100,000	65,000	65,000
50톤이상 ~ 60미만	강	500,000	300,000	190,000	130,000	92,000	77,000
	목	610,000	290,000	150,000	85,000	70,000	70,000
60톤이상 ~ 70톤미만	FRP	680,000	370,000	200,000	120,000	75,000	75,000
	강	580,000	360,000	235,000	160,000	115,000	92,00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730,000	360,000	180,000	100,000	80,000	80,000
	FRP	820,000	450,000	250,000	140,000	90,000	90,000
80톤이상	강	700,000	440,000	290,000	185,000	135,000	110,000
	목	830,000	410,000	205,000	115,000	90,000	90,000
80톤이상	FRP	940,000	510,000	285,000	160,000	100,000	100,000
	강	800,000	500,000	330,000	220,000	150,000	125,000
80톤이상	목	910,000	450,000	230,000	120,000	100,000	100,000
	FRP	1,000,000	570,000	310,000	180,000	110,000	110,000
80톤이상	강	860,000	550,000	360,000	245,000	170,000	140,000
	목	1,000,000	490,000	250,000	130,000	110,000	110,000
80톤이상	FRP	1,140,000	620,000	350,000	195,000	120,000	120,000
	강	950,000	600,000	400,000	270,000	190,000	150,000

13) 근해안강망

<표 5-47> 근해안강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93,800	138,066	80,177	50,795	42,340	42,340
	FRP	316,300	159,531	96,377	61,820	44,590	44,590
	강	286,300	156,102	104,164	73,203	56,102	49,84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424,300	202,391	112,123	66,848	55,390	55,390
	FRP	461,800	238,166	139,123	85,223	59,140	59,140
	강	411,800	232,451	152,102	104,194	78,326	67,89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517,000	247,628	134,346	77,889	64,660	64,660
	FRP	569,500	297,713	172,146	103,614	69,910	69,910
	강	499,500	289,712	190,316	130,174	96,771	82,16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95,300	285,753	153,028	87,146	72,490	72,490
	FRP	662,800	350,148	201,628	120,221	79,240	79,240
	강	572,800	339,861	224,990	154,369	113,775	94,990
50톤이상 ~ 60미만	목	740,700	350,923	192,069	113,213	95,670	95,670
	FRP	823,200	429,628	251,469	153,638	103,920	103,920
	강	713,200	417,055	280,022	195,375	146,130	123,17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849,400	404,741	218,924	126,774	106,540	106,540
	FRP	946,900	497,756	289,124	174,549	116,290	116,290
	강	816,900	482,897	322,869	223,874	166,174	139,04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993,900	479,972	258,425	147,737	120,990	120,990
	FRP	1,106,400	587,297	339,425	202,862	132,240	132,240
	강	956,400	570,152	378,361	259,776	189,799	158,490
80톤이상	목	1,057,500	509,835	272,462	154,378	127,350	127,350
	FRP	1,185	631,470	364,262	216,853	140,100	140,100
	강	1,015	612,039	408,390	281,355	205,333	169,850

<표 5-48> 근해안강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310,000	150,000	90,000	55,000	45,000	45,000
	FRP	350,000	170,000	105,000	70,000	50,000	50,000
	강	310,000	165,000	115,000	80,000	60,000	55,00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460,000	220,000	120,000	70,000	60,000	60,000
	FRP	500,000	260,000	150,000	95,000	65,000	65,000
	강	450,000	250,000	160,000	115,000	85,000	75,00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560,000	270,000	145,000	85,000	70,000	70,000
	FRP	620,000	330,000	180,000	115,000	75,000	75,000
	강	550,000	310,000	200,000	140,000	110,000	90,00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645,000	305,000	165,000	95,000	80,000	80,000
	FRP	720,000	380,000	220,000	130,000	85,000	85,000
	강	620,000	370,000	245,000	165,000	125,000	100,000
50톤이상 ~ 60미만	목	810,000	380,000	200,000	125,000	105,000	105,000
	FRP	900,000	470,000	270,000	165,000	115,000	115,000
	강	770,000	460,000	300,000	205,000	160,000	130,00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930,000	445,000	240,000	140,000	115,000	115,000
	FRP	1,035,000	550,000	310,000	185,000	130,000	130,000
	강	900,000	520,000	350,000	245,000	180,000	150,00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1,080,000	515,000	280,000	160,000	130,000	130,000
	FRP	1,200,000	640,000	370,000	220,000	140,000	140,000
	강	1,050,000	620,000	410,000	280,000	200,000	170,000
80톤이상	목	1,150,000	560,000	295,000	165,000	140,000	140,000
	FRP	1,300,000	690,000	395,000	240,000	150,000	150,000
	강	1,120,000	670,000	450,000	300,000	225,000	180,000

14) 잠수기

<표 5-49> 잠수기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재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2톤급	목	77,350	38,035	20,366	11,445	9,031	9,031
	FRP	81,475	41,970	23,336	13,466	9,444	9,444
	강	75,975	41,342	24,763	15,553	11,554	10,406
3톤급	목	100,400	50,126	26,760	14,862	11,336	11,336
	FRP	105,725	55,206	30,594	17,471	11,869	11,869
	강	98,625	54,395	32,436	20,165	14,593	13,111
4톤급	목	107,850	53,637	28,417	15,650	12,081	12,081
	FRP	114,900	60,363	33,493	19,105	12,786	12,786
	강	105,500	59,288	35,933	22,671	16,393	14,431
5톤급	목	128,380	64,510	34,220	18,776	14,134	14,134
	FRP	137,125	72,852	40,516	23,061	15,009	15,009
	강	125,465	71,520	43,543	27,485	19,483	17,049
6톤급	목	154,050	78,484	41,865	22,985	16,701	16,701
	FRP	163,950	87,929	48,993	27,836	17,691	17,691
	강	150,750	86,420	52,419	32,844	22,756	20,001
7톤급	목	163,530	83,030	44,055	24,050	17,649	17,649
	FRP	175,425	94,378	52,619	29,879	18,839	18,839
	강	159,565	92,565	56,736	35,896	24,924	21,614

<표 5-50> 잠수기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재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2톤급	목	85,000	42,000	22,000	13,000	10,000	10,000
	FRP	90,000	45,000	25,000	15,000	10,000	10,000
	강	85,000	45,000	27,000	17,000	13,000	11,000
3톤급	목	110,000	55,000	29,000	16,000	13,000	13,000
	FRP	115,000	60,000	33,000	19,000	13,000	13,000
	강	110,000	60,000	35,000	22,000	16,000	14,000
4톤급	목	115,000	58,000	30,000	17,000	13,000	13,000
	FRP	125,000	65,000	36,000	21,000	14,000	14,000
	강	115,000	65,000	38,000	25,000	17,000	15,000
5톤급	목	140,000	70,000	37,000	20,000	15,000	15,000
	FRP	150,000	80,000	45,000	25,000	16,000	16,000
	강	135,000	75,000	47,000	30,000	20,000	18,000
6톤급	목	165,000	85,000	45,000	25,000	18,000	18,000
	FRP	175,000	95,000	53,000	30,000	19,000	19,000
	강	160,000	95,000	57,000	35,000	25,000	22,000
7톤급	목	175,000	90,000	50,000	26,000	19,000	19,000
	FRP	190,000	105,000	57,000	33,000	20,000	20,000
	강	170,000	100,000	60,000	38,000	27,000	24,000

15) 장어통발

<표 5-51> 장어통발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01,100	99,892	53,570	30,021	23,134	23,134
	FRP	216,100	114,202	64,370	37,371	24,634	24,634
	강	196,100	111,916	69,562	44,960	32,309	28,134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313,700	153,177	78,850	42,108	34,394	34,394
	FRP	351,200	188,952	105,850	60,483	38,144	38,144
	강	301,200	183,237	118,829	79,454	57,330	46,894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398,300	194,391	99,059	52,128	42,854	42,854
	FRP	450,800	244,476	136,859	77,853	48,104	48,104
	강	380,800	236,475	155,029	104,413	74,965	60,354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40,900	266,300	135,637	70,959	57,114	57,114
	FRP	608,400	330,695	184,237	104,034	63,864	63,864
	강	518,400	320,408	207,599	138,182	98,399	79,614
50톤이상 ~ 60미만	목	639,700	315,543	160,383	83,546	66,994	66,994
	FRP	722,200	394,248	219,783	123,971	75,244	75,244
	강	612,200	381,675	248,336	165,708	117,454	94,494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821,600	409,332	209,169	109,209	85,184	85,184
	FRP	919,100	502,347	279,369	156,984	94,934	94,934
	강	789,100	487,488	313,114	206,309	144,818	117,684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927,200	462,408	236,075	123,013	95,744	95,744
	FRP	1,039,700	569,733	317,075	178,138	106,994	106,994
	강	889,700	552,588	356,011	235,052	164,553	133,244
80톤이상	목	995,400	494,856	251,566	130,473	102,564	102,564
	FRP	1,122,900	616,491	343,366	192,948	115,314	115,314
	강	952,900	597,060	387,494	257,450	180,547	145,064

<표 5-52> 장어통발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20,000	110,000	60,000	33,000	25,000	25,000
	FRP	235,000	125,000	70,000	40,000	27,000	27,000
	강	125,000	120,000	75,000	50,000	35,000	30,00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340,000	165,000	85,000	46,000	37,000	37,000
	FRP	380,000	200,000	115,000	66,000	40,000	40,000
	강	330,000	195,000	130,000	85,000	65,000	50,00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435,000	200,000	110,000	57,000	47,000	47,000
	FRP	490,000	260,000	150,000	85,000	53,000	53,000
	강	410,000	255,000	170,000	115,000	80,000	65,00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90,000	290,000	150,000	78,000	65,000	65,000
	FRP	660,000	360,000	195,000	115,000	70,000	70,000
	강	570,000	350,000	225,000	150,000	110,000	85,000
50톤이상 ~ 60미만	목	700,000	345,000	170,000	90,000	70,000	70,000
	FRP	790,000	435,000	240,000	135,000	80,000	80,000
	강	670,000	410,000	270,000	180,000	125,000	105,00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900,000	450,000	230,000	120,000	95,000	95,000
	FRP	1,000,000	550,000	300,000	170,000	105,000	105,000
	강	870,000	530,000	340,000	230,000	155,000	130,00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1,010,000	500,000	260,000	135,000	105,000	105,000
	FRP	1,130,000	620,000	350,000	190,000	115,000	115,000
	강	980,000	600,000	390,000	255,000	175,000	140,000
80톤이상	목	1,100,000	550,000	270,000	140,000	110,000	110,000
	FRP	1,220,000	670,000	370,000	210,000	125,000	125,000
	강	1,040,000	660,000	420,000	280,000	190,000	155,000

16) 기타통발

<표 5-53> 기타통발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83,700	133,228	76,581	47,995	40,250	40,250
	FRP	306,200	154,693	92,781	59,020	42,500	42,500
	강	276,200	151,264	100,568	70,403	54,012	47,75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356,100	168,037	93,400	56,202	47,490	47,490
	FRP	393,600	203,812	120,400	74,577	51,240	51,240
	강	343,600	198,097	133,379	93,548	70,426	59,99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479,700	230,738	125,488	72,821	59,850	59,850
	FRP	532,200	280,823	163,288	98,546	65,100	65,100
	강	462,200	272,822	181,458	125,106	91,961	77,35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61,800	270,606	144,968	82,443	68,060	68,060
	FRP	629,300	335,001	193,568	115,518	74,810	74,810
	강	539,300	324,714	216,930	149,666	109,345	74,810
50톤이상 ~ 60미만	목	723,200	346,129	187,296	108,267	90,140	90,140
	FRP	805,700	424,834	246,696	148,692	98,390	98,390
	강	695,700	412,261	275,249	190,429	140,600	117,64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940,600	453,506	247,712	144,364	117,820	117,820
	FRP	1,038,100	546,521	317,912	192,139	127,570	127,570
	강	908,100	531,662	351,657	241,464	177,454	150,32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982,100	470,557	254,362	146,759	121,970	121,970
	FRP	1,094,600	577,882	335,362	201,884	133,220	133,220
	강	944,600	560,737	374,298	258,798	190,779	159,470
80톤이상	목	1,052,100	504,017	270,422	154,539	128,970	128,970
	FRP	1,179,600	625,652	362,222	217,014	141,720	141,720
	강	1,009,600	606,221	406,350	281,516	206,953	171,470

<표 5-54> 기타통발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300,000	140,000	85,000	50,000	45,000	45,000
	FRP	340,000	165,000	100,000	65,000	46,000	46,000
	강	300,000	160,000	110,000	77,000	60,000	53,00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390,000	180,000	100,000	60,000	53,000	53,000
	FRP	430,000	220,000	130,000	80,000	56,000	56,000
	강	370,000	215,000	145,000	100,000	77,000	66,00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520,000	250,000	135,000	80,000	66,000	66,000
	FRP	580,000	300,000	175,000	105,000	72,000	72,000
	강	500,000	290,000	195,000	135,000	100,000	85,00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610,000	290,000	155,000	90,000	76,000	76,000
	FRP	690,000	365,000	210,000	125,000	80,000	80,000
	강	590,000	350,000	235,000	160,000	120,000	80,000
50톤이상 ~ 60미만	목	790,000	380,000	200,000	120,000	100,000	100,000
	FRP	890,000	465,000	270,000	160,000	110,000	110,000
	강	765,000	450,000	300,000	205,000	150,000	130,00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1,000,000	490,000	270,000	155,000	130,000	130,000
	FRP	1,140,000	600,000	350,000	210,000	140,000	140,000
	강	1,000,000	580,000	380,000	260,000	195,000	160,00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1,050,000	510,000	275,000	155,000	130,000	130,000
	FRP	1,200,000	630,000	365,000	220,000	145,000	145,000
	강	1,040,000	610,000	400,000	280,000	210,000	175,000
80톤이상	목	1,150,000	550,000	300,000	165,000	140,000	140,000
	FRP	1,300,000	680,000	390,000	240,000	150,000	150,000
	강	1,100,000	670,000	450,000	300,000	230,000	185,000

17) 문어단지

<표 5-55> 문어단지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25,900	106,561	60,507	37,330	31,230	31,230
	FRP	243,900	123,733	73,467	46,150	33,030	33,030
	강	219,900	120,990	79,697	55,256	42,239	37,23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311,500	149,376	82,103	48,355	39,790	39,790
	FRP	343,000	179,427	104,783	63,790	42,940	42,940
	강	301,000	174,626	115,685	79,726	59,056	50,290

<표 5-56> 문어단지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45,000	120,000	66,000	40,000	35,000	35,000
	FRP	265,000	135,000	80,000	50,000	36,000	36,000
20톤이상 ~ 30톤미만	강	240,000	130,000	88,000	60,000	46,000	40,000
	목	340,000	160,000	90,000	53,000	44,000	44,000
	FRP	375,000	195,000	115,000	70,000	46,000	46,000
	강	330,000	190,000	125,000	88,000	65,000	55,000

18) 근해형망

<표 5-57> 근해형망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10톤미만	목	147,350	72,973	38,454	21,069	16,463	16,463
	FRP	160,175	85,208	47,688	27,353	17,746	17,746
	강	143,075	83,254	52,126	33,841	24,307	20,738
10톤이상	목	200,400	99,289	51,612	27,727	21,768	21,768
	FRP	222,150	120,039	67,272	38,385	23,943	23,943
	강	193,150	116,724	74,800	49,388	35,071	29,018

<표 5-58> 근해형망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10톤미만	목	160,000	80,000	42,000	23,000	17,000	17,000
	FRP	170,000	95,000	51,000	30,000	19,000	19,000
	강	155,000	90,000	57,000	37,000	26,000	23,000
10톤이상	목	220,000	110,000	56,000	30,000	24,000	24,000
	FRP	240,000	130,000	73,000	41,000	26,000	26,000
	강	215,000	130,000	80,000	54,000	38,000	32,000

19) 근해연승

<표 5-59> 근해연승 (2007.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제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25,500	114,177	58,322	30,147	22,550	22,550
	FRP	248,000	135,642	74,522	41,172	24,800	24,800
	강	218,000	132,213	82,309	52,555	36,312	30,05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366,000	186,621	96,004	49,969	36,600	36,600
	FRP	403,500	222,396	123,004	68,344	40,350	40,350
	강	353,500	216,681	135,983	87,315	59,536	49,10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436,300	220,122	112,027	57,701	43,630	43,630
	FRP	488,800	270,207	149,827	83,426	48,880	48,880
	강	418,800	262,206	167,997	109,986	75,741	61,13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05,300	253,020	127,771	65,303	50,530	50,530
	FRP	572,800	317,415	176,371	98,378	57,280	57,280
	강	482,800	307,128	199,733	132,526	91,815	73,030
50톤이상 ~ 60미만	목	600,400	300,478	151,652	77,465	60,040	60,040
	FRP	682,900	379,183	211,052	117,890	68,290	68,290
	강	572,900	366,610	239,605	159,627	110,500	87,54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685,300	342,017	172,117	87,664	68,530	68,530
	FRP	782,800	435,032	242,317	135,439	78,280	78,280
	강	652,800	420,173	276,062	184,764	128,164	101,03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775,300	386,717	194,497	99,004	77,530	77,530
	FRP	887,800	494,042	275,497	154,129	88,780	88,780
	강	737,800	476,897	314,433	211,043	146,339	115,030

<표 5-60> 근해연승 (2011. 5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선질	재조달원가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이상 경과
8톤이상 ~ 20톤미만	목	245,000	125,000	65,000	33,000	25,000	25,000
	FRP	270,000	150,000	80,000	45,000	27,000	27,000
	강	230,000	145,000	90,000	57,000	40,000	33,000
20톤이상 ~ 30톤미만	목	390,000	200,000	105,000	55,000	40,000	40,000
	FRP	440,000	240,000	135,000	75,000	44,000	44,000
	강	380,000	235,000	150,000	95,000	66,000	55,000
30톤이상 ~ 40톤미만	목	480,000	240,000	120,000	65,000	47,000	47,000
	FRP	530,000	290,000	160,000	90,000	53,000	53,000
	강	460,000	280,000	180,000	120,000	83,000	67,000
40톤이상 ~ 50톤미만	목	555,000	275,000	140,000	70,000	55,000	55,000
	FRP	620,000	350,000	190,000	110,000	62,000	62,000
	강	520,000	340,000	220,000	145,000	100,000	80,000
50톤이상 ~ 60미만	목	660,000	330,000	160,000	85,000	66,000	66,000
	FRP	740,000	410,000	230,000	130,000	75,000	75,000
	강	620,000	400,000	260,000	175,000	120,000	95,000
60톤이상 ~ 70톤미만	목	740,000	370,000	185,000	95,000	75,000	75,000
	FRP	850,000	475,000	260,000	150,000	85,000	85,000
	강	710,000	460,000	300,000	200,000	140,000	110,000
70톤이상 ~ 80톤미만	목	850,000	420,000	215,000	110,000	85,000	85,000
	FRP	970,000	545,000	300,000	170,000	95,000	95,000
	강	800,000	520,000	345,000	230,000	160,000	125,000
80톤이상	목	930,000	460,000	230,000	120,000	90,000	90,000
	FRP	1,060,000	590,000	330,000	190,000	110,000	110,000
	강	880,000	570,000	380,000	265,000	175,000	140,000

4. 잔존가치평가 종합

- 근해어선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 및 어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체는 주로 강선 또는 FRP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기관은 해상용 디젤기관을 주로 사용하고 조업의 유형에 따라서 회전수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음
-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주기관은 조업어장의 축소로 좋은 위치의 어장을 선점하거나 포획한 어획물을 이른 시간내에 판매하여 좋은 어가를 받기 위해서 갈수록 마력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근해어선의 경우 1개의 허가를 득하여 연중조업을 하기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하나의 업종으로 조업을 하기는 하지만 2개 이상의 허가로 계절별·시기별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음
- 일부 어선의 경우에는 사용어구에 따라서 필요로하는 의장품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때문에 허가업종별로 시설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잔존가치 표준수량을 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같은 허가업종에서도 의장품은 어업자에 따라서 사용하는 의장품의 제작사, 용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가격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어구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 및 어선의 규모, 조업인원, 조업어장의 여건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구의 크기 및 구성품의 내역, 수량 등의 차이가 있음
- 대형어구의 경우는 연안어업과 달리 어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어선의 규모나 선장의 조업방식, 허가업종의 특성에 맞게 직접 꾸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검토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잔존가치 표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선체, 기관, 의장품 및 어구에 대한 표준단가, 표준수량, 그리고 정올법에 의하여 잔존가치 적용율을 산정하기 위한 선체, 기관, 의장품 및 어구별 경과년수(또는 잔존년수) 등을 알아야 함
- 또한, 2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업종으로 실제 조업을 하는지 부어업으로 조업활동을 병행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허가업종 및 톤급별로 명확하게 의장품, 사용어구 및 수량을 정할 수 없음
- 동 허가업종 내에도 사용하는 의장품의 규격·형식, 용량 및 재조달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표준가격을 정할 수 없고, 의장품 각각의 내용년수가 다르며 이들의 경과년수(또는 잔존년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시설물의 잔존가치에 대한 적용율을 산정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현상 등에 의한 감가수정도 정확하게 할 수 없음
- 그러므로 근해어선어업에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는 평가대상 어선에 대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선체, 기관, 의장품 및 어구 등의 규격·형식, 용량, 수량, 상태, 제작사, 제작일자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물에 대한 표준가는 업종별·톤급별로 필요한 시설 모두를 갖추고 있으며, 기관 및 의장품의 경과년수가 선체의 경과년수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고 할 때에는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참고문헌

- 2006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해양수산부, 20073
-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어업 총조사, 2010
- 국립수산진흥원, 어구분류 및 각부명칭, 1987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식품계연보, 각연도
- 농림수산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2006
-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연도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각호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각연도
- 해양수산부, 2004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2004
- 해양수산부,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07
- 해양수산부,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구조개편에 관한연구(3차년도), 2006
- 해양수산부,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2003
- 해양수산부, 어선감척사업 관련 어업손실액 산출절차 및 방법 등의 표준기준 제정조사 용역, 2001
- 해양수산부,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 2005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연보, 각연도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2003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등의 체계적 재편(안), 2004
- 해양수산부, 연안어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200
- 해양수산부, WTO/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 어촌 국내대책 수립연구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수산정보포털 어선통계(<http://www.fips.go.kr/>)

부록 1 : 연근해어선 경영실태 조사 설문지

가. 어선 및 장비 일반현황

성명		연락처	
----	--	-----	--

어선명	어선번호	① 어업의 명칭·종류			
선체재질	FRP () 강 선() 목 선() 기 타()	톤수	톤		
건조일자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마력	
구입일자		조업인원	명		
구입가격	천원	④ 운영방법	() 자선장(본인이 선장겸 선원)		
②출어일수	일		() 가족운영(본인(선장) +가족부 인 등) 조업		
③조업일수	일		() 선원고용(선원을 고용하여 조업) () 기타()		

⑤어로장비명	수 량	규 격	구입년월	구입가격

⑥ 보유 어구명	보유량	규 격	단 가	내구기간(월)	구입년월	구입가격

나. 경영실태 조사

① 어업수입 (단위: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계 통:	계 통:	계 통:
비계통:	비계통:	비계통:	

평년어업경비(2010년 기준) / (단위 : 천원)					
(1) 출어비용					
		수 량	규 격	단 가(원)	금 액(천원)
① 어구비	보수비				
	구입비				
② 연료비	연료				
	윤활유 등				
	기타				
③ 유지보수비	선체				
	기관				
	의장품				
④ 용기대					
⑤ 저장대					
⑥ 미끼대					
⑦ 소모품비					
⑧ 주부식비					
⑨ 후생비 및 기타비용					
(2) 인건비					
⑩ 인건비	필요인원	필요일수	월급(일당)	기타수당	금액(천원)
- 고용직					
- 일용직		일씩 개월			
- 인건비 합계					
(3) 판매관리비					
⑪ 공제 및 보험료	선체				
	선원				
⑫ 판매수수료	위판 수수료				
	기타				
⑬ 사무비					
⑭ 제세공과금					
⑮ 기타 비용	가공비				
	기타				
평년어업경비율(%)			연간 순수익		

부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26] [법률 제10947호, 2011. 7.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漁具)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2.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자의 어선, 어장, 사업장 및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선, 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어업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자원 규모와 연도별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

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61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어선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어선의 선령(船齡)
2.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신규 용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용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

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

- 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 2. 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감정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 어선·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제25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947호, 2011. 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어업구조조정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모집 공고된 사업은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